

2023. 9. 13.(수)
제 3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1
2.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3.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4.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0
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9
7.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2
8.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4
9.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1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
11.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1
1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0
1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186
1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8
15.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4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409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504호
- 제 출 자: 방한일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변하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미래인재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① 기본 방향 및 목표, ② 추진과제, ③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④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⑤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활성화 사업)에서는 교육감은 ①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②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③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④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⑥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

능력 함양 지원, ⑦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⑧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⑨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⑩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지도·감독)에서는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직업교육 발전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적법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5조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시’ 세부적 실천방안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부적인 검토와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에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2. 04. 2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2. 02. 16.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3. 04. 03.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 나. 관련법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6.29., 예산과)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6.29., 예산과)
-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6.29., 예산과)
-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
3.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4.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
5.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
6.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8425호, 2022. 2. 18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1호, 2023. 4. 19시행]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전문기술인 자질 함양,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7조)
 - (안 제4조)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5조) 직업계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학과개편 등 10개 분야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안 제6조)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문·상담을 지원하도록 함
 - (안 제7조) 지자체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안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는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계획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활성화 사업), 안 제6조(지도·감독),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충남교육청에서 직업계고 미래환경 조성, 현장실습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특성화고 학과개편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직업교육운영 외 / 미래인재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연수	160,000	교육경비 등
자영농수산물 지원	202,520	농해양계고 체험학습 운영 등
상업경진대회 운영	150,500	운영비 등
영농학생전진대회 운영	163,220	운영비 등
기능경기대회 운영	9,750,980	강화훈련비 등
마이스터고 운영	3,849,990	기자재지원 등
농해양계고 특색사업 운영	73,860	운영비 등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사업	3,000,000	운영비
실습실습실 안전망 구축	825,190	실습실 환경개선 등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1,102,961	드론교육장 환경개선 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	3,650,000	운영비 등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22,000	운영비 등
공업계고 경쟁력 강화	120,000	공립고 지원
직업계고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2,052,500	연수용역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2,134,002	현장실습운영 등
직업계고 인식개선	400,588	일반용역 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260,000	운영비
장영실 창업교실	402,000	창업교육센터 비품비 등
충무인품인재지원	245,024	심화자격증취득지원 등
취업박람회 운영	50,000	일반용역
취업역량강화	607,900	일반수용비 등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1,253,600	해외현장학습 등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운영	640,000	운영비 등
글로벌 현장학습 외국어 교육	108,500	집합교육 운영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3,331,393	운영비
지역인재 취업 활성화	194,000	중심학교운영 등
취업지원센터운영	408,970	취업지원관 운영 등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855,181	취창업역량강화지원 등
실습실(공업계) 기자재 지원	100,000	운영비 지원
학생개인 실습장비 지원	561,340	공업계 등
농업계열 실습여건 개선	22,218,178	공간재구조화 등
해양계고 실습선 건조	1,292,896	공동실습선 건조 등
직업계고 미래환경 조성	3,614,102	신산업실습환경구축 등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4,120	위원수당 등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750,000	센터구축 등
합 계	64,555,515	

자료: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제출자료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바탕으로 제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77호
- 제 출 자: 편삼범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2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책무
- (안 제4조) 지원
- (안 제5조) 우선지원 등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우선지원 등)에서는 교육감은 ①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②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등 ① ~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세부적 시행방안과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02.
경남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2023.04.0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2.21.
경북	경상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23.
경기	경기도교육청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4.
광주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8.0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2020.05.1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1.09.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0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4.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 관련법규: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6.27.,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2023.6.27.,감사관)
-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6.27.,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비”란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우선지원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2.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8. 2. 25. 시행]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2. 3. 25 시행]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법률 제18580호, 2022. 6. 15. 시행]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993호, 2023. 4. 19.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의무교육)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8992호, 2023. 4. 19. 시행]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10.] [충청남도조례 제5187호, 2022. 2. 10., 시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10.>
2. “교육비“란 다자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제2호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우선지원 등)는 교육비 지원, 다자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우선지원 및 수학여행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추진 중임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시 2024. 3. 1.자 시행 예정으로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지원 대상 학생 수는 ‘2022~2027 중기학생배치계획’의 연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 단, 2028년은 현재 계획수립 중으로 2024~2027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학생 수로 가정하여 추계
- 지원 대상 학년은 수학여행비의 경우 초 6학년, 중 2학년, 고 2학년으로 하고, 입학준비금은 초·중·고 각 1학년(신입생)을 지원 대상 학년으로 전제함
- 지원 금액은 ‘2023년 저소득층·다자녀·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비 지원 단가’ 및 ‘2023년 다자녀학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수학여행비 지원 단가(특수 포함) : 초 160,000원, 중 200,000원, 고 300,000원
 - 입학준비금 지원 단가(특수 포함) : 초 200,000원, 중 200,000원, 고 200,000원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34,796,520천원(연평균 26,959,304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학여행비 지원 (안 제4조)	14,226,040	14,227,600	14,343,040	14,895,100	15,128,940	72,820,720
	입학준비금 지원 (안 제4조)	12,215,000	12,118,800	12,436,600	12,545,600	12,659,800	61,975,800
	소계(b)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 총 비용(b-a)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비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134,796,520천원(연평균 26,959,304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학여행비 지원 (안 제4조)	14,226,040	14,227,600	14,343,040	14,895,100	15,128,940	72,820,720
	입학준비금 지원 (안 제4조)	12,215,000	12,118,800	12,436,600	12,545,600	12,659,800	61,975,800
	소계(b)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 총 비용(b-a)		26,441,040	26,346,400	26,779,640	27,440,700	27,788,740	134,796,520

가. 수학여행비 지원 ≙ 72,820,72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원 대상(특수 포함): 초 6, 중 2, 고 2학년 전체 학생 / 일괄(보편) 지원

- 지원 금액(특수 포함): 초 160,000원, 중 200,000원, 고 300,000원
- 지원 학생 수: 2022~2027 중기학생배치계획 학생 수 기준 산정
 - ☞ 2028년은 계획수립 중으로 2024~2027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학생 수로 가정

가) 일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6학년	21,749	20,549	21,345	22,885	23,274	1.7%
중 2학년	21,112	22,156	22,962	22,111	22,465	1.6%
고 2학년	21,540	21,500	20,926	22,507	22,845	1.5%

나) 특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6학년	80	61	64	80	80	0.0%
중 2학년	98	103	96	88	85	△3.5%
고 2학년	98	94	94	96	96	△0.7%

다) 일반학교(가) + 특수학교(나)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6학년	21,829	20,610	21,409	22,965	23,354	
중 2학년	21,210	22,259	23,058	22,199	22,550	
고 2학년	21,638	21,594	21,020	22,603	22,941	
합계	64,677	64,463	65,487	67,767	68,845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학여행비 지원 (합계)	72,820,720	14,226,040	14,227,600	14,343,040	14,895,100	15,128,940
초 6학년	17,626,720	3,492,640	3,297,600	3,425,440	3,674,400	3,736,640
중 2학년	22,255,200	4,242,000	4,451,800	4,611,600	4,439,800	4,510,000
고 2학년	32,938,800	6,491,400	6,478,200	6,306,000	6,780,900	6,882,300

나. 입학준비금 지원 ≍ 61,975,8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원 대상(특수 포함): 초 1, 중 1, 고 1학년 전체 학생 / 일괄(보편) 지원

- 지원 금액(특수 포함): 초 200,000원, 중 200,000원, 고 200,000원
- 지원 학생 수: 2022~2027 중기학생배치계획 학생 수 기준 산정
 - ☞ 2028년은 계획수립 중으로 2024~2027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학생 수로 가정

가) 일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1학년	17,075	16,623	17,215	17,027	17,010	△0.1%
중 1학년	21,614	22,201	21,577	22,382	22,651	1.2%
고 1학년	22,126	21,523	23,149	23,080	23,403	1.4%

나) 특수학교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24~27년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1학년	64	57	58	48	44	△9.1%
중 1학년	102	96	88	91	88	△3.7%
고 1학년	94	94	96	100	103	2.1%

다) 일반학교(가) + 특수학교(나)

구분	연도별 학생 수(명)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초 1학년	17,139	16,680	17,273	17,075	17,054	
중 1학년	21,716	22,297	21,665	22,473	22,739	
고 1학년	22,220	21,617	23,245	23,180	23,506	
합계	61,075	60,594	62,183	62,728	63,299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입학준비금 지원 (합계)	61,975,800	12,215,000	12,118,800	12,436,600	12,545,600	12,659,800
초 1학년	17,044,200	3,427,800	3,336,000	3,454,600	3,415,000	3,410,800
중 1학년	22,178,000	4,343,200	4,459,400	4,333,000	4,494,600	4,547,800
고 1학년	22,753,600	4,444,000	4,323,400	4,649,000	4,636,000	4,701,200

[참고 1] 수학여행비·입학준비금 선별 지원사업 기추진 현황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문화예술교육활동 / 학교지원과 · 교육과정과

(단위: 천원)

부서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지원과	저소득층 수학여행 지원	1,479,100	선별 지원 ¹⁾
학교지원과	다자녀 수학여행 지원	831,900	선별 지원 ²⁾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지원	188,640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합 계		2,499,640	

자료: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023년 저소득층다자녀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비 지원 계획

○ 사업명/부서 : 교육비지원 / 학교지원과

(단위: 천원)

부서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지원과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입학준비금)	380,000	선별 지원 ³⁾
합 계		380,000	

자료: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023년 다자녀학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

- 1)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 2) 지원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 3) 지원 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편삼범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75호
- 제 출 자: 편삼범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18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2022.12.30.)됨에 따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조례항목과 중복 규정되어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 “과거 3년 평균 금액” 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로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권고사항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조항 신설, 중복내용 삭제를 추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7. 2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 7. 20., 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 (2023. 7. 20.,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3.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개정·삭제·신설하는 것으로,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안 제4조제3항제1호 개정
 - 기금의 사용 용도 규정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서 '보통교부금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개정
 - 안 제4조제3항제4호 삭제
 - 기금의 사용 용도 규정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호*와 중복되어 삭제
 -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안 제4조제3항제6조 신설
 -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는 규정 신설**
 -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미래교육수요 대비,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88호
- 제 출 자: 구형서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1~3조)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5~6조) 사업추진 및 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① 추진방향, ② 교육 및 연구, ③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추진)에서는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교육 및 연구, ② 교원 연수, ③ 교육자료 개발, ④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 ③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자문할 수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체육수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미래 기술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폭염, 미세먼지,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고 판단됨.
- 다만,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 연수,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병행을 통한 균형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스마트기기 주기적 관리,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마련 등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지원기준 마련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05. 10.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2021. 07. 14.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나. 관련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7.7.,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7.7., 감사관)
-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7.7., 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2. 교육 및 연구
3.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연구
2. 교원 연수
3. 교육자료 개발
4.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
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사업추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한 조항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 으로 갈음할 수 있음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5조(사업 추진) 중 제1~3호(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교원 연수)는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체육 교육과정운영 사업 중 ‘체육교원연수’, ‘체육교과연구회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함을 전제로 하여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는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를 두되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에서 대행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력 범위나 내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5조제4호의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 규모는 충남교육청의 ‘2024년 에듀테크 활용 스마트 건강체력교실 구축 사업 계획’에 기초하여 가정함
 - 지원 대상은 초·중고 30교로 하고, 사업비는 총 9억원으로 하여 산정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4,500,000천원(연평균 9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반 구축 (안 제5조제4호)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소계(b)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 총 비용(b-a)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4,500,000천원(연평균 9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스마트체육 활성화사업)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반 구축 (안 제5조제4호)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소계(b)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 총 비용(b-a)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 4,50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사업(계획)내용: 에듀테크⁴⁾ 활용 스마트 건강체력교실 구축 지원

4)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기술

- 가상현실(VR) 기술: 스크린 기반 터치 및 비전 센서를 활용한 다종목 스포츠(놀이) 체험 플랫폼
- 증강현실(AR) 기술: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스포츠 체험 플랫폼
- 어플리케이션(Apps) 기술: 스마트기기 어플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 플랫폼
- 사물인터넷(IoT) 기술: 각종 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동시간 신체활동 기록이 온라인상에서 기록되어 관리

- 지원대상(연간): 초·중·고등학교 30교
- 지원금액: 교당 30,000천원(총 900,000천원)

2) 세부 산출내역

-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 30,000,000원 × 30교 = 900,000,000원
- ➔ 매년 30교씩 사업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비	4,5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참고

체육교원연수 및 체육교과연구회운영 사업비 현황
〔안 제5조(사업 추진) 중 제1~3호 관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체육교육과정운영 / 체육건강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체육교원연수	43,400	안 제5조(2호)
- 일반수용비	12,000	
- 강사수당	13,000	
- 시설임차	1,000	
- 일반용역	15,000	
- 여비	1,200	
- 협의회	1,200	
체육교과연구회운영	32,000	안 제5조(1호, 3호)
- 연구회	20,000	
- 공립(학교회계전출금)	9,000	
- 사립(학교회계전출금)	3,000	
합 계	75,400	

자료: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80호
- 제 출 자: 구형서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서는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적절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교육)에서는 교육감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관 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지원근거 마련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성능 및 안전성, 사용 편의성이 부족한 방연물품이 사용 되는 경우 오히려 화재 대피를 어렵게 하므로 성능 및 안전성, 편의성이 확보된 물품을 사용하고 보관하기 위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세부적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에서 「화재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6. 09.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6. 0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5. 2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8. 04.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10.18.,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2023. 8. 9.,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 8. 1., 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 7. 27.,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적절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요청인 : 구형서 의원

담당 : 조중연 담당관
박재용 예산분석팀장
홍종식 주무관

접수일 : 2023. 7. 27.(목)

회신일 : 2023. 8. 8.(화)

내용문의 : 041-635-520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I. 비용추계 요약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교육),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 교육 실시 및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⁵⁾에 따른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 시 방연물품 사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함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학생 및 교직원 1명당 1개씩 비치하는 것으로 가정(단, 국립 학교는 제외)
 - 학생 수는 2023. 3. 5.자 각급 학교 현황 기준, 교직원 수는 2023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자료의 2023. 7. 1.자 교직원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
- 안 제2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방연방독면, 방연마스크 등이 있으나, 보관 및 착용의 용이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으로 가정
- 방연마스크는 1회용이며, 사용기한은 4년으로 가정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의 물품 규격 중 사용기한 요건이 3~5년으로 다양하여 평균인 4년을 사용기한으로 가정하여 산출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739,064천원(연평균 347,813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방연마스크 비치 (안 제3조)	869,532	0	0	0	869,532	1,739,064
	소계(b)	869,532	0	0	0	869,532	1,739,064
□ 총 비용(b-a)		869,532	0	0	0	869,532	1,739,064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1,739,064천원(연평균 347,813천원)

- 산출방식 $\sum_{i=1}^5$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방연마스크 비치 (안 제3조)	869,532	0	0	0	869,532	1,739,064
	소계(b)	869,532	0	0	0	869,532	1,739,064
□ 총 비용(b-a)		869,532	0	0	0	869,532	1,739,064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 1,739,064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2023. 7. 1.자 기준 교직원 수(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 33,658명

(단위: 명)

정무직	국가직 (일반직)	교육 전문직	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직	기록 연구사	별정직	합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소계				
1	1	353	17,436	2,479	19,915	3,981	299	4,280	9,088	16	4	33,658

- 2023. 3. 5.자 기준 학생 수(유.초.중.고.특수.각종) : 256,186명

(단위: 명)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방송중	방송고	고기	각종	합계
소계	21,831	115,687	59,391	56,973	1,341	269	584	77	33	256,186
공립	7,631	115,518	48,841	39,409	1,145	269	584	-	12	213,409
사립	14,200	169	10,550	17,564	196	-	-	77	21	42,777

- 방연마스크 구입 단가 : 3,000원

☛ 조달청 혁신장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제품 검색 등록 단가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통합검색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결과내제검색

통합검색 상품 정보 혁신조달 정보 제안요청 정보 연구개발 정보 특허 정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으)로 검색한 결과 총 **15**건이 조회되었습니다.

I 수요공급 매칭 리포트

수요 정보: 혁신조달 정보 0건, 제안요청 정보 0건, 연구개발 정보 0건, 특허 정보 3건

수요공급 매칭 결과: 수요 정보 3건과 상품 정보 12건으로 상품 정보가 9건 많음

상품 정보: 혁신제품물 1건, 우수제품물 0건, 종합쇼핑물 0건, 벤처나라 11건

I 상품 정보 (12)건의 검색결과가 조회되었습니다. 더보기

혁신제품물 1건, 우수제품물 0건, 종합쇼핑물 (디지털물) 0건, 벤처나라 11건, 홍보전 0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흡수건 3,000 원 기타혁신제품

2) 세부 산출내역

- 방연마스크 구입비(1회) : 3,000원 × 289,844명 = 869,532,000원

☞ 1회 구입 시 학생 및 교직원 1명당 1개씩 일괄 구입, 사용기한(4년 가정) 도래 시 일괄 재구입 하는 것으로 산정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방연마스크 구입비	1,739,064	869,532	0	0	0	869,53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18일 홍성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73호
- 제 출 자: 홍성현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18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7조) 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 (안 제8조) 보험
- (안 제9조) 기관 간 협의
- (안 제11조) 지원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
 - 안 제5조(기능)에서는 학교복합시설에서는 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방과 후 학교·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③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④ 구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⑤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서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사항으로 ① 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②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③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④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 할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①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②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보험)에서는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기관 간 협의)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는 ❶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 운영, ❷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함
- 안 제11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평생학습 등이 어우러져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향후 도(道)와 시·군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유지 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학교복합시설의 종류 등을 선정함에 있어 도(道) 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학생 수 및 지역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 주체의 명확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2023. 07. 06.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5. 1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4. 03.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1. 03.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07. 19.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2. 03. 0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02. 16.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나. 관련법규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7.27.,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023.7.27.,감사관)
-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7.27.,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 구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8조(보험)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 · 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9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3. 23.>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23.>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 **건축법**[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통보(조치)일	2023. 7. 2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학교복합 시설의 운영 위탁) ○ 제13조(학교복합 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14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개선 권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수입·수탁 기관(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가 필요하며, ○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불법·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학교복합 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바, ‘8.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점검표’에 따른 검토·반영이 필요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기능), 제8조(보험),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11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8조(보험)는 학교 및 교육기관별로 매년 ‘학교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공제(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여부, 설치 지역 및 시기, 설치 주체 및 소유권 귀속,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미확정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는 비용추계가 곤란하나, 충남교육청의 도내 시·군별 1곳 이상 설치 목표를 기준하여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되고, 운영·관리 주체는 충남교육청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지원 대상 학교복합시설의 수는 충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안내자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3301, 2023. 7. 18.)’ 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사례 및 충남교육청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당진 대덕초(현재 운영 중), 서산 인지초(2025년 12월 준공 예정), 공모 및 선정 예정(2023년부터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목표)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위원 수 15명(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으로 가정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최대 위원 수 준용
-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금액은 현재 학교복합시설 운영 중인 당진 대덕초 지원 단가(2023년 본예산 편성액)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 당진 대덕초 운영 지원비를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시 학교복합시설의 유형,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573,760천원(연평균 114,752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학교복합시설 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안 제5조, 제11조)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550,000
	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2,160	2,160	4,320	4,320	10,800	23,760
	소계(b)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 총 비용(b-a)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573,760천원(연평균 114,752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학교복합시설 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안 제5조, 제11조)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550,000
	협의회 운영 (안 제10조)	2,160	2,160	4,320	4,320	10,800	23,760
	소계(b)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 총 비용(b-a)		52,160	52,160	104,320	104,320	260,800	573,760

가.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 55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연도별 지원 대상 학교복합시설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

연도별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교 (대덕초)	1교 (대덕초)	2교 (대덕초, 인 지초)	2교 (대덕초, 인 지초)	5교 (대덕초, 인지초, 운영 예정 3곳)	‘23년 3곳 공모·선정 가정

- ☞ 현재 사업추진 중인 서산 인지초는 2026년 운영 시작됨을 가정
 - ☞ 2023~2027년까지 도내 15개 시·군별 1개 이상 학교복합시설 설치 추진 목표에 따라 2023년 진행 중인 공모에서 3곳을 선정하고, 이후 추진 단계별로 이행되어 2028년 운영 시작됨을 가정
 - ☞ 2023년 공모 3곳의 운영 시점은 서산 인지초 사업추진 경과를 준용하여 가정(‘21년 9월 공모 선정 후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모 선정에서 시설공사 준공까지의 기간 준용)
- 학교복합시설 1곳당 지원 단가는 2023년 지원금 예산액(5천만원)으로 가정

○ 2023년 본예산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고
교육혁신과	학교복합시설 운영 지원(대덕초)	50,000	

자료: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55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나. 협의회 운영(수당·여비) ≍ 23,76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지급대상: 외부 위촉 위원 9명
 - ☞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15명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를 제외한 외부위원 수
- 참석수당(1명) 단가: 1회당 100,000원
 -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기준

- 여비(1명) 단가: 1회당 20,000원

☞ 홍성~서울 일반열차 왕복 요금(19,400원), 홍성~대전 고속버스 왕복 요금(17,600원) 참고 산정

- 회의 횟수: 연간 2회

☞ 상·하반기 또는 1·2학기 기준으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2) 세부 산출내역

- 수당·여비(학교복합시설 1곳당) : 120,000원×9명×2회= 2,160,000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협의회 운영(수당·여비)	23,760	2,160	2,160	4,320	4,320	10,800

[참고] 비용 산출 전제 참고자료

- 충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안내자료 - 별첨
-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지침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II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

6.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법정위원회 참석 수당	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 100천원 ◦ 초과 : 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 2시간 초과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주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 불가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전익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89호
- 제 출 자: 전익현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1~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①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②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 ③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④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①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②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③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④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⑤ 기후위기 변화 대응, ⑥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향상, ⑦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⑧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⑨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이에스지(ESG) 경영 이란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직 운영을 말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교육청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실현을 위해 실천과제 및 활성화 방안 발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세부적인 방안 또는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입법사례: 없음

<유사 조례 1곳>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2023. 06. 01.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8.9.,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8.9.,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8.9.,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기본원칙, 평가 및 관리 방안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윤리적인 운영 및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기본계획)

-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5조는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계획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1일 박미옥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76호
- 제 출 자: 박미옥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1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 (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변형 식품과 방사능등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조례로 나뉘어 있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여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1~2조) 목적 및 정의
- (안 제4조) 학교급식계획
- (안 제5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 (안 제6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및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 (안 제8조) 식재료 검사 및 조치
-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학교급식 계획)에서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①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하고,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에서는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6조2(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에서는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식재료 평가)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에서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감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안전성검사를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9조(교육)**에서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10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에서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10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포괄적인 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04. 21.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2. 02.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1. 0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7. 0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04. 0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12. 20.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02. 1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0. 10.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나.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7.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7.14., 감사관)
-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7.14., 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방사능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 다. 방사능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

6.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료 평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식품위생법 시행령 [법률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껑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3934호, 2014. 10.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되, 연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제4조 제3항의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자료의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린다.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962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 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에 관한사항<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2. 유전자변형식품등 교육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련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품이 사용되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제8조(결과 게시)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포괄하여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임

※ 조례안의 시행으로 해당 현행 조례(2건)는 폐지

- 조례안은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사용,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포함 식재료 공급 제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급식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12조)

· 안 제4조(기본계획)는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 자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GMO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안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는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안 제10조(교육) 및 제11조(급식시설 등 개선)는 충남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급식시설현대화 등 급식관계자 연수와 급식환경개선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 계속하여 추진 예정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밖 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합동 특별 점검 등 협력 활동이 기 추진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학교급식운영 · 학교급식환경개선 / 체육건강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정밀)	17,600	안 제6조, 안 제8조
학교급식 식재료 유전자변형 검사	10,000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학교급식관계자 전문성 향상 교육(25,800천원) ·영양(교)사 전문성 향상 교육(18,000천원) ·학교급식 전담 직원 연수(43,000천원)	86,800	안 제10조
급식기구 구입 · 확충(362교)	5,704,527	안 제11조
급식실 환경개선(57교)	23,922,583	
합 계	29,741,510	

자료: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91호
- 제 출 자: 박정식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6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의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 (안 제5조)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 부여
 - 법 개정예 따라 모든 각종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나, 위탁형 각종학교는 원적교가 있는 단기간 위탁과정이므로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를 추가함
- (안 제9조제1항)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
- (안 제22조제2항) 운영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개정하여 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와 형평성을 맞추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 부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 이를 해소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경비 집행 근거를 규칙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경비 집행의 신뢰도와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6.27.,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6.27.,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6.27.,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를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를 “1년으로 규정하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를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회의 임기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보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u>-----.</p>
<p>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u>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7. (생략)</p>	<p>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 ----- <u>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u>-----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u>학교에</u>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p>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 ----- <u>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u> ----- ----- -----.</p>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생 략)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1년으로 하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의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및 체험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 교직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
의 요청한 사항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②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병설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소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다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 제8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의결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

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의개최 일시·안전 등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③ 제6조제6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학교 간 협의에 의해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전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

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 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 학교에 각종학교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비용이 발생함
- 그 외 개정 조항(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22조)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 위원의 임기(1년) 규정, 운영경비 지침을 규칙으로 정함’ 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24,300천원(연평균 4,860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대상 위원의 수는 9명으로 가정함

- (학부모위원 2명 + 지역위원 1명) × 3교 = 9명
-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로 학교별 위원회 정수는 법령상 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인 5명으로 가정하되, 당연직 포함 교원위원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3명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연간 회의 운영 횟수는 6회, 회의 시간은 1회당 2시간 미만으로 가정함
- 단, 2023년은 조례 심의 및 공포,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2023학년도 잔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회의 운영 횟수를 3회로 산정함
-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1회당 100천원으로 산정함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법정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단가) 기준

다.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24,300천원(연평균 4,86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_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00	5,400	5,400	5,400	5,400	24,300
	소계(b)		2,700	5,400	5,400	5,400	5,400	24,300
□ 총 비용(b-a)			2,700	5,400	5,400	5,400	5,400	24,300

○ 세부 산출내역

- 산출 전제

- ▶ 참석수당: 1회당 100,000원
- ▶ 지급인원: 9명(교원위원 제외)
- ▶ 지급횟수: 연 6회(1차년도인 2023년은 3회)

- 산출 내역

구분	산출 내역	비고
2023년	100,000원×9명×3회= 2,700,000원	
2024년~2027년	100,000원×9명×6회×4년= 21,600,000원	
합 계	24,30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 각종학교 현황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등

○ 각종학교 현황

2023. 5. 1.자 기준 각종학교 현황

시군 (소재지)	학교명	설립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수	학생수
아산	여해학교	공립	1	3 (3)	1	3 (3)	1	9 (9)	3	15 (15)
아산	충남다사랑학교	공립	1	10 (5)	1	12 (9)	1	11 (8)	3	33 (22)
천안	드림학교	사립	1	13	1	4	1	10	3	27

주) 학생 수는 원적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수 포함이며, 원적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수는 ()로 표시
 자료: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지침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III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

6.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 기본 : 100천원 ◦ 초과 : 50천원	※ 기본 : 2시간 초과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임의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 기본 : 50천원 ◦ 초과 : 25천원	

주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 불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정수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 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90호
- 제 출 자: 편삼범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8조의2) 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공립학교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학부모회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학부모회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 및 안정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관련법규: 교육기본법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6.27.,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6.27., 감사관)
-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6.27., 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두고” 를 “둘 수 있고” 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 ----- ----- <u>둘 수 있고</u>----- ----- -----.</p> <p><u>제8조의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u></p>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고 사용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5.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④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 종료 후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①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부모회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4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 신설)
 - 안 제8조의2는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안 제3조는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홍종식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478호
- 제출자: 윤희신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2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학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5조) 기본계획
- (안 제6조) 지원
-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① 기본방향 및 목표, ② 분석 및 평가, ③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④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충남도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증·개축사업 시 대체 교실 활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지원)에 따라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 일반교실과 역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3. 04. 1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3. 07. 26.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 관련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라. 부패영향평가:
- 마. 행정규제심사:
-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교”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은 학교를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여 학교로 운송,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석 및 평가
 3.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기본계획)

-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안 제6조(지원)

-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5조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는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규모, 내용,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밀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
- 안 제7조는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력 범위나 내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516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2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2024. 9. 1.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중학교 1개교와 2025. 3. 1.자로 신설되는 고등학교 1개교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학교 신설 대체 이전(2024. 9. 1.)
 - 중학교 1개교: 신창중학교
- 학교 신설(2025. 3. 1.)
 - 고등학교 1개교: 아산충무고등학교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4년 9월 1일자로 신설 대체 이전되는 중학교 1개교와 신설되는 고등학교 1개교를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 2, 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내용)

-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은 온양학군인 아산남성초등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 되는 신창중학교 학구(신창학구)로 변경하여 아산남성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7,0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와 기존 신창학구 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22.4.)와 제 34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2.9.20.)을 받은 바 있음

- (아산충무고등학교 신설)은 아산지역은 2023학년도 이순신고 개교와 2025학년도 충남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하여 9교에 학생배치시 10,426명, 급당 34.4명, 2028년에는 12,122명, 급당 40.0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과밀 해소가 절실하여 학급수 중등 24학급 668명, 특수 1학급 7명 등 총 77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고자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22.4.)와 제34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2.9.20.)을 받은바 있음

○ (종합의견)

- 신설 대체되는 신창중학교와, 신설 이전되는 아산충무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창중학교 2024년 9월, 아산충무고등학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11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 7. 10.~2023. 7. 3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7. 12., 민주시민교육과)

라.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감사관)

마.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아산충무고등학교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
2	천안북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	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4	천안동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63-11
5	천안성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40
6	천안봉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48
7	천안부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45-9
8	천안쌍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2길 13
9	천안두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26
10	천안오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 25
11	천안성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83
12	천안백석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1길 56
13	환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50
14	천안신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46
15	천안불당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35
16	천안월봉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45
17	천안용곡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51-14
18	천안새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49
19	천안가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83
20	천안불무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30
21	성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79
22	병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23	입장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6
24	목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25	천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403
천안시(25교)		
26	공주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1
27	봉황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01
28	공주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4
29	유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0
30	탄천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31	정안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32	우성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구례말길86
33	반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당1길 28
34	사곡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293-106
35	이인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공주시(10교)		
36	대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3
37	대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갯티1길 31
38	한내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00
39	대천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40	웅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연번	명 칭	위 치
41	보령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읍성길 87-37
42	천북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107
43	청라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804
44	남포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야동2길 24
45	주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46	미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보령시(11교)		
47	온양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48
48	온양용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01
49	온양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1번길 22
50	온양신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31
51	송남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14번길 37
52	아산배방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6
53	설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56
54	모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90
55	탕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로 53-40
56	한들물빛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3로 35
57	아산갈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05번지
58	음봉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59	아산테크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32
60	영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3번길 17
61	인주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85
62	선도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63	도고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73
64	신창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
아산시(18교)		
65	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90
66	서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 6길 11
67	서산석림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2로 8
68	서산부춘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2로 42
69	해미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93
70	부석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034
71	서산명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15
72	성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10-4
73	고북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1로 320-1
74	음암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75	인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54-9
서산시(11교)		
76	논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97번길 28
77	논산여자 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47번길 21
78	강경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을 계백로 28
79	강경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을 계백로 200
80	연무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60번길 26-2
81	노성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602-5
82	연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113-14

연번	명칭	위치
83	광석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광석로 56-3
84	가야곡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논산시(9교)		
85	용남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66
86	엄사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3
87	계룡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 5길 17
계룡시(3교)		
88	당진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89	당진중학교대호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75-22
90	원당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72-34
91	수청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692번지
92	합덕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93	합덕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94	면천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5
95	순성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틀모시로 146
96	송산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도문로 48
97	고대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15
당진시(10교)		
98	금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99	금산동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용머리길 25
100	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11
101	제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61
102	부리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말골길 57
103	진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3
104	복수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333
105	추부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2길 21
금산군(8교)		
106	부여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 14
107	부여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34
108	홍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5
109	임천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210
110	은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111	석성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7
112	세도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564-4
113	양화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67-6
부여군(8교)		
114	장항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16번길 79
115	서천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97
116	서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117	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30번길 31
118	비인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2
119	서면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777번길 3
서천군(6교)		
120	청양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79
121	정산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42

연번	명 칭	위 치
122	화성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청양군(3교)		
123	홍성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4
124	홍성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125	광천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96-34
126	내포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1
127	갈산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 9번길 39
128	홍동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735
129	홍성서부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411
130	금마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철마산길 182
홍성군(8교)		
131	예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132	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97-17
133	대술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35-7
134	삼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삼교로 173
135	덕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예학로 128
136	고덕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137	신암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413
예산군(7교)		
138	태안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139	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4길 27
140	안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43
141	창기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3-16
142	남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143	근흥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90
144	만리포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63-12
145	원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태안군(8교)		

[별표 3]

고등학교

연번	명칭	위치
1	천안제일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2	천안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3	천안중앙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91
4	천안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3길 30
5	병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6	성환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354
7	목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8	충남예술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2길 42
9	천안두정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3
10	천안월봉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11로 51
11	천안쌍용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12	천안신당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 2길 36
13	천안오성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14	천안업성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3길 65-11
15	천안청수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82-46
16	천안불당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9길 22
천안시(16교)		
17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17
18	공주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2
19	공주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20	충남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351-15
21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2
공주시(5교)		
22	대천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고로 58
23	대천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64
24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여상길 60
25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26	웅천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27	주산산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보령시(6교)		
28	온양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11
29	온양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온여고길 21번길 24
30	온양융화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10
31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32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3-60
33	설화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11
34	배방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359번길 61
35	이순신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동방로 132
36	아산충무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4-1

연번	명칭	위치
아산시(9교)		
37	서산중앙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별말1길 23
38	서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6길 27
39	대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36
40	서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72-12
41	서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문3길 37
42	부석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180-9
서산시(6교)		
43	논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65
44	논산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73-9
45	논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25
46	강경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0
47	강경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48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49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958-16
50	충남체육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2
논산시(8교)		
51	용남고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52	계룡고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서금암로 89
계룡시(2교)		
53	당진정보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5
54	당진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219-20
55	합덕제철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56	합덕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당진시(4교)		
57	금산산업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악로 1003
58	금산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59	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1
60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2
금산군(4교)		
61	부여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91번길 3
62	부여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47
63	부여정보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총절로2316번길 24
64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3
65	부여전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총절로 1027
부여군(5교)		
66	장항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77
67	서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43번길 13-16
68	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69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14
서천군(4교)		
70	청양고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87
71	정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97
청양군(2교)		

연번	명 칭	위 치
72	홍성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
73	홍성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총서로 1575번길 10
74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95
75	갈산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9번길 39
76	홍성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홍성군(5교)	
77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78	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36
79	덕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38
	예산군(3교)	
80	태안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51
81	안면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73
82	만리포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631
	태안군(3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별표 2〕 중학교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연번	명 칭	위 치	
47~63	(생략)		1~56	(생략)		
64	신창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남로 10	64	신창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4	
〔별표 3〕 고등학교			〔별표 3〕 고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연번	명 칭	위 치	
28~35	(생략)		28~35	(생략)		
		(신 설)	36	이산총무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4	
	아산시(8교)			아산시(9교)		
36~81			37~82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2. 3. 25. 시행]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한다. <후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시행]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요인(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 신설과 신설 대체 이전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517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개정이유

- 학교 신설 반영
- 학교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군·중학구 조정

3. 주요내용

- 2024. 3. 1.자 신설되는 학교 반영을 위해,
- (아산)산동초등학교를 (천안) 천안1학군과 (아산) 음봉학구에 포함

- (당진)수청초등학교와 수청중학교를 당진학군에 포함
- 2024. 9. 1.자 신설대체이전되는 (아산) 신창중학교에 따른 인근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 아산남성초등학교를 온양학군에서 신창학구로 변경

4. 검토 의견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역 · 학교 군 ·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 (종합의견)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11호) 및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공고 2023-134호) 행정예고를 통해 2024. 3. 1.자 신설하는 산동초등학교를 천안1학군과 아산 음봉학구에 포함, 아산남성초등학교를 신설 이전되는 신창중학교를 신창학구로 설정하고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15호) 행정예고를 통해 수정 초등학교와 수청중학교를 당진학군으로 설정하여
 - 신설 학교 및 신설 이전 학교에 대한 학군 설정으로 과밀해소, 교육여건개선,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본 동의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나. 신규 대비표

다. 관련 법규 발췌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마. 기타

1) 행정예고 : 2023. 6. 7.(수) ~ 7. 27.(목) [지역교육지원청별 실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I.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별표

II. 무시험입학 추첨방법

- ① 추첨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전입학생 배정의 경우는 수동식
추첨기로 행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당해 교육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의 수동식 추첨은 전입학생의 학부모가 행한다.
다만, 학부모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추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담당 국·과장
의 승인을 얻어 추첨할 수 있다.

부칙

이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산남성초등학교의
학구 변경은 신창중학교가 이전하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교군(18학군)

시군	학군별	중 학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천안	천안 1 학 군	천안중 천성중	천안여중 복자여중	천안북중 천안동중 천안성정중 천안부성중 천안두정중 천안오성중 천안성성중 천안백석중 천안가은중 환서중	남·여 공 통 천안부대, 천안업성, 양당, 직산(단, 판정리 거주 학생 중 입학학구 희망자 제외), 삼은, 소망, 천안부성, 천안신대, 천안두정, 천안오성, 환서, 천안서, 천안차암, 천안백석, 천안한들, 천안기온, 성거, 천안신부, 천안, 천안신안, 안서, 천안중앙, 천안남산, 천안구성, 천안청수, 천안삼거리, 천안청당, 천안성성, 천안희망, 천안기람, 천안능수, 미죽(남관1·4리 제외), 도장, 행정(유천2리 1~2반,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다만, 전의중 희망자 제외), 천안부영, 소정(전의중 희망자 제외), 동방(천안시 거주자), 신계(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신흥(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신통(천안시 거주자) , 천안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천안 2 학 군	천안매곡중	천안서여중	천안봉서중 천안쌍용중 천안신방중 천안불당중 천안용곡중 천안월봉중 천안새샘중 천안불무중	남·여 공 통 천안불당, 천안서당(아산시 거주자 제외), 천안용암, 천안쌍용, 천안미라, 천안월봉, 천안봉서, 천안성정, 천안몽명, 천안와촌, 천안불무, 천안아름, 천안일봉, 천안쌍정(아산시 거주자 제외), 천안수곡, 천안신촌, 천안신용, 천안용곡, 천안용소, 천안청룡, 천안새샘, 천안호수(아산시 거주자 제외), 미죽(남관1·4리), 용정(남관2·3리), 천안2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성환학군			성환중 동성중	남·여 공 통 성환, 성신(아산시 거주자 제외), 신방(아산시 거주자 제외), 쌍룡(아산 음봉학구 희망자 제외), 도하, 신가(신가리, 북모리, 와룡리 제외), 대홍(양령1,2리, 안궁리 제외), 성환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군별	중 학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공주	공주학군	공주중앙중 공주영명중	공주여중	공주사대부중	남·여 공·통 공주중동, 공주금학, 공주봉황, 공주교동, 공주신월, 태봉, 효포, 신관, 의당, 수촌, 귀산, 공주교대부설, 상서(방문리, 상서리, 옥성리 제외), 계룡(기산리), 우성(오동리, 죽당리, 어천리5반), 목면(어천리1~4반), 석송(평정1,2리, 화봉1,2리, 상룡리),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탄천학구·이인학구·정안학구·경천학구·우성학구·반포학구·사곡학구 희망자 제외
보령	대천학군	대천중앙중 대명중			남학생 대천, 대남, 한내, 대천동대, 관창, 송학, 장고분교장, 대관, 성주, 삼시분교장, 청파초외연도분교장, 개화, 청룡(남곡동), 명천, 청파(녹도리, 호도리), 광명(대천서중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천북학구·청리학구·주산학구·남포학구·미산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여중 한내여중		여학생 대천, 대남, 한내, 대천동대, 청룡(남곡동), 대관, 명천, 청파초외연도분교장, 장고분교장, 삼시분교장, 청파(녹도리, 호도리), 광명(대천서중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천북학구·청리학구·주산학구·남포학구·미산학구 희망자 제외
아산	온양학군	온양중앙중 아산중앙중	온양여중 온양한울중	온양용화중 온양신정중	남·여 공·통 온양, 온양온천, 온양동신, 온양초사, 온양천도, 신리, 신광, 온양중앙, 용화, 온양권곡, 온양신정, 온양풍기, 금곡, 염티(서원2리 제외), 송곡, 아산남성 , 충무, 아산, 온양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제외
	배방학군			아산배방중 모산중	남·여 공·통 배방, 모산, 아산복수, 아산공수, 용정(갈매2리), 배방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제외
	둔포학군			아산테크노중 둔포중	남·여 공·통 관대, 남창, 둔포, 염작, 신방(아산시 거주자), 성신(아산시 거주자)
	설화학군			설화중 한들물빛중	남·여 공·통 동방(천안시 거주자 제외), 연화, 아산용연, 한들물빛, 아산세교, 천안서당(아산시 거주자), 천안쌍정(아산시 거주자), 천안호수초(아산시 거주자)

시군	학군별	중 학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서산	서산학군	서 산 중	서 산 여 중	서산석림중 서산부춘중 서 령 중	남·여 공 통 서산, 서동, 오산(귀밀리, 응소성리 제외), 서령, 부춘, 서림, 차동, 동암(신장1리, 부장1리, 유계1리 제외), 학돌, 서산석림, 서산예천, 서산동문, 서산서남,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팔봉학구·대철학구·부석학구·고북학구 희망자 제외
논산	논산학군	논 산 중 논산대안중 기 민 중	논 산 여 중 썩 뽕 여 중		남·여 공 통 논산부창, 논산반월, 왕전, 논산동성, 채운(장화1리, 삼거1리 제외), 원봉, 성덕, 성동(월성리 제외), 부적, 감곡 논산중앙, 은진, 광석(득윤리 전지역, 갈산1리 2,3반, 갈산2리), 논산내동, 논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석학구·연산학구 희망자 제외
당진	당진학군			당 진 중 원 당 중 호 서 중 수 청 중	남·여 공 통 당진, 성당(대운산리-가지매기, 굴미마을 제외), 계성, 탑동, 당산(당산리, 금암리), 순성(갈산리), 기지(시곡리, 가교2리), 면천(죽동리, 용연2리), 천의 [두산1리 2반, 3반(뽕골제외), 4반(고티마을 제외)제외], 정미(수당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제외), 원당, 삼봉초 난지분교, 대덕, 수청,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고대학구·석문학구·면천학구·순성학구·송산학구·대호지학구 희망자 제외
	합덕학군	합 덕 중	합 덕 여 중	서 야 중	남·여 공 통 합덕[합덕리, 하흑리, 옥금리, 도리, 정원리(하점원, 중점원), 신흥리(상동), 예산군 신암면 하평2리(4반), 송산 1리(2·3반 일부)제외], 신촌(성동리), 우강(송산1·2·3리, 세류리, 원신흥리 제외)
금산	금산학군	금 산 중	금 산 여 중	금 산 동 중	남·여 공 통 금산중앙, 금산, 금산동, 금성, 용문, 금계 분교장(마수1리), 진산(건천1리), 남일, 남이,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진산학구·부리학구·제원학구 희망자 제외
서천	서천학군		서 천 여 중 서 림 여 중		여학생 서천, 서남, 송석, 부내, 시초, 문산, 마동(산내리), 서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비인학구·서면학구·동강학구·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군별	중 학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청양	청양학군		청신여중	청양중	남·여 공·통	청양, 청송, 수정, 운곡(광암리, 주광리, 미량리 중 예산 신양학군 희망자 제외, 신양면 가지리 거변 제외), 남양(금정리, 온직리), 가남(옥계리 제외)
홍성	홍성학군	홍성중 홍주중			남학생	홍성(신성리·원천리 제외), 홍주, 홍남, 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 배양(장성리·신곡리), 용봉, 구항, 대정(마온리·청광리), 수덕(광천 1리 제외, 내포덕산학군 희망자 제외), 은하(유송리·대천리·학산리 중 내동 거산마을, 장곡리·대울리·금곡리), 장곡(행정리, 천태리, 산성리), 갈산(갈오리), 장곡·금당(월계리 중 홍성학군 희망자), 결성(홍성학군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 목현리, 덕실리 중 홍성학군 희망자), 홍성학군 졸업(예정)자 중 홍성서부학구·갈산학구·금마학구·홍동학구 희망자 제외
홍성·예산	내포덕산학군			내포중 덕산중	남·여 공·통	내포, 한울, 홍북, 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홍성학군·홍성학구·홍성서부학구·갈산학구·금마학구·홍동학구 희망자 제외 덕산, 시량, 봉산(시동리), 수덕(광천1리, 홍성학군·홍성학구 희망자 제외), 용동(가리), 보성, 삼교(송산리, 상하리, 가리), 내포덕산학군(예산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덕학구·삼교학구 희망자 제외

2. 중학구(109학구)

시군	학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천 안 (5 개 학구)	입장학구			입 장 중	남·여 공 통 입장, 양대, 산평(도림1리), 직산(판정리 거주학생 중 희망자)
	병천학구			병 천 중	남·여 공 통 병천, 천동(화덕1,2리 제외)
	광풍학구			광 풍 중	남·여 공 통 풍세, 광덕, 용정(남관2·3리, 갈매리 제외), 보산원, 천안학군·성환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 희망자
	목천학구			목 천 중	남·여 공 통 목천, 신계(천안1학군 희망자 제외), 은석, 위례, 신흥(천안1학군 희망자 제외)
	천남학구			천 남 중	남·여 공 통 성남, 신사, 수신, 천안학군·성환학군 졸업(예정)자 중 천남학구 희망자
공 주 (8 개 학구)	탄천학구			탄 천 중	남·여 공 통 탄천(운암리 5반 제외), 공주학군 졸업 (예정)자 중 탄천학구 희망자
	이인학구			이 인 중	남·여 공 통 이인, 탄천(운암리 5반), 공주학군 졸업 (예정)자 중 이인학구 희망자
	정안학구			정 안 중	남·여 공 통 정안, 마곡[유룡리, (회학리·월가리 중 사곡학구 희망자제외)], 석송(평정1·2리, 화봉1·2리, 상룡리제외), 공주학군 졸업 (예정)자 중 정안학구 희망자
	유구학구			유 구 중	남·여 공 통 유구, 구산, 덕암, 신평
	경천학구			경 천 중	남·여 공 통 경천, 계룡(기산리 제외), 상월[지경2리, 월오2리, (대촌1~2리, 대우리, 대명1~2리, 상도1~3리, 석종1~3리 중 논산 노성학구 희망자 제외)],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경천학구 희망자
	우성학구			우 성 중	남·여 공 통 우성(오동리, 죽당리, 어천리 5반 제외), 상서(방문리, 상서리, 옥성리),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우성학구 희망자
	반포학구			반 포 중	남·여 공 통 반포, 학봉,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반포학구 희망자
	사곡학구			사 곡 중	남·여 공 통 호계, 마곡[유룡리 제외, 회학리·월가리 중 정안학구 희망자 제외)],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사곡학구 희망자

시군	학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보령 (9개 학구)	대천학구		대천여중		여학생	관창(보령학구 희망자 제외), 송학(보령학구 희망자 제외), 성주, 개화(미산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서중학구			대천서중	남·여 공통	청룡(남곡동 제외), 청파(녹도리, 호도리 제외)대천학군의 광명초 졸업(예정)자 중 대천서중학구 희망자
	보령학구			보령중	남학생	주포, 오천, 청소(재정1리, 죽림리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 희망자
					여학생	주포, 오천, 청소(재정1리, 죽림리 제외), 관창(대천학구 희망자 제외), 송학(대천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 희망자
	웅천학구			웅천중	남·여 공통	웅천, 대창, 관당, 주산(증산3리)
	주산학구			주산중	남·여 공통	주산(증산3리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주산학구 희망자
	천북학구			천북중	남·여 공통	천북, 낙동(신죽리, 신덕리 중 흥성 광천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천북학구 희망자
	청라학구			청라중	남·여 공통	청라, 옥계, 청보,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청라학구 희망자
	미산학구			미산중	남학생	미산,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미산학구 희망자
					여학생	미산, 개화(대천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미산학구 희망자
남포학구			남포중	남·여 공통	남포, 월전,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남포학구 희망자	
아산 (8개 학구)	선도학구			선도중	남·여 공통	선장, 도고온천(신언리)
	인주학구			인주중	남·여 공통	인주, 금성
	신창학구			신창중	남·여 공통	오목, 신창, 아산남성
	음봉학구			음봉중	남·여 공통	음봉(신수리 제외), 월랑, 쌍룡(천안 성환학군 희망자 제외), 동덕(음봉면 산동리 중 음봉학구 희망자), 산동(아산시거주자)
	도고학구			도고중	남·여 공통	도고, 도고온천(신언리 제외)
	송남학구			송남중	남·여 공통	송남, 거산, 온양학군·배방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영인학구			영인중	남·여 공통	영인, 신화, 음봉(신수리), 영티(서원2리)
	탕정학구			탕정중	남·여 공통	탕정, 탕정미래, 동덕(음봉면 산동리 중 음봉학구 희망자 제외), 아산갈산

시군	학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서 산 (11개 학구)	대철학구			대 철 중	남·여 공 통	운산, 운신(원벌리, 거성1리, 용현리, 서산학군 거주자 중 희망자), 정미(수당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운산·운신(상성리 중 음암학구 희망자 제외), 성당(대운산리-가지매기, 굴미마을),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대철학구 희망자
	해미학구			해 미 중	남·여 공 통	해미, 언암(신정리·신상2리 3,4반 중 고북학구 희망자 제외), 운신(신창리, 훙천리, 관유리, 삼송리, 거성3리), 오산(귀밀리, 웅소성리)
	부석학구			부 석 중	남·여 공 통	부석, 간월도분교장, 강당, 가사,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부석학구 희망자
	인지학구			인 지 중	남·여 공 통	인지
	대산학구			대 산 중	남·여 공 통	대산, 부성(환성 1·2·3리, 대요 1·2리 중 대산학구 희망자)
	명지학구			서 명 지 중	남·여 공 통	명지, 서산대진
	성연학구			성 연 중	남·여 공 통	성연(율목1리 제외), 부성(무장3·4리 중 성연학구 희망자)
	고북학구			고 북 중	남·여 공 통	고북, 언암(신정리·신상2리 3,4반 중 고북학구 희망자),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고북학구 희망자
	음암학구			음 암 중	남·여 공 통	음암, 동암(신장1리, 부장1리, 유계1리, 서산학군 거주자 중 희망자), 성연(율목1리), 운산·운신(상성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제외), 운신(거성2리)
	팔봉학구			팔 봉 중	남·여 공 통	팔봉(도내2리 1반 제외, 도내1리 중 태안 태안학구 희망자 제외),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팔봉학구 희망자, 화동[인평1리(흔진다리) 2리, 3리 중 서산 팔봉학구 희망자]
	서일학구			서 일 중	남·여 공 통	부성(환성 1·2·3리, 대요 1·2리 중 대산학구 희망자 제외, 무장 3·4리 중 성연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논 산 계 룡 (10개 학구)	연무학구	연 무 중	연무여중		남·여 공 통	구자곡, 연무[(황화정1(6·7반 제외)·2리, 봉동리, 고내리, 마전리(신양, 주촌마을 제외)], 연무중앙, 이화
	강경학구	강 경 중	강경여중		남·여 공 통	강경중앙, 강경산양, 강경황산, 성동(월성리, 병촌리, 우근리, 개척1.2리), 채운(장화1리, 삼거1리), [전북 흥왕(대조리, 두무, 비야마을), 망성(내촌리, 동촌마을, 어량리, 상발, 중발, 하발, 호천, 야정), 성북]
	가 야 곡 학 구			가야곡중	남·여 공 통	가야곡(병암리 제외), 양촌(가야곡면 양촌리)
	건양학구			건 양 중	남·여 공 통	반곡(거사1.2리, 신흥1·2리, 반곡1리), 양촌(가야곡면 양촌리 제외)
	노성학구			노 성 중	남·여 공 통	노성, 상월[지경2리, 월오2리 제외, (대촌 1리~2리·대우리·대명 1리~2리·상도 1리~3리·석중 1리~3리 중 공주 경천학구 희망자 제외)],
	연산학구			연 산 중	남·여 공 통	연산, 청동, 백석, 반곡(거사1·2리, 신흥 1·2리, 반곡1리 제외), 가야곡(병암리) 논산학군, 용남학구·엄사학구·계룡 학구 졸업(예정)자 중 연산학구 희망자
	광석학구			광 석 중	남·여 공 통	광석(득윤리 전지역, 갈산1리2·3반, 갈산2리 제외), (부여)초촌[(송정리, 진호리, 소사리, 산직1리, 산직2리(삼가마을 제외)중 광석학구 희망자)], 논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석학구 희망자
	용남학구			용 남 중	남·여 공 통	용남(연산학구 희망자 제외)
	엄사학구			엄 사 중	남·여 공 통	엄사, 신도 엄사학구 졸업(예정)자 중 연산학구 희망자 제외
	계룡학구			계 룡 중	남·여 공 통	벌곡(대전 우명동 제외), 도산(행정리 제외), 두마(대전 진장동 9·10통 제외), 금암, 계룡학구 졸업(예정)자 중 연산 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당진 (10개 학구)	합덕학구	합 덕 중	합덕여중		남·여 공 통	합도, 북창(상오리, 아찬리, 신송1.2리 제외), 우강 [(송산1리(1반, 2·3반 일부, 4·5반), 송산2리, 송산3리, 세류리, 공포리, 신촌리), 합덕[송산1리(2·3반 일부)]
	면천학구			면 천 중	남·여 공 통	면천(죽동리, 용연2리 제외),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면천학구 희망자
	석문학구			석 문 중	남·여 공 통	삼봉, 초락, 석문(삼화리, 성산리 제외) 삼봉초난지분교,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석문학구 희망자 [삼봉초난지분교, 삼봉초(소난지도)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하는 중학교군 · 중학구와 공동학구]
	송악학구			송 악 중	남·여 공 통	송악, 상록, 기지(시곡리, 가교2리, 본당리, 청금리, 봉교리, 광명리 1반 제외), 전대 (금곡리, 영천리1반)
	고대학구			고 대 중	남·여 공 통	고대, 고산, 석문(삼화리, 성산리),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고대학구 희망자
	신평학구			신 평 중	남·여 공 통	신평, 한정, 전대(금곡리, 영천리 1반 제외), 북창(신송1.2리, 상오리, 아찬리 4·5반), 서정, 우강[부장리, 신흥1리 (통포원), 신송2리(지나들기)], 기지 (본당리1·2·3·5반, 청금리, 봉교리, 광명리1반)
	순성학구			순 성 중	남·여 공 통	순성(갈산리 제외), 북창(아찬리 4,5반 제외), 기지(본당리 4반), 당진학군 졸 업(예정)자 중 순성학구 희망자
	송산학구			송 산 중	남·여 공 통	송산, 유곡, 당산(당산리, 금암리 제외),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산학구 희망자
	서야학구			서 야 중	남·여 공 통	합덕[(합덕리, 하흑리, 옥금리, 도리, 점원리(하점원, 중점원), 신흥리(상동), 신석리, 예산군 신암면 하평2리(4반)], 신촌(성동리, 상궁1리 제외), 우강(원 신흥리)
	대호지 학 구			당 진 중 대 호 지 분 교 장	남·여 공 통	조금, 천의(두산1리 2,3,4반, 단, 3반 뱀골, 4반 고티마을 제외),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대호지학구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금 산 (5 개 학구)	부리학구			부 리 중	남·여 공·통	부리, 전북 부당(전북 부남학구 희망자 제외),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부리학구 희망자
	진산학구			진 산 중	남·여 공·통	진산(건천1리 제외), 도산(행정리),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진산학구 희망자
	추부학구			추 부 중	남·여 공·통	추부, 성대, 금계분교장(마수1리 제외), 군북(동편리, 조정리), 복수(다북 2리, 목소리, 용진 1~3리 중 추부학구 희망자)
	복수학구			복 수 중	남·여 공·통	복수(다북 2리, 목소리, 용진 1~3리 중 추부학구 희망자 제외), 신대(지랑리 제외)
	제원학구			제 원 중	남·여 공·통	제원, 군북(동편, 조정리 제외), 상곡,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제원학구 희망자
부 여 (10개 학구)	부여학구	부 여 중	부여여중		남·여 공·통	부여, 백제, 송간, 백강, 대왕, 공남, 장암(지토3,4리 중 임천학구 희망자 제외), 임천(지토3,4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마정(점상1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임천학구·외산학구·용강학구 희망자 제외
	홍산학구			홍 산 중	남·여 공·통	홍산(송학리, 조현2리, 무정리 제외), 옥산, 마산(나궁리, 군간리, 관포리), 충화(임천학구 희망자 제외), 마정(점상1리 제외)
	백제학구			백 제 중	남·여 공·통	규암, 합송(구봉1리 제외)
	은산학구			은 산 중	남·여 공·통	은산, 장평(죽림리)
	외산학구			외 산 중	남·여 공·통	외산, 내산(온해리, 지티리, 금지리 중 외산학구 희망자),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외산학구 희망자
	임천학구			임 천 중	남·여 공·통	마정(점상1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제외), 충화(홍산학구 희망자 제외), 임천(지토3,4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제외), 장암(지토3,4리 중 임천학구 희망자),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임천학구 희망자
	용강학구			용 강 중	남·여 공·통	구룡, 용당, 내산(온해리, 지티리, 금지리 중 외산학구 희망자 제외), 홍산(송학리, 조현2리, 무정리), 합송(구봉1리),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용강학구 희망자

시군	학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석성학구			석 성 중	남·여 공·통	석성, 석양, 초촌[송정리, 진호리, 소사리, 산직1리, 산직2리(삼가마을제외)중 논산 광석학구 희망자 제외]
	세도학구			세 도 중	남·여 공·통	세도
	양화학구			양 화 중	남·여 공·통	양화(시음1,2리, 상촌1,2리 제외)
서 천 (7 개 학구)	서천학구	서 천 중			남학생	서천, 서남, 송석, 부내, 시초, 마동 (산내리), 문산, 서천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비인학구·서면학구· 동강학구·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장항학구			장 항 중	남·여 공·통	장항, 장항중앙, 마동(산내리 제외), 화양, (장상리, 망월리), 송림, 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비인학구· 서면학구·동강학구·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한산학구			한 산 중	남·여 공·통	한산, 화양(봉명리, 고마리, 창외리, 금당리, 장상리, 망월리 제외), 마산(나궁리, 군간리, 관포리 제외), 기산(이사리), 양화(시음 1,2리, 상촌1,2리),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 (예정)자 중 한산학구 희망자
	동강학구			동 강 중	남·여 공·통	기산(이사리 제외), 화양(봉명리, 고마리, 창외리, 금당리), 서천(기산면 원길리 (원길) 중 희망자), 도내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로서 희망자, 서천학군·서천학구· 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동강학구 희망자
	비인학구			비 인 중	남·여 공·통	비인,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비인학구 희망자
	판교학구			판 교 중	남·여 공·통	오성,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판교학구 희망자
	서면학구			서 면 중	남·여 공·통	서면, 서도,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 학구 졸업(예정)자 중 서면학구 희망자
청 양 (3 개 학구)	동영학구			동 영 중	남·여 공·통	남양(금정리, 온직리 제외)
	정산학구			정 산 중	남·여 공·통	정산, 목면(어천리 제외), 미당, 장평(죽림리 제외), 청남
	화성학구			화 성 중	남·여 공·통	합천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홍 성 (7 개 학구)	홍성학구		홍성여중		여학생	홍성(신성리·원천리제외), 홍주, 홍남, 내포 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희망자, 용봉, 구항, 수덕 (광천1리 제외, 내포덕산학군 희망자 제외), 은하(유송리·대천리·학산리 중 내동·거산 마을, 장곡리·대율리·금곡리), 배양(장성리· 신곡리), 갈산(갈오리), 대정(마은리·청 광리), 장곡(행정리·천태1리·산성리), 장곡· 금당(월계리 중 홍성학구 희망자), 결성 (홍성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목현리·덕실리 중 홍성학구 희망자), 홍성학구 졸업(예정)자 중 홍성 서부학구·갈산학구·금마학구·홍동학구 희망자 제외
	금마학구			금 마 중	남·여 공 통	금마, 배양(장성리, 신곡리 제외), 결성 (금마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목현리·덕실리 중 금마학구 희망자), 홍성학군·홍성학구·내포덕산 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금마학구 희망자
	광천학구			광 천 중	남·여 공 통	광천, 장곡(행정리·천태리·산성리· 지정1리·월계리 제외), 청소(죽림리, 재정1리), 대정(마은리, 청광리 제외), 은하 (화봉리, 대판리), 서해삼육, 낙동(신죽리, 신덕리 중 광천학구 희망자), 결성(광천 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목현리·덕실리 중 광천학구 희망자)
	홍성서부 학 구			홍 성 서 부 중	남·여 공 통	서부, 신당, 결성(홍성서부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내남마을·목현리 ·덕실리 중 홍성서부학구 희망자), 홍성 학군·홍성학구·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홍성서부학구 희망자
	갈산학구			갈 산 중	남·여 공 통	갈산(갈오리 제외), 결성(갈산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내남마을·목현리 ·덕실리 중 갈산학구 희망자), 홍성학군 ·홍성학구·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갈산학구 희망자
	홍동학구			홍 동 중	남·여 공 통	홍동, 금당(월계리 제외), 홍성(신성리· 원천리), 장곡(지정리1구), 홍성학군· 홍성학구·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홍동학구 희망자
	권장학구			서 해 삼 육 중	남·여 공 통	도내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예 산 (9개 학구)	예산학구	예 산 중	예산여중		남·여 공 통	예산, 금오, 예산중앙, 신례원, 오가(신원리, 원평리), 평촌(입침리), 응봉(노화리, 지석리 제외),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고덕학구·신암학구·임성학구·신양학구·대술학구·광시학구·대흥학구 희망자 제외
	고덕학구			고 덕 중	남·여 공 통	고덕, 구만, 예덕, 봉산(시동리 제외), 신촌(상궁리1구), 예산학구·내포덕산학군(예산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덕학구 희망자
	삼교학구			삼 교 중	남·여 공 통	삼교(송산리, 상하리, 가리 제외), 용동(가리 제외), 내포덕산학군(예산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삼교학구 희망자
	신암학구			신 암 중	남·여 공 통	신암, 조림,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신암학구 희망자
	임성학구			임 성 중	남·여 공 통	양신, 오가(신원리, 원평리 제외)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임성학구 희망자
	신양학구			신 양 중	남·여 공 통	신양, 운곡(광암리, 추광리, 미량리 중 신양학구 희망자, 신양면 가지리 거변),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신양학구 희망자
	대술학구			대 술 중	남·여 공 통	대술,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대술학구 희망자
	대흥학구			대 흥 중	남·여 공 통	대흥, 응봉(노화리, 지석리), 평촌(입침리 제외), 웅산[장신리(2리 제외), 서초정리, 장전리, 신흥리, 동산리], 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희망자,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대흥학구 희망자
	광시학구			광 시 중	남·여 공 통	웅산(서초정리, 장전리, 신흥리, 동산리 제외, 장신2리), 장곡(천태2리), 장곡·금당(월계리 중 광시학구 희망자),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광시학구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태 안 (7 개 학구)	태안학구	태 안 중	태안여중		남·여 공·통	태안, 백화, 송암, 화동[인평1리(흔진다리), 2리, 3리 중 서산 팔봉학구 희망자 제외], 시목(양산2리 1반~2반, 수룡리3~5반, 시목1리, 장대1리), 대기(양산1리, 양산2리3~4반, 장대2리), 팔봉[도내2리1반, (도내1리 중 태안학구 희망자)],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만리포학구·원이학구·남면학구·근흥학구 희망자 제외
	만 리 포 학 구			만 리 포 중	남·여 공·통	소원, 모항, 시목(시목2리),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만리포학구 희망자
	창기학구			창 기 중	남·여 공·통	창기, 안면(정당4리, 정당2리 4반)
	안면학구			안 면 중	남·여 공·통	안중, 방포, 안면(정당4리, 정당2리 4반 제외), 고남
	원이학구			원 이 중	남·여 공·통	원북, 대기(대기1, 2리, 청산2리, 동해2리), 이원, 관동분교장, 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희망자,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원이학구 희망자
	남면학구			남 면 중	남·여 공·통	남면, 삼성,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남면학구 희망자
	근흥학구			근 흥 중	남·여 공·통	안흥, 신진도분교장, 근흥,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근흥학구 희망자

※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교육장이 지정한 작은학교(초)와 교육감이 지정한 건강학교(초)에 전·입학한 학생이 거주지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장은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진계획에 반영 후 거주지 소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배정 할 수 있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중학군(18학군)					1. 중학군(18학군)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당초등학교명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당초등학교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천안	천안 1 학 군	천안중	천안성중	천안북중 천안동중 천안서중 천안부중 천안두정중 천안오성중 천안성성중 천안백성중 천안기중 한서중	남·여 공·통	천안	천안 1 학 군	천안중	천안성중	천안북중 천안동중 천안서중 천안부중 천안두정중 천안오성중 천안성성중 천안백성중 천안기중 한서중	남·여 공·통			
		온양중	온양한울중	온양여중 온양한울중		남·여 공·통		온양	온양 학 군	온양중		온양한울중	온양여중 온양한울중	남·여 공·통
		당진중	당진원당중	당진중 원당중 호서중 수청중				남·여 공·통		당진		당진 학 군	당진중	
천안부대, 천안염정, 양당, 직산(단, 판정리 거주 학생 중 입학학구 희망자 제외), 상은, 소양, 천안부성, 천안신대, 천안두정, 천안오성, 한서, 천안서, 천안차암, 천안백석, 천안한들, 천안기은, 성거, 천안신부, 천안, 천안신안, 안서, 천안중앙, 천안남산, 천안구성, 천안청수, 천안삼거리, 천안청당, 천안성성, 천안희망, 천안기림, 천안능수, 미죽(남관·4리 제외), 도장, 행정(유천리 1-2반,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다만, 전의중 희망자 제외), 천안부영, 소정(전의중 희망자 제외), 동방(천안시 거주자), 신계(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신흥(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천안여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천안부대, 천안염정, 양당, 직산(단, 판정리 거주 학생 중 입학학구 희망자 제외), 상은, 소양, 천안부성, 천안신대, 천안두정, 천안오성, 한서, 천안서, 천안차암, 천안백석, 천안한들, 천안기은, 성거, 천안신부, 천안, 천안신안, 안서, 천안중앙, 천안남산, 천안구성, 천안청수, 천안삼거리, 천안청당, 천안성성, 천안희망, 천안기림, 천안능수, 미죽(남관·4리 제외), 도장, 행정(유천리 1-2반,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다만, 전의중 희망자 제외), 천안부영, 소정(전의중 희망자 제외), 동방(천안시 거주자), 신계(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신흥(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천안여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온양, 온양온천, 온양동신, 온양초사, 온양천도, 신리, 신광, 온양중앙, 용화, 온양권곡, 온양신정, 온양풍기, 금곡, 염티(서원2리 제외), 송곡, 아산남성, 충무, 아산, 온양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제외					온양, 온양온천, 온양동신, 온양초사, 온양천도, 신리, 신광, 온양중앙, 용화, 온양권곡, 온양신정, 온양풍기, 금곡, 염티(서원2리 제외), 송곡, 아산남성 , 충무, 아산, 온양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제외									
당진, 성당(대운산리-가지매기, 굴미마을 제외), 계성, 탑동, 당산(당산리, 금암리), 순성(갈산리), 기지(시곡리, 가교2리), 면천(죽동리, 용연2리), 천의[두산1리 2반, 3반(백골제외), 4반(고티마을 제외) 제외], 경미(수당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제외), 원당, 삼봉초난지분교, 대덕,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대학구·석문학구·면천학구·순성학구·송신학구·대호지학구 희망자 제외					당진, 성당(대운산리-가지매기, 굴미마을 제외), 계성, 탑동, 당산(당산리, 금암리), 순성(갈산리), 기지(시곡리, 가교2리), 면천(죽동리, 용연2리), 천의[두산1리 2반, 3반(백골제외), 4반(고티마을 제외) 제외], 경미(수당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제외), 원당, 삼봉초난지분교, 대덕, 수청 ,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고대학구 ·석문학구·면천학구·순성학구·송신학구·대호지학구 희망자 제외									

현 행

개 정 안

2. 중학구(109학구)

2. 중학구(109학구)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당초등학교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아산	신창학구			신창중	남 · 여 공 · 통	오목, 신창
	음봉학구			음봉중	남 · 여 공 · 통	음봉(신수리 제외), 월량, 쌍룡(천안 성환학군 희망자 제외), 동덕(음봉면 산동리 중음봉학구 희망자)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당초등학교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아산	신창학구			신창중	남 · 여 공 · 통	오목, 신창, 아산 남성
	음봉학구			음봉중	남 · 여 공 · 통	음봉(신수리 제외), 월량, 쌍룡(천안 성환학군 희망자 제외), 동덕(음봉면 산동리 중음봉학구 희망자), 산동(아산시거주자)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시행]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설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518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변경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재산현황				비고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변경안	토지	변경 전	8,966.0	57.2	57.2	기준가격 : 827.7% 증
			변경 후	8,966.0	530.7	1,151.7	
		건물	변경 전	1,478.8	134.9	134.9	기준가격 : 56.3% 증
			변경 후	1,361.3	210.9	257.1	
		공작물 등	변경 전	0	5.1	5.1	
			변경 후	0	5.1	7.2	
		계	변경 전	10,444.8	197.2	197.2	
			변경 후	10,327.3	746.7	1,416.0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변경안	토지	변경 전	14,580.0	115.3	115.3	기준가격 : 424.7% 증
			변경 후	14,580.0	605.0	801.9	
		건물	변경 전	1,294.4	237.3	237.3	
			변경 후	1,110.8	280.3	227.0	
		공작물 등	변경 전	0	44.4	44.4	
			변경 후	0	44.4	32.9	
		계	변경 전	15,874.4	397.0	397.0	
			변경 후	15,690.8	929.7	1,061.8	
3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변경안	건물	변경 전	1,275.0	3,921.0	3,921.0	기준가격 : 146.3% 증
			변경 후	2,508.9	9,661.0	9,661.0	

○ 취득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	토 지	15,346.0	4,179	20,256	
		건 물	19,306.0	45,089	45,089	
2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	토 지	14,928.0	2,674	18,884	
		건 물	19,306.0	45,089	45,089	
취 득 계		토 지	30,274.0	6,853	39,140	
		건 물	38,612.0	90,178	90,178	
		계	68,886.0	97,031	129,318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¹⁾과 처분²⁾에 관한 계획 수립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구] 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 사업기간: 2024. 1. ~ 2024. 8.(8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일원

1)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2)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규 모: 토지 8,966㎡, 건물 1,361.2㎡(지상 2층)
- 학교현황: 2009. 3. 1. 폐교(인지초등학교로 통폐합)
- 사업금액: 총 1,416백만 원(토지 1,151.7백만 원 건물 257.1백만 원 공작물 등 7.2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명 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 지	인지면 모월리	311-2	학 교 용 지	7,578.0	448.6	985.1
	인지면 모월리	산48-6	임 야	1,388.0	82.1	166.6
소 계				8,966.0	530.7	1,151.7
건 물	인지면 모월리	311-2	본 동 교 사	917.5	174.8	183.5
			후 동 교 사	180.0	19.3	36.0
			교실/급식실	180.0	11.5	27.0
			숙 직 실	28.8	1.8	3.7
			창 고	30.2	1.9	3.9
			화 장 실	24.8	1.6	3.0
소 계				1,361.3	210.9	257.1
공작물 등	인지면 모월리	311-2	공작물/입목죽	1식	5.1	7.2
소 계				1식	5.1	7.2
총 계				10,327.3	746.7	1,416.0

- (필요성)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은 2009. 3. 1. 폐교하여 2019. 11. 11.부터 2023. 12. 31.까지 문화체험시설로 대부중이며, 대부 종료 후 향후 교육·행정목적 활용계획이 없으며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서산시에 매각하게 되었음

○ (추진경과)

- 2021.12.27. 롯데캐슬더두정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09.03.01.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폐지
- 2009.11.11.~ 대부(문화체험시설 도비스쿨)
- 2013.10.17.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14.04.0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22.04.18. 서산시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활용계획 협조 요청
- 2022.09.16. 서산시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활용 추진계획 알림
- 2023.02.22. 서산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계획 최종 승인 알림
- 2023.05.22.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제소전 화해조서 성립
- 2023.08.03.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검토의견)

-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은 2009년 폐교 이후 이미 제269회 임시회(2014. 4. 2.)에서 매각에 대해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공유 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기준가격이 토지(827.7%), 건물(56.3%) 각각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³⁾ 심의 대상에 해당 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기준가격이 30%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1년)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 규 모: 토지 14,580㎡, 건물 1,110.8㎡(지상 2층)
- 학교현황: 1999. 9. 1. 폐교(고북초등학교로 통폐합)
- 사업금액: 총 1,061.8백만 원(토지 801.9백만 원 건물 227백만 원 공작물 등 32.9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명 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 정 금 액
토 지	고북면 봉생리	101-2	학 교 용 지	14,580.0	605.0	801.9
소 계				14,580.0	605.0	801.9
건 물	고북면 봉생리	101-2	본 동 교 사	948.5	270.9	199.2
			사 택	47.6	2.6	9.5
			사 택	48.2	2.6	9.6
			창 고	25.3	1.6	2.5
			숙 직 실	41.2	2.6	6.2
소 계				1,110.8	280.3	227.0
공작물 등	고북면 봉생리	101-2	공작물/입목죽	1식	44.4	32.9
소 계				1식	44.4	32.9
총 계				15,690.8	929.7	1,061.8

- (필요성) (구)삼포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되어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관리중에 있으나, 향후 교육·행정목적 활용계획이 없어 폐교를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999.09.01. (구)삼포초등학교 폐지
- 2003.05.01. ~ 2018.09.30. 대부(교육용시설-청소년수련원)
- 2014.02.26.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14.04.0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19.01.21.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공고
- 2019.03.04. (구)삼포초등학교 계약대상자 결정 통보
- 2019.03.20. (구)삼포초등학교 매매계약 포기각서 제출
- 2023.08.03.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검토의견)

- (구)삼포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 이후 이미 제269회 임시회 (2014. 4. 2.)에서 매각에 대해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이후 토지 기준가격이 30%이상(424.7%)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⁴⁾ 심의 대상에 해당 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기준가격이 30%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청양시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 사업기간: 2023. 8. ~ 2025. 12.(2년 5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89-5(1,830㎡, 답)
- 규 모: 건물 2,508.98㎡(지하 1층, 지상 2층)
- 시설현황: 체험실 8실, 사무실 등 지원실 4실, 주차장 1식(26면)
(개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 사업금액: 총 9,661백만 원(건축비 9,66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9,661	478	9,183	0	
보통교부금	9,661	478	9,183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규모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체험실	지원실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8	4	2025.12.	1,830	2,508.98	0	9,661	9,661

※ 총사업비 10,714백만 원(건축비 9,661백만 원, 교재교구비 등 1,053백만 원)

※ 청양고등학교 관리 토지(현재 실습지) 활용으로 토지매입비 없음

- (필요성) 충남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 과제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AI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과 미래교육 실천 및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거점센터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경과)

- 2022.07.~08. 청양AI체험센터 신축 검토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타당성 조사(교육과-9209, 2022. 7. 8.)
- 2022.07.~08. 우수사례 참고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청양초 방문 협의 (천안AI 꿈키움센터, 천안불당초, 천안월봉고)
- 2022.09.15. 실무단 구성(교육과, 행정과, AI전문가)(교육과-14380, 2022. 10. 31.)
- 2022.10.06. 청양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청양초-10857, 2022. 10. 17.)
- 2022.10.1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2.11.03.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조직(교육과-14789, 2022. 11. 07.)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시 부족한 청양초등학교 주차장 확보)
(인접한 사유지,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추진)
- 2022.11.14. 인근 사유지 매입 협의(읍내리 128-9, 대, 231㎡)
- 탁상감정가(196백만 원)와 매매 희망가(300백만 원)의 큰 차이로 매입 불가
- 2022.12.05. 2023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23.01.10. 게이트볼장 이전 관련 청양군청 협의 (이용자 반대로 이전 불가)
- 2023.01.19. 2023년 제1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청양고 실습지로 부지변경 제시)
- 2023.02.06. 2023년 제2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AI센터 부지변경 결정)
- 2023.03.09.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5. 건축기획 용역
- 2023.06.26. 2023년 제3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건축 기획 용역 의견 수렴)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은 청양군 관내 학생에게 인공지능디지털활용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AI융합교육 확산을 통해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됨
- 다만, 좁은 도로 여건, 학생 교통안전, 급당 학생수에 적합한 체험실 확장 및 수학체험실 추가, 지하주차장 조성 등 여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 부지와 시설규모를 변경하여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146.3%)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⁵⁾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당초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기준가격이 30%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2023. 8. ~ 2026. 2.(2년 7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81-3 일원
- 규 모: 토지 15,346㎡, 건물 19,306㎡(지하1층, 지상5층)
-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131명(특수 21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 사 업 비: 총 65,345백만 원(토지매입비 20,256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1%, 지자체지원금 15.5%, 기부채납 3.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5,345	2,221	29,099	25,182	8,843	
보통교부금	52,996	0	18,971	25,182	8,843	
지자체지원금	10,128	0	10,128	0	0	
기부채납	2,221	2,221	0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8.03.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설	1,110	21	36	3	2026.02.	15,346	19,306	20,256	45,089	65,345

※ 총사업비 66,694백만 원(부지비 20,256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개교경비 1,349백만 원)

※ 사업시행자 설계 기부채납 2,221백만 원

※ 토지매입(14필지 15,346㎡):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 (필요성)

- 2023학년도 천안 교육감 전형 13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3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고, 2023학년도 신입생의 학급 당 학생 수는 32.9명으로 학생배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학교 신설을 통한 개선
- 2028년까지 천안 서북부 지역 35,283세대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국내이동 통계 기준으로 1,310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 필요

○ (추진경과)

- 2022.08.04.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 고등학교용지 조성 및 확보 관련 협의(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14개 사업시행자)
- 2022.09.27. 구역외 기반시설(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협약서 제출 (고등학교용지조성협의체 8개 사업시행자)
- 2022.12.13.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결정 등 학교신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천안시에 적극적인 업무 지원요청 (학교지원과-9478)
- 2023.03.24.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13)
- 2023.05.04. 가칭 천안호수고신설 관련 학교 설계 용역 협약 체결 (학교지원과-3573)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7.28. 2023년도 정기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
 - 축사 이전 확정 후 추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임야+전→학교용지) 후 사업 추진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 2023학년도 천안 교육감 전형 13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3명으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천안 서북구 지역은 2028년까지 35,283세대 공동주택 개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기준 1,310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시설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2023. 8. ~ 2026. 2.(2년 7개월)
-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일원
- 규 모: 토지 14,928㎡, 건물 19,306㎡(지하1층, 지상5층)

-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169명(특수 21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 사업비: 총 63,973백만 원(토지매입비 18,884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8%, 지자체지원금 14.8%, 기타 3.4%

(단위: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63,973	2,221	27,727	25,182	8,843	
보통교부금	52,310	0	18,285	25,182	8,843	
지자체지원금	9,442	0	9,442	0	0	
기부채납	2,221	2,221	0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2028.03.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모		소요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설	1,148	21	36	3	2026.02.	14,928	19,306	18,884	45,089	63,973

※ 총사업비 65,322백만 원(부지비 18,884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개교경비 1,349백만 원)

※ 사업시행자 설계 기부채납 2,221백만 원

※ 토지매입(17필지 14,928m²):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 (필요성)

- 2023학년도 아산 교육감 전형 8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9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고, 2023학년도 신입생의 학급 당 학생 수는 33.1명으로 학생배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학교 신설을 통한 개선

- 2028년까지 아산지역 전체 42,978세대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국내이동 통계 기준으로 2,038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 필요

○ (추진경과)

- 2020.01.29. 사업시행자에게 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조속한 용지 확보 이행 촉구(학교지원과-699)
- 2021.02.24. 학교용지 대안부지 제시(단위통학권 이격으로 부적합)
- 2021.06.15. 학교용지 대안부지 제시(저류지의 특성상 학교 시설공사에 부적정, 2020. 7.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지 보완 후 재추진)
- 2021.12.23.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60)
- 2022.07.07. 충청남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고등학교 용지 확보 이행 촉구(학교지원과-4860)
- 2023.05.18. 가칭 아산탕정2고 신설 관련 학교 설계 용역 협약 체결(학교지원과-3817)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7.28. 2023년도 정기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전+답→학교용지) 후 사업 추진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 2023학년도 아산 교육감 전형 8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9명으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산 지역은 2028년까지 42,978세대 공동주택 개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기준 2,038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시설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 의견을 반영한 이행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괄표)

나.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취득

- 토지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2 일원	변경 전	8,966.0	57.2	57.2	기준가격 : 827.7% 증
			변경 후	8,966.0	530.7	1,151.7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변경 전	14,580.0	115.3	115.3	기준가격 : 424.7% 증
			변경 후	14,580.0	605.0	801.9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2 일원	변경 전	1,478.8	134.9	134.9	기준가격 : 56.3% 증
			변경 후	1,361.3	210.9	257.1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변경 전	1,294.4	237.3	237.3	
			변경 후	1,110.8	280.3	227.0	
3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89-5	변경 전	1,275.0	3,921.0	3,921.0	기준가격 : 146.3% 증
			변경 후	2,508.9	9,661.0	9,661.0	

- 공작물 등

(단위: 식,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구분	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구)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장 매각변경안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일원	변경 전	1	5.1	5.1	
			변경 후	1	5.1	7.2	
2	(구)삼포초등학교 매각변경안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변경 전	1	44.4	44.4	
			변경 후	1	44.4	32.9	

○ 취득

- 토지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	천안시 서북구 안업성동 481-3 일원	15,346.0	4,179	20,256	
2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	아산시 탕정면 안갈산리 523 일원	14,928.0	2,674	18,884	
토지 취득계			30,274.0	6,853	39,140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	천안시 서북구 안업성동 481-3 일원	19,306.0	45,089	45,089	
2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	아산시 탕정면 안갈산리 523 일원	19,306.0	45,089	45,089	
건물 취득계			38,612.0	90,178.0	90,178.0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매각 변경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8.(8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1-2 일원
3. 규 모: 토지 8,966㎡, 건물 1,361.2㎡(지상 2층)
4. 학교현황: 2009. 3. 1. 폐교(인지초등학교로 통폐합)
5. 추정금액: 총 1,416백만 원
(토지 1,151.7백만 원, 건물 257.1백만 원, 공작물 등 7.2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명 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토 지	인지면 모월리	311-2	학 교 용 지	7,578.0	448.6	985.1
	인지면 모월리	산48-6	임 야	1,388.0	82.1	166.6
소 계				8,966.0	530.7	1,151.7
건 물	인지면 모월리	311-2	본 동 교 사	917.5	174.8	183.5
			후 동 교 사	180.0	19.3	36.0
			교실/급식실	180.0	11.5	27.0
			숙 직 실	28.8	1.8	3.7
			창 고	30.2	1.9	3.9
			화 장 실	24.8	1.6	3.0
소 계				1,361.3	210.9	257.1
공작물 등	인지면 모월리	311-2	공작물/입목죽	1식	5.1	7.2
소 계				1식	5.1	7.2
총 계				10,327.3	746.7	1,416.0

6. 사업목적(필요성)

-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은 2009. 3. 1. 폐교하여 2019. 11. 11. 부터 2023. 12. 31.까지 문화체험시설로 대부중이며, 대부 종료 후 향후 교육·행정목적 활용계획 없음

- 2022년 서산시 농업정책과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23. 2. 2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함
- 이에,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산시에 매각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2023. 2. 서산시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매입 추진 신청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 개요: 새롭게 유입되는 귀농인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교육하며 교류하는 공간 조성
- 내용: 건물 철거 후 교류센터(250㎡) 및 실습농장(3,000㎡, 텃밭 32개, 하우스 2동) 조성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목적과 방법으로 서산시에 수의계약 매각

8. 변경 사유

- 2014년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부 종료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대부자 민원 등으로 2023. 12. 31.까지 대부기간 연장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지 못함
-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및 건물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기준가격 변동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23년		비 고
	면적	기준가격	면적	기준가격	
토지	8,966.0	57.2	8,966.0	530.7	· 기준가격: 827.7% 증
건물	1,478.7	134.9	1,361.2	210.9	· 기준가격: 56.3% 증 · 면 적: 117.5㎡ 감
공작물	1식	5.1	1식	5.1	
합계	10,444.7	197.2	10,327.2	746.7	

※ 건물 면적 감소 내역

구분	일자	면적(m ²)	감소 사유
건물	2009.11.18.	35.1	창고 철거
	2020.06.29.	18.7	화장실 철거
	2022.12.30.	63.7	관사 철거
소계		117.5	

○ 매각 대상, 방법 등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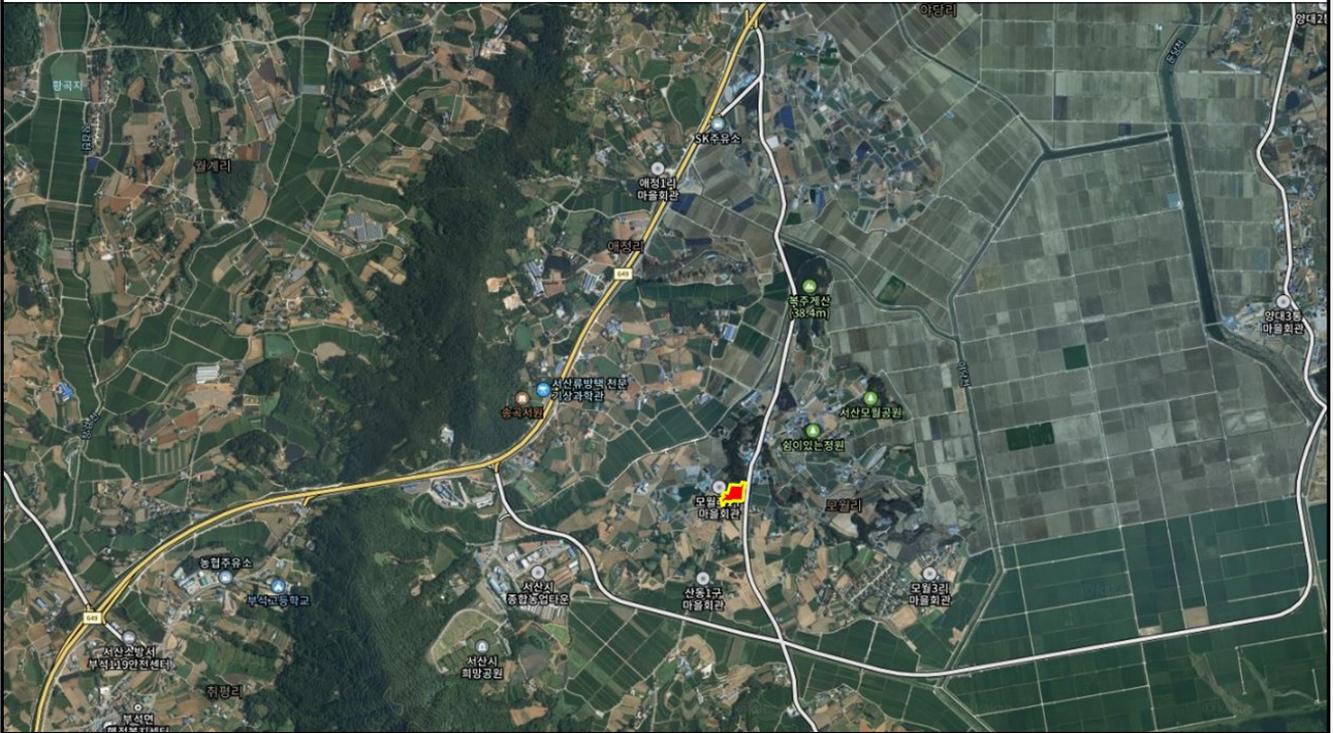
연도	매각 대상, 방법, 용도 등
2014	미지정
2024	서산시, 수의계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9. 추진경과

- 2009.03.01.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폐지
- 2009.11.11.~ 대부(문화체험시설 도비스쿨)
- 2013.10.17.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14.04.0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22.04.18. 서산시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활용계획 협조 요청
- 2022.09.16. 서산시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활용 추진계획 알림
- 2023.02.22. 서산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계획 최종 승인 알림
- 2023.05.22. (구)인지초등학교인정분교장 제소전 화해조서 성립
- 2023.08.03.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도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4. 내부사진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변경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12.(1년)
2.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3. 규 모: 토지 14,580㎡, 건물 1,110.8㎡(지상 2층)
4. 학교현황: 1999. 9. 1. 폐교(고북초등학교로 통폐합)
5. 추정금액: 총 1,061.8백만 원

(토지 801.9백만 원, 건물 227백만 원, 공작물 등 32.9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명 칭	면적/수량	기준가격	추 정 금 액
토 지	고북면 봉생리	101-2	학 교 용 지	14,580.0	605.0	801.9
소 계				14,580.0	605.0	801.9
건 물	고북면 봉생리	101-2	본 동 교 사	948.5	270.9	199.2
			사 택	47.6	2.6	9.5
			사 택	48.2	2.6	9.6
			창 고	25.3	1.6	2.5
			숙 직 실	41.2	2.6	6.2
소 계				1,110.8	280.3	227.0
공작물 등	고북면 봉생리	101-2	공작물/입목죽	1식	44.4	32.9
소 계				1식	44.4	32.9
총 계				15,690.8	929.7	1,061.8

6. 사업목적(필요성)

- (구)삼포초등학교는 1999. 9. 1. 폐교되어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관리중에 있으나, 향후 교육·행정목적 활용계획 없음

- 서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약 22km(차량 31분) 거리에 위치하여 폐교 점검·관리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요구됨
- 폐교를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7. 사업내용

- 지자체 활용계획이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개 입찰 매각

8. 변경 사유

- 2014년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대부 종료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대부자 민원 등으로 2018. 9. 30.까지 대부기간 연장
- 대부기간 종료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2019. 3월 매매계약을 포기하여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함
- 2014년 대비 2023년 토지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기준가격 변동 내역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23년		비 고
	면적	기준가격	면적	기준가격	
토 지	14,580.0	115.3	14,580.0	605.0	· 기준가격 424.7% 증
건 물	1,294.4	237.3	1,110.8	280.3	· 기준가격: 18.1% 증 · 면 적: 183.6m ² 감
공작물 등	1식	44.4	1식	44.4	
합 계	15,874.4	397.0	15,690.8	929.7	

※ 건물 면적 감소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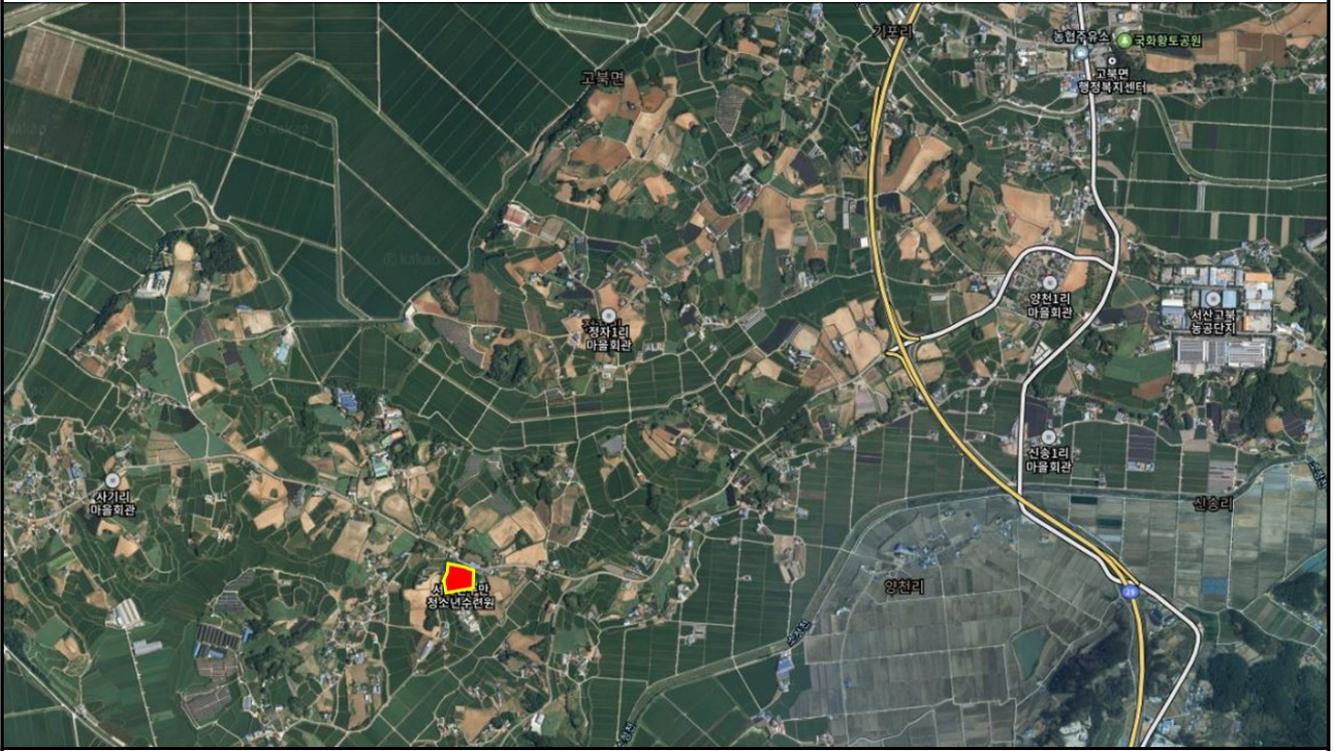
구분	날짜	면적(m ²)	감소 사유
건물	2022.07.21.	183.6	2동 급식소 철거

9. 추진경과

- 1999.09.01. (구)삼포초등학교 폐지
- 2003.05.01. ~ 2018.09.30. 대부(교육용시설-청소년수련원)
- 2014.02.26.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14.04.0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 2019.01.21. (구)삼포초등학교 매각 공고
- 2019.03.04. (구)삼포초등학교 계약대상자 결정 통보
- 2019.03.20. (구)삼포초등학교 매매계약 포기각서 제출
- 2023.08.03.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도: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101-2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4. 내부사진



청양시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1. 사업기간: 2023. 8. ~ 2025. 12.(2년 5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89-5(1,830㎡, 답)
3. 규 모: 건물 2,508.98㎡(지하 1층, 지상 2층)
4. 시설현황: 체험실 8실, 사무실 등 지원실 4실, 주차장 1식(26면)
(개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9,661백만 원(건축비 9,66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9,661	478	9,183	0	
보통교부금	9,661	478	9,183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규모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체험실	지원실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8	4	2025.12.	1,830	2,508.98	0	9,661	9,661

※ 총사업비 10,714백만 원(건축비 9,661백만 원, 교재교구비 등 1,053백만 원)

※ 청양고등학교 관리 토지(현재 실습지) 활용으로 토지매입비 없음

6. 사업목적(필요성)

- 충남미래교육 2030의 5대 전환 과제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AI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필요성 대두
- 미래교육 실천과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거점센터 필요
- 청양AI체험교육센터 신축을 통해 AI융합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제공

7. 사업내용

- 청양지역 학교 AI체험교실 심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AI융합교육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하여 청양지역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AI융합교육 지원
- 교원 연수 및 AI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공간 마련
- 학급당 학생수(25명) 기준에 적합한 체험실 확보가 용이한 부지로 변경
- 시설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분	공간명	용 도	면적(m ²)
지하	주 차 장	주차장(23면)	566.16
	공용공간	기계전기실, 홀, E/V, 계단실 등	204.11
		계	770.27
1층	다목적실	행사, 대회, 세미나에 사용	120.96
	사 무 실	상주직원, 외부강사 사무실 및 회의실	37.44
	강 사 실	외부강사 강의 준비 공간	23.04
	가상체험실	AR·VR 체험 및 콘텐츠 제작 실습	120.96
	AI교육이해실	인공지능교육 기본 프로그램 운영	120.96
	AI교육융합실	인공지능교육 실생활 적용 프로그램 운영	120.96
	공용공간	북카페쉼터, 1층 화장실, 로비, E/V, 계단실, 복도 등	370.35
		계	914.67
2층	상상이룸공작실	상상이룸 교육을 통한 학생주도형 실생활 문제해결 학습	166.32
	CNC실	CNC기를 이용한 목공 작업 공간	30.24
	3D프린터실	3D모델링 교육 및 3D프린팅 공간	30.24
	자 료 실	교구자료 보관실	60.48
	수학체험실	수학 체험 및 수학 놀이 중심의 공간 수학갤러리, 체험교구, 산출물 전시	120.96
	지능형수학교실	수학 학습 도움을 위한 수학 클리닉 (기초·기본학습, 심화학습, 수준별 학습공간)	120.96
	공용공간	북카페쉼터, 2층 화장실, E/V, 계단실, 복도 등	294.84
		계	824.04
총계			2,508.98

※ 실제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변경내용

○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주요 변경 내역

시기 구분		변경 전 (2023년 정기분 추가)	변경 후	증감
부지위치		청양읍 읍내리 40-1	청양읍 송방리 189-5	위치변경
토 지	면적	2,574㎡	1,830㎡	-744㎡
	기준 가격	0	0	토지매입비 없음
건 물	면적	1,275.00㎡	2,508.98㎡	1,233.98㎡
	기준 가격	3,921백만 원	9,661백만 원	5,740백만 원 (146.3% 증)

○ 변경 세부 내역

구분	면적(㎡)	내역
변경 전	3층	425.00 ◦ 상상이룸공작실, 3D프린터실, CNC실, 교구자료실 등
	2층	425.00 ◦ AI교육이해실, AI교육융합실, 가상체험실 등
	1층	425.00 ◦ 다목적실, 사무실, 쉼터 등
	건물 외	◦ 주차장, 배수로, 담장, 포장 등
	계	1,275.00
변경 후	2층	529.20 ◦ 상상이룸공작실, CNC실, 3D프린터실, 자료실, 수학체험실, 지능형수학교실
	1층	544.32 ◦ 다목적실, 사무실, 강사실, 가상체험실, AI교육이해실, AI교육융합실
	지하	566.16 ◦ 주차장
	공용공간	869.30 ◦ 기계전기실, 북카페쉼터,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로비, 홀, 복도, 계단실, E/V
	계	2,508.98

- 당초 위치(청양초등학교 관리토지)는 비좁은 진입도로 여건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상시 주차난 등 학생 교통안전에 취약하여 부지확장 또는 변경 필요성 대두

- 부지확장을 위해 주변 사유지 등 매입을 모색하였으나 불가
- 차량 접근이 용이한 청양고등학교 실습지를 사업부지로 결정
-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 면적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수에 적합한 체험실 확장, 연계수업이 가능한 수학체험실 추가, 지하주차장 조성 등으로 건축면적 및 사업비 증가

9. 추진경과

- 2022.07.~08. 청양AI체험센터 신축 검토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타당성 조사(교육과-9209, 2022. 7. 8.)
- 2022.07.~08. 우수사례 참고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청양초 방문 협의 (천안AI 꿈키움센터, 천안불당초, 천안월봉고)
- 2022.09.15. 실무단 구성(교육과, 행정과, AI전문가)(교육과-14380, 2022. 10. 31.)
- 2022.10.06. 청양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청양초-10857, 2022. 10. 17.)
- 2022.10.18.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2.11.03.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조직(교육과-14789, 2022. 11. 07.)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시 부족한 청양초등학교 주차장 확보)
(인접한 사유지,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추진)
- 2022.11.14. 인근 사유지 매입 협의(읍내리 128-9, 대, 231㎡)
- 탁상감정가(196백만 원)와 매매 희망가(300백만 원)의 큰 차이로 매입 불가
- 2022.12.05. 2023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 2023.01.10. 게이트볼장 이전 관련 청양군청 협의
(이용자 반대로 이전 불가)

- 2023.01.19. 2023년 제1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청양고 실습지로 부지변경 제시)
- 2023.02.06. 2023년 제2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AI센터 부지변경 결정)
- 2023.03.09.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5. 건축기획 용역
- 2023.06.26. 2023년 제3회 청양 AI교육체험센터 추진위원회 협의회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건축 기획 용역 의견 수렴)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당초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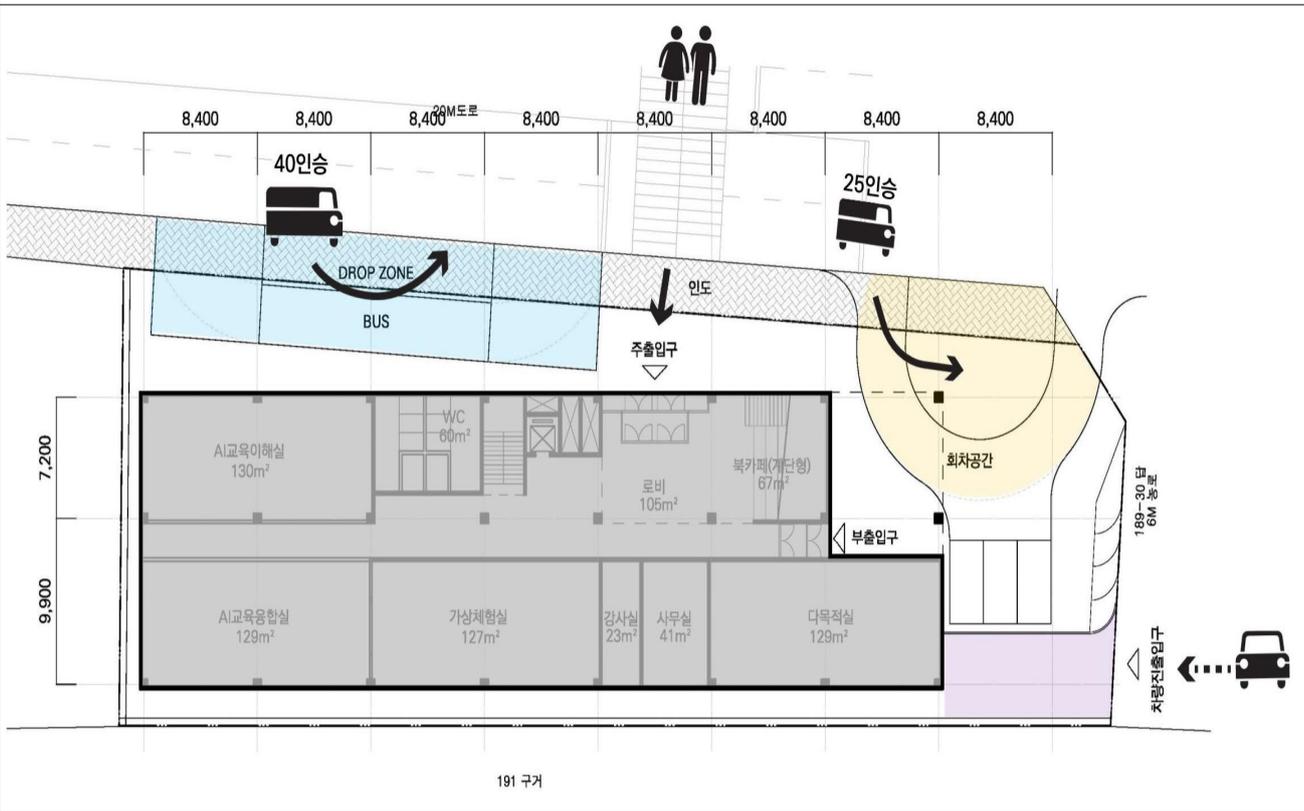
2. 변경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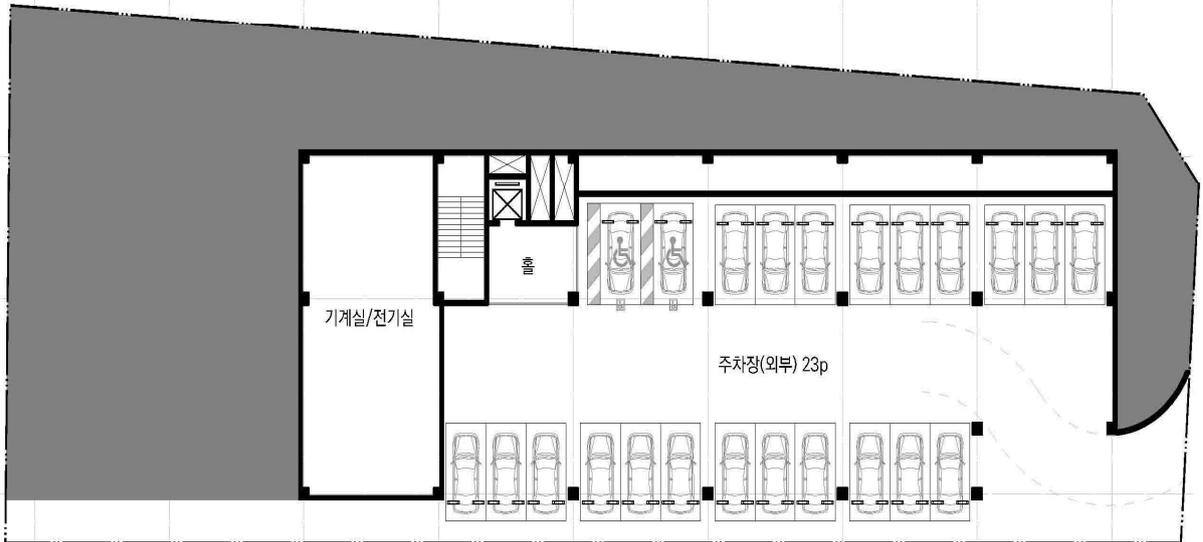
3. 변경 위치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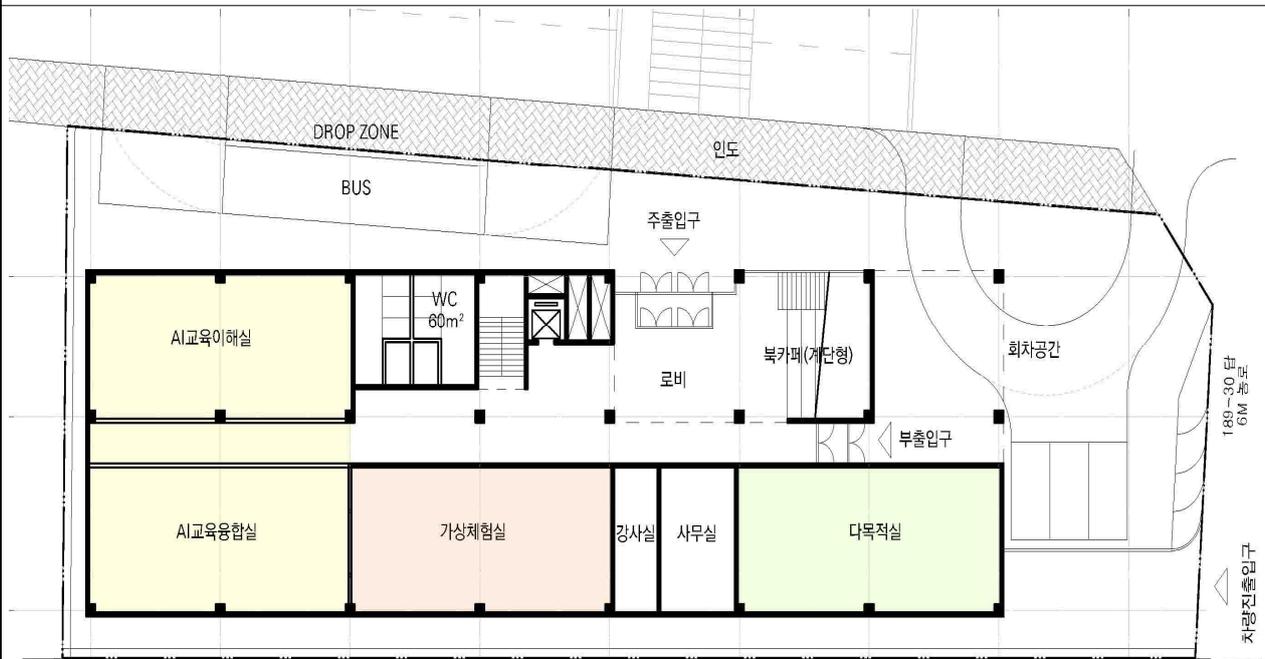
4. 배치도



5.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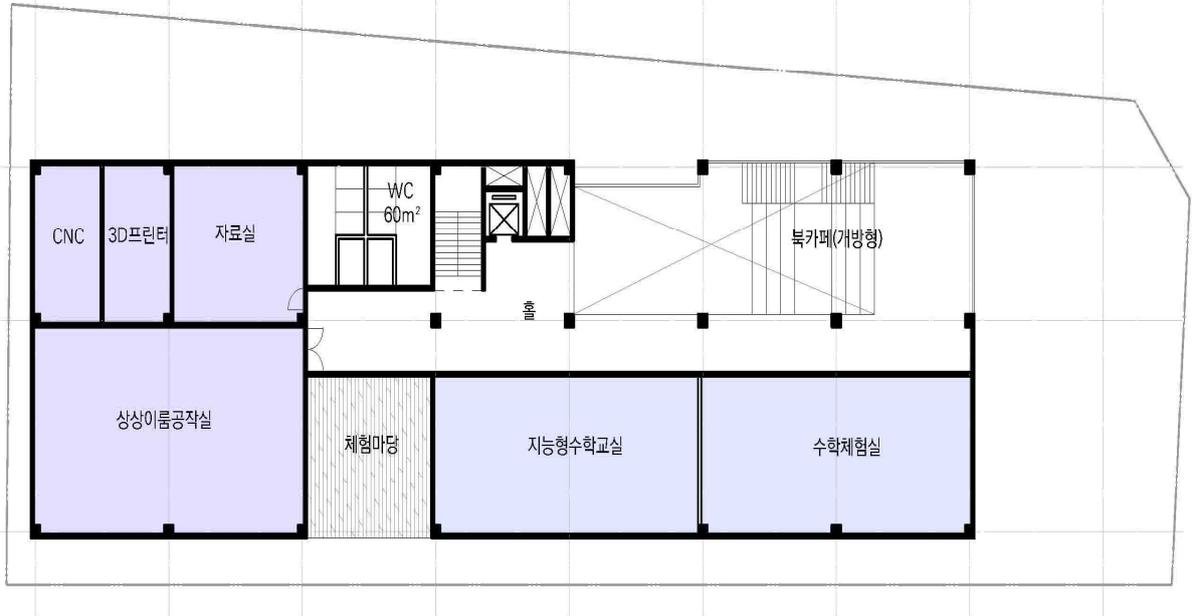


6. 지상 1층 평면도



191 구거

7. 지상 2층 평면도



8. 현장사진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3. 8. ~ 2026. 2.(2년 7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81-3 일원
3. 규 모: 토지 15,346㎡, 건물 19,306㎡(지하1층, 지상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131명(특수 21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65,345백만 원(토지매입비 20,256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1%, 지자체지원금 15.5%, 기부채납 3.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5,345	2,221	29,099	25,182	8,843	
보통교부금	52,996	0	18,971	25,182	8,843	
지자체지원금	10,128	0	10,128	0	0	
기부채납	2,221	2,221	0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8.03.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설	1,110	21	36	3	2026.02.	15,346	19,306	20,256	45,089	65,345

※ 총사업비 66,694백만 원(부지비 20,256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개교경비 1,349백만 원)

※ 사업시행자 설계 기부채납 2,221백만 원

※ 토지매입(14필지 15,346㎡):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천안지역 여건) 천안은 충남 제1의 도시로서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정상지역)이며,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산업 발달과 함께 인구의 지속 증가 예상
- (과대과밀 해소) 2023학년도 천안 교육감 전형 13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3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고, 2023학년도 신입생의 학급 당 학생 수는 32.9명으로 학생배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학교 신설을 통한 개선 절실
-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재학생 기준 고입예정자 수는 2023년(7,003명) 이후 2024년 6,702명, 2025년 6,476명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2026년(6,811명)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7년 7,038명, 2028년 7,261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다시 6,000명 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개발계획 반영) 2028년까지 천안 서북부 지역 35,283세대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발되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국내이동 통계 기준으로 1,310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생배치시설 확충 필요
- (정부정책 반영)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이를 통한 천안지역 과대과밀 단계적 해소 추진

7. 사업내용

○ 토지(민영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천안시 업성동	481-3 일원	임야 외	15,346	4,179	20,256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 추정금액: 매입시점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탁상감정가의 110% 적용

- 토지 세부 필지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기준가격(원)
1	천안시 업성동	465-16	묘	783	206,007,300
2	천안시 업성동	480-1	전	4	1,038,400
3	천안시 업성동	481	전	749	194,440,400
4	천안시 업성동	481-1	전	1,035	268,686,000
5	천안시 업성동	481-2	전	499	129,540,400
6	천안시 업성동	481-3	임	8,676	2,300,007,600
7	천안시 업성동	481-4	임	584	157,037,600
8	천안시 업성동	481-5	임	623	156,622,200
9	천안시 업성동	481-6	임	595	149,583,000
10	천안시 업성동	481-7	임	661	166,175,400
11	천안시 업성동	482	전	181	46,987,600
12	천안시 업성동	482-1	전	536	146,488,800
13	천안시 업성동	484-5	전	127	32,969,200
14	천안시 업성동	484-10	잡	293	222,973,000
계(14필지)				15,346	4,178,556,900

○ 건축비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액	비고
설 계 비		115천 원 × 19,306m ² =	2,221	기부채납
공사비	건축공사	2,085천 원 × 14,786m ² =	30,829	
	지하주차장	2,029천 원 × 4,520m ² =	9,171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711,993천 원 × 1식=	2,712	
	부 대 비	156,000천 원 × 1식=	156	
	소 계			42,868
합 계			45,089	

8. 추진경과

- 2022.08.04. 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 고등학교용지 조성 및 확보 관련 협의(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14개 사업시행자)
- 2022.09.27. 구역외 기반시설(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협약서 제출 (고등학교용지조성협의체 8개 사업시행자)
- 2022.12.13.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결정 등 학교신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천안시에 적극적인 업무 지원요청 (학교지원과-9478)
- 2023.03.24.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13)
- 2023.05.04. 가칭 천안호수고신설 관련 학교 설계 용역 협약 체결 (학교지원과-3573)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7.28. 2023년도 정기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
 - 축사 이전 확정 후 추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임야+전→학교용지) 후 사업 추진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공급가액) 산정기준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공급가액		부칙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민영개발 사업시행자	
1995.12.29. (1996.1.29.)	조성원가 ※초·중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가능 (개발면적 1천만㎡이상, 09.25.58.삭제)		
2000.1.28. (2000.2.28.)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2006.7.19. (2006.7.19.)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 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09.5.28. (2009.5.28.)	무상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u>감정평가액</u>	2009.5.28.개정으로 소급적용 · 대상: ‘06.7.19.~09.5.28.’ 동안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초·중: 조성원가의 20% - 고: 조성원가의 30%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가칭 천안호수고 학교용지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추진

가칭 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3. 8. ~ 2026. 2.(2년 7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일원
3. 규 모: 토지 14,928㎡, 건물 19,306㎡(지하1층, 지상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169명(특수 21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3월 1일)
5. 사 업 비: 총 63,973백만 원(토지매입비 18,884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1.8%, 지자체지원금 14.8%, 기타 3.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3,973	2,221	27,727	25,182	8,843	
보통교부금	52,310	0	18,285	25,182	8,843	
지자체지원금	9,442	0	9,442	0	0	
기부채납	2,221	2,221	0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8.03.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신설	1,148	21	36	3	2026.02.	14,928	19,306	18,884	45,089	63,973

※ 총사업비 65,322백만 원(부지비 18,884백만 원, 건축비 45,089백만 원, 개교경비 1,349백만 원)

※ 사업시행자 설계 기부채납 2,221백만 원

※ 토지매입(17필지 14,928㎡):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아산지역 여건) 아산지역의 인구는 2014년 30만 명에서 2022년 12월 기준 36만 5천 명으로 18.8%가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및 2,400여 개 강소기업 사업장이 위치함에 따라 아산시 주요 인구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 (과대과밀 해소) 2023학년도 아산 교육감 전형 8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1.9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과밀을 유지하고 있고, 2023학년도 신입생의 학급 당 학생 수는 33.1명으로 학생배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학교 신설을 통한 개선 절실
-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재학생 기준 고입예정자 수는 2023년(3,765명) 이후 2024년 3,777명, 2025년 3,767명까지 유지 되고 있으나, 2026년(4,133명)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7년 4,097명, 2028년 4,307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다시 소폭 감소 하는 추세이나, 3,8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개발계획 반영) 2028년까지 아산지역 전체 42,978세대 공동주택 개발 에서 유발되는 외부 유입 학생 수는 통계청 국내이동 통계 기준으로 2,038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생배치 시설 확충 필요
- (정부정책 반영)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이를 통한 아산지역 과대과밀 단계적 해소 추진

7. 사업내용

○ 토지(민영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일원	답 외	14,928	2,674	18,884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 추정금액: 매입시점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탁상감정가의 110% 적용

- 토지 세부 필지 내역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기준가격(원)
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	대	383	101,648,200
2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2	대	249	72,060,600
3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3	도	17	924,800
4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2-4	도	45	2,448,000
5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3	답	1,811	357,672,500
6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4	답	1,706	278,589,800
7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19-8	답	32	5,110,400
8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19-34	답	134	26,465,000
9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1	전	436	87,025,600
10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	답	3,451	569,415,000
1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1	답	1,755	286,591,500
12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2	답	1,296	211,636,800
13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3	답	751	116,480,100
14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4-4	답	41	6,223,800
15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5-3	답	677	133,707,500
16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6-7	답	2,099	414,552,500
17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76	도	45	2,943,000
계(17필지)				14,928	2,673,495,10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액	비고
설 계 비		115천 원 × 19,306 m ² =	2,221	기부채납
공사비	건축공사	2,085천 원 × 14,786 m ² =	30,829	
	지하주차장	2,029천 원 × 4,520 m ² =	9,171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711,993천 원 × 1식=	2,712	
	부 대 비	156,000천 원 × 1식=	156	
	소 계			42,868
합 계			45,089	

8. 추진경과

- 2020.01.29. 사업시행자에게 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조속한 용지 확보 이행 촉구(학교지원과-699)
- 2021.02.24. 학교용지 대안부지 제시(단위통학권 이격으로 부적합)
- 2021.06.15. 학교용지 대안부지 제시(저류지의 특성상 학교 시설공사에 부적정, 2020. 7.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지 보완 후 재추진)
- 2021.12.23.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60)
- 2022.07.07. 충청남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고등학교 용지 확보 이행 촉구(학교지원과-4860)
- 2023.05.18. 가칭 아산탕정2고 신설 관련 학교 설계 용역 협약 체결 (학교지원과-3817)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7.28. 2023년도 정기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조건부)
 - 학군 내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규모 검토 보고 후 추진
 - 도시관리계획 변경(전+답→학교용지) 후 사업 추진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공급가액) 산정기준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공급가액		부칙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민영개발 사업시행자	
1995.12.29. (1996.1.29.)	조성원가 ※초·중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가능 (개발면적 1천만㎡이상, 09.25.58.삭제)		
2000.1.28. (2000.2.28.)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2006.7.19. (2006.7.19.)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 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09.5.28. (2009.5.28.)	무상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u>감정평가액</u>	2009.5.28.개정으로 소급적용 · 대상: ‘06.7.19.~09.5.28.’ 동안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초·중: 조성원가의 20% - 고: 조성원가의 30%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가칭 아산탕정2고 학교용지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추진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 변경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청양AI교육체험센터 1건 신축
- 가칭 천안호수고등학교 등 학교 2건 신설

3.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지자체전입금) 134,537백만 원
 - 사업시행자(기부채납) 4,442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14,967백만 원, 지자체전입금 19,570백만 원, 사업시행자(기부채납) 4,442백만 원
 - 2023년도 4,442백만 원, 2024년도 57,304백만 원, 2025년도 59,547백만 원, 2026년도 17,686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 입	4,442	57,304	59,547	17,686	0	138,979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변경안	0	478	9,183	0	0	9,661	
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2,221	29,099	25,182	8,843	0	65,345	
가칭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2,221	27,727	25,182	8,843	0	63,973	
세 출	4,442	57,304	59,547	17,686	0	138,979	
청양AI교육체험센터 신축변경안	0	478	9,183	0	0	9,661	
가칭천안호수고등학교 신설안	2,221	29,099	25,182	8,843	0	65,345	
가칭아산탕정2고등학교 신설안	2,221	27,727	25,182	8,843	0	63,973	
재원 조달	4,442	57,304	59,547	17,686	0	138,979	
의존 재원	소 계	0	57,304	59,547	17,686	0	134,537
	보통교부금	0	37,734	59,547	17,686	0	114,967
	특별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전 입 금	0	19,570	0	0	0	19,570
	기 부 금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4,442	0	0	0	0	4,442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519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취득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가칭 당정 7 초 등 학 교 신 설	토 지	13,510.0	2,341	15,753	
		건 물	17,232.0	40,172	40,172	
2	한 들 물 빛 초 등 학 교 교 실 및 급 식 실 안 증 축	건 물	2,058.5	6,385	6,385	
3	충 남 체 육 고 등 학 교 교 사 동 및 역 도 장 안 증 축	건 물	678.0	2,719	2,719	
4	부 리 초 등 학 교 교 사 동 (본 동) 철 거 및 개 축 안	건 물	910.4	2,622	2,622	
5	가 칭 꿀 벌 도 서 관 설 립	토 지	7,293.0	1,229	4,960	
		건 물	2,700.0	13,789	13,789	
6	가 칭 당 진 교 육 종 합 센 터 신 설	토 지	7,524.0	1,268	5,117	
		건 물	2,500.0	11,484	11,484	
7	충 청 남 도 교 육 청 지 상 주 차 장 (타 위) 증 축	건 물	7,200.0	12,038	12,038	
8	(구) 복 룡 초 등 학 교 매 매 계 약 해 제 에 따 른 취 득	토 지	10,962.0	439	975	
		건 물	1,253.7	179	154	
		공 지 물 등	0	54	54	
9	(고 교 학 점 제) 천 안 두 정 고 등 학 교 교 사 동 증 축	건 물	1,625.0	3,744	3,744	
10	(고 교 학 점 제) 천 안 월 봉 고 등 학 교 교 사 동 증 축	건 물	3,238.5	7,991	7,991	
11	(고 교 학 점 제) 천 안 오 성 고 등 학 교 교 사 동 증 축	건 물	1,935.0	4,383	4,383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건 물	13,369.0	37,416	37,416	
1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당진고등학교 교사동(후동) 증축안	건 물	1,461.8	3,829	3,829	
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건 물	3,171.0	10,919	10,919	
취 득 계		토 지	39,289.0	5,277	26,805	
		건 물	59,332.9	157,670	157,645	
		공작물 등	0	54	54	
		계	98,621.9	163,001	184,504	

○ 처분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철거 및 개축안	건 물	910.4	283.0	902.0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건 물	13,299.5	2,230.6	5,885.9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건 물	2,990.0	642.0	2,323.0	
처 분 계		건 물	17,199.9	3,155.6	9,110.9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⁶⁾과 처분⁷⁾에 관한 계획 수립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

○ 사업기간 : 2023. 7. ~ 2026. 8.(3년 2개월)

6)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7)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2 일원
- 규 모 : 토지 13,510㎡, 건물 17,232㎡(지하주차장 조성)
- 학교현황 : 학급수 41학급(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유치원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972명(특수 6명, 유치원 48명, 유치원 특수 4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9월 1일)
- 사 업 비 : 총 55,925백만 원(토지매입비 15,753백만 원, 건축비 40,17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6%, 지자체지원금 1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55,925.0	23,787.0	24,104.0	8,034.0	
보통교부금	48,048.5	15,910.5	24,104.0	8,034.0	
지자체지원금	7,876.5	7,876.5	0	0	용지비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6.09.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 면 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초(특수)	유(특수)	초(특수)	유(특수)						
신설	920(6)	52(4)	37(1)	4(1)	2026.08.	13,510	17,232	15,753	40,172	55,925

※ 총사업비 57,211백만 원(부지비 15,753백만 원, 건축비 40,172백만 원, 개교경비 1,286백만 원)

※ 토지매입(16필지 13,510㎡):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 (필요성) 2026년~2027년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 유입학생 배치 시 반경 1.5km 이내 위치한 탕정초등학교 및 탕정미래초등학교의 가용교실(탕정초: 51실, 탕정미래초:

39실) 대비 2027년에는 탕정초 61학급 및 탕정미래초 53학급이, 2028년에는 탕정초 64학급 및 탕정미래초 55학급이 예상되어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 단지 내 공동주택에서 탕정미래초등학교와 탕정초등학교까지 4~6차선 도로를 2~4회 횡단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2026년 9월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함

○ (추진경과)

- 2021.11.0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승인(학교지원과-7948)
- 2023.03.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테크노 C2BL]
- 2023.05.0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테크노 C1BL]
- 2023.08.0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2027년까지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 유입학생 배치시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부지 반경 1.5km 이내 위치한 탕정초등학교 및 탕정미래초등학교가 과밀학교에 해당되어 분산배치가 불가능하고, 4차선 이상 도로를 2회 이상 횡단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들물빛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안

- 사업기간 : 2024. 1. ~ 2025. 7.(1년 7개월)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로 49
- 규 모 : 건물 2,058.56㎡(지상5층)
- 학교현황 : 학급수 73학급(특수 3학급, 유치원 3학급, 유치원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665명(특수 14명, 유치원 49명, 유치원 특수 3명 포함)
(2025. 9. 1. 기준(예상): 학급수 84학급, 학생수 2,133명)
- 사 업 비 : 총 6,385백만 원(건축비 6,385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6,385	4,711	1,674	
보통교부금	6,385	4,711	1,67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초(특수)	유(특수)	초(특수)	유(특수)						
증축	1,613(14)	52(3)	69(3)	4(1)	2025.07.	0	2,058.56	0	6,385	6,385

※ 총사업비 7,631백만 원(건축비 6,385백만 원, 학급증설비품비 1,246백만 원)

- (필요성) 한들물빛초등학교는 2022. 3. 1. 아산탕정택지개발 3공구 내 5,670세대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47학급 규모로 신설(2020년 설립 계획 당시 2026년 완성학급: 59학급)되었고, 2023년 3월 현재 69학급(일반66, 특수3, 유치원 제외)으로 편성되어 2026년 완성학급 대비 10학급 초과한

상태로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었으며 2027년 학생배치인원수가 2,133명까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추진경과)

- 2020.04.23. 2020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조건부: 탕정지구내 학교용지(유치원포함) 개발계획 변경 후 추진)
- 2022.03.01. 한들물빛초등학교 개교(47학급)
- 2023.08.0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조건부)
 - 급식여건 및 체육 교육과정 적정화 방안 강구
 - 모듈러 교실 활용 검토

○ (검토의견) 한들물빛초등학교는 아산탕정택지개발 3공구 내 5,670세대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47학급으로 신설된 학교로 계획상 당시 2026년까지 완성학급 59학급 규모로 설립되었으나 2023년 3월 기준 69학급으로 편성되어 2026년 완성학급 대비 10학급 초과한 상태이며 2023년 중기학생비치계획상 2027년 2,133명까지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실과 급식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정기3차 충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부대의견을 반영한 이행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축안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년)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2
- 규 모 : 건물 678㎡ [교사동 608㎡(4층), 역도장 70㎡(1층)]
- 학교현황 : 학급수 8학급, 학생수 211명(특수 1명 포함)
- 사 업 비 : 총 2,719백만 원 (건축비 2,71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2,719	2,719	0	0	
보통교부금	2,719	2,719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계	일반	특수	계						
증축	210	1	211	8	0	8	2024.12.	0	678	0	2,719	2,719

- (필요성) 1992년 6학급 규모로 개교한 이후 학생수 와 교직원인 증가함에 따라 교실(특별실 포함), 교무실이 부족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교사동 증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역도부는 인원수에 비해 훈련장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효율적인 훈련이 어려워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습장 증축이 필요한 실정임

○ (추진경과)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1992년 6학급 규모로 개교한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수와 교원 및 운동부 지도자가 증가하여 부족한 교실과 관리실을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역도부는 인원수에 비해 훈련장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효율적인 훈련이 어려워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장으로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공사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및 운동권 확보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철거 및 개축안

-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2년)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대로 81 (양곡리 699)
- 규 모 : 건물 910.44㎡(지상 2층)
- 학교현황 : 학급수 6학급, 학생수 44명
- 사 업 비 : 총 2,622백만 원 (건축비 2,622백만 원)

□ 건물처분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전체면적	철거면적	기준가격	대장가격
금산군 부리면 현대로 81	교사동 (본동)	1969.12.31.	1,623.1	910.44	283	902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2,622	132	2,490	0	
보통교부금	2,622	132	2,490	0	

◇ 사업 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개축	44	0	6	0	2025.12.	0	910.44	0	2,622	2,622

※ 총사업비 3,255백만 원(개축비: 2,622백만 원, 임시교사 및 이사비: 633백만 원)

○ (필요성) 1969.12. 취득한 본동 교사는 5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D등급” 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교사동 1,623.1㎡ 중 910.44㎡ 개축이 필요한 상황임

○ (추진경과)

- 2021.12.28.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 2022.02.25.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실시 (안전총괄과-1376)
- 2022.03.04.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안전총괄과-2010)
- 2023.01.0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원안가결)
- 2023.05.09.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검토의견) 부리초등학교 본동은 5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구조형식상 내진 및 구조보강에 따른 성능개선이 불가능하여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노후된 건물로서 본동(1, 2층)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 시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성에서는 문제없는지?

공사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안

- 사업기간 : 2024. 1. ~ 2026. 8.(2년 8개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357-1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7,293㎡, 건물 2,700㎡(지상2층)
- 기관현황 : 자료실 및 체험실 등 16실, 열람석 315석, 장서 2만권
(개관 예정일 : 2026년 9월 1일)
- 사 업 비 : 총 18,749백만 원(토지매입비 4,960백만 원, 건축비 13,7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8,749	5,597	11,525	1,627	
보통교부금	18,749	5,597	11,525	1,627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규모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자료실	체 험 활동실	지원실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2	11	3	2026.08.	7,293	2,700	4,960	13,789	18,749

※ 총사업비: 19,808백만 원(토지매입비: 4,960백만 원, 건축비 13,789백만 원, 도서 및 비품구입비: 1,059백만 원)

- (필요성) 당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가 천안, 아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서관 설립이 필요함

○ (추진경과)

- 2023.07.04.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 기본계획(안) 확정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당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도서관 인구수가 충남도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며 특히 도서관 서비스 권역인 수청동 일대에 12,000세대 입주와 2025년 까지 총 4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중심적인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안

- 사업기간 : 2024. 1. ~ 2026. 8.(2년 8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357-1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7,524㎡, 건물 2,500㎡(2층)
- 기관현황 : 25실(1층 13실, 2층 12실) (개관 예정일: 2026년 9월 1일)
- 사 업 비 : 총 16,601백만 원(토지매입비 5,117백만 원, 건축비 11,484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6,601	6,452	3,530	6,619	
보통교부금	16,601	6,452	3,530	6,61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시설규모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실수	층별실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1층	2층						
신축	25	13	12	2026.08.	7,524	2,500	5,117	11,484	16,601

※ 총사업비 17,476백만 원, 부지비 5,117백만 원, 건축비 11,484백만 원, 비품비 875백만 원

○ (필요성) 돌봄, 수학체험교육, 외국어교육, 진로상담, 영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학습과 체험, 돌봄과 성장이 공존하는 융합형 교육복지 모델 구축 필요

○ (추진경과)

- 2022.01.26. 가칭 당진 혜성초 신설(안) 2022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수청1지구내 학교용지(중·고)해제 원안대로 추진]
- 2022.10.20. 2022년 제1회 당진교육행정협의회(수청지구 학교용지 변경 계획)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청)
- 2022.11.28.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변경(해제) 요청 공문 발송
(당진교육지원청→당진시, 당진수청1지구조합)

- 2022.12.27.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2.28. 당진 수청1지구 학교용지 활용 계획 안내
(당진교육지원청→당진시, 수청1지구조합)
 - 2023.07.31.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검토의견) 미래교육, 창의융합교육,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기반 시설 조성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학습과 체험, 성장과 돌봄이 공존하는 융합형 교육복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안

- 사업기간 : 2024. 1. ~ 2026. 4.(2년 4개월)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 규 모 : 건물 7,200㎡(지상3층, 280면)
- 기관현황 : 충청남도교육청(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 512명),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4부서, 63명)
- 사 업 비 : 총 12,038백만 원(건축비 12,038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2,038	429	11,609	0	
보통교부금	12,038	429	11,609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2023.07.01.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직원수		주차 면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본청	정보원								계
증축	512	63	575	378	2026.04.	0	7,200	0	12,038	12,038

※ 주차장 타워 증축 시 최대 주차면수 190면 확보 가능(378면→568면)

○ 시설 규모

구 분	구조	주차면수	면적(m ²)	비고
3층	지붕없음(태양광패널 설치) 주차장+계단실 경사로	100면		옥상층 지붕없음
2층	주차장+계단실 경사로	100면	3,600m ²	
1층	주차장+계단실 경사로	80면 (장애 5면)	3,600m ²	
계		280면	7,200m ²	

○ (필요성) 2013년 청사 이전 이후 교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차 면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각종 행사 및 연수등 도 교육청 방문객과 민원인 방문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대는 필요한 실정임

※ 2023. 7. 1. 기준 575명 근무중으로 2013년 430명 대비 145명(↑34%) 증

○ (추진경과)

- 2022.12.1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23.03.13.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 계획 수립
- 2023.05.18.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 사전기획용역비 확보
- 2023.07.24. 상시 주차문제 일부 해소를 위해 임시적으로 도교육청 정문 앞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유희부지(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541-1번지, 면적 1,000㎡)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나 2024년 계약연장이 불확실*하다는 담당자 답변 확인

* 충남경찰청에서 해당토지 매입 또는 관리전환 계획 준비중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검토의견) 2013년 청사 이전 후 도교육청 조직과 근무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주차 수요가 증가하였고 행사, 연수, 민원 등의 사유로 도교육청을 이용하는 방문객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타워 증축 시 최대 주차면수 190면 (378면→568면) 이 확보되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주차장 증축 시 최대 190면이 확보 되어 현재의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직과 정원 증가, 각종 행사와 회의 및 연수 등 도교육청 이용자가 많을 시 부족함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 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안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년)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422-2번지 일원
- 규 모 : 토지 10,962㎡, 건물 1,253.71㎡, 입목죽 59주, 옹벽 및 웬스 1식
- 폐교현황 : 2007. 3. 1 이인초등학교로 통폐합(학급수 5학급, 학생수 32명)
- 2012. 11. 22. 매각(환매특약), 2022. 11. 21. 매매계약 해제
- 사 업 비 : 총 1,182.98백만 원(매입비: 토지 974.6백만 원, 건물 153.74백만 원, 입목죽 8.64백만 원, 옹벽 및 웬스 46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182.98	1,182.98	0	0	
보통교부금	1,182.98	1,182.98	0	0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명칭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추 정 금 액 (환매금액)
토 지	이인면 복룡리	422-2	학 교 용 지	8,865.00	357.26	798.60
토 지	이인면 복룡리	495-4	학 교 용 지	1,731.00	67.16	155.40
토 지	이인면 복룡리	665-1	학 교 용 지	316.00	12.77	18.10
토 지	이인면 복룡리	665-3	학 교 용 지	50.00	1.88	2.50
소계(4필지)				10,962.00	439.07	974.60
건물	이인면 복룡리	422-2	교 사	633.96	103.38	78.22
			교 사	540.00	70.92	66.62
			숙 직 실	46.00	3.22	4.47
			창 고	33.75	2.36	4.43
소계(4개동)				1,253.71	179.88	153.74
입목죽	이인면 복룡리	422-2	입 목 죽	59주	8.64	8.64
소계(59주)				59주	8.64	8.64
공작물	이인면 복룡리	422-2	옹벽 및 웬스	1식	46.00	46.00
소계(1식)				1식	46.00	46.00
합 계				12,215.71	673.59	1,182.98

○ (필요성) 2012. 11. 22.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사용 용도(협회 연수원 시설 및 교육 시 숙소시설)와 사용기간(10년)을 정하여 1,122백만 원 상당으로 매매계약 체결 및 환매특약 등기 완료 하였으나 당초 (구)복룡초등학교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사업 이행 요구(시정명령) 하였으나 미이행하여 (구)복룡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환매(매매)를 추진하기 위 함

○ (추진경과)

- 2012.11.22.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환매특약등기) 체결
- 2021.12.27. 매각 폐지학교 계약 이행 촉구 공문 발송(행정과-32027)
- 2022.02.15. 공주 산업안전연수원 부지 활용 계획(안) 제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22-총무국-0056)
- 2022.07.15.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활용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요청(행정과-17292)
- 2022.07.21. 매수자(대한산업안전협회) 지원청 방문 협의

○ 공주교육지원청: 매매계약 목적이행과 환매사항 주지 시킴
○ 대한산업안전협회: 심각성 인식, 계획한 사업 속히 실시하겠음

- 2022.09.20. 환매 관련 법률자문(고문번호사 5명)

○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매매계약 해제 가능(다수 의견)

- 2022.10.20.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매수 목적 사용 요구 및 시정명령 (사전예고) 알림(행정과-25689)

-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음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요구
- 2022.11.15. 매각 폐지학교 시정명령 및 매매계약 해제(해지) 통지(행정과-28337)
- 시정명령 완료일: 2022.11.20.(일)
- 매매계약 해제(해지)일: 2022.11.21.(월)
- 2022.11.22.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매매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안내(행정과-28981)
- 원상회복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2022.12.15.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매매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사후 조치 현장 협의 요청(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22-총무국-0522)
- 2022.12.22. 매수자 측과 (구)복룡초등학교 현장 협의(행정과-33480)
- 협의내용: 매매대금 이자와 부동산 과실은 상계처리, 절차와 방법 지속 협의로 원만히 해결, 창고 1동 멸실, 용벽 및 메쉬웬스 신설 등에 따른 처리 방법 협의
- 2023.02.23. 원상회복과 소유권 이전 관련 법률자문(고문변호사 5명)
- 멸실된 창고 가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여 반환(다수 의견)
- 신설 울타리는 존치가 필요할 경우 현존 가치 감정하여 상호 협의 및 정산(다수 의견)
- 이행합의서 작성으로 법적 의무 발생(다수 의견)
- 2023.05.31. (구) 복룡초등학교 부지 내 국유재산 매매계약 관련 의견 및 자료 요청(행정과-14333)
- 2023.07.25. (구)복룡초등학교 부지 내 국유재산 매매계약 관련 의견 및 자료 요청에 대한 ‘별도의견 없음’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150263)
- 2023.08.04.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검토의견)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사용 용도(협회 연수원 시설 및 교육 시 숙소시설)와 사용기간(10년)을 정하여 매매 계약 체결 및 환매특약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매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근거로 (구)복룡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환매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구)복룡초등학교 환매 할 경우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실제 이익 있는지 여부와 환매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목적으로 매각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사항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고교학점제] 대상 3개교 학교 교사동 증축안

① 천안두정고등학교

1. 사업기간: 2024. 1. ~ 2026. 2.(2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3
3. 규 모: 건물 1,625㎡(기존 교사동 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3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339명(특수 21명 포함)
5. 사 업 비: 총 3,744백만 원(건축비 3,744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3,744	374	3,370	0	
보통교부금	3,744	374	3,37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318	21	40	3	2026.02.	0	1,625	0	3,744	3,744

※ 총사업비 7,729백만 원, 증축비 3,744백만 원, 리모델링 등 3,985백만 원

○ 시설규모

구분	층별	용 도	면적(㎡)
본동	5층	보통교실 8실/ 특별교실 6실	1,260
		화장실 3실	135
		계단실 1실	90
		승강기 1식	8
	옥탑	물탱크실	132
계			1,625

② 천안월봉고등학교

1. 사업기간: 2024. 1. ~ 2026. 2.(2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51 (불당동)
3. 규 모: 건물 3,238.56㎡(지상 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1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273명(특수 18명 포함)
5. 사 업 비: 총 7,991백만 원(건축비 7,99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7,991	799	7,192	0	
보통교부금	7,991	799	7,192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255	18	38	3	2026.02.	0	3,238.56	0	7,991	7,991

※ 총사업비 12,751백만 원, 증축비 7,991백만 원, 리모델링 등 4,760백만 원

○ 시설규모

구분	층별	용 도	면적(㎡)
본동	1층	홀/계단실 1실	85.05
	2층	보통교실 4실/특별교실 7실, 계단실 1실, 화장실 1실	1,036.17
	3층	보통교실 4실/특별교실 7실, 계단실 1실, 화장실 1실	1,036.17
	4층	보통교실 4실/특별교실 6실, 계단실 1실, 화장실 1실	1,036.17
	옥탑	계단실 1실	45.00
계			3,238.56

※ 1층 필로티 주차장 조성: 951.12㎡

③ 천안오성고등학교

1. 사업기간: 2024. 1. ~ 2026. 2.(2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성성동)
3. 규 모: 건물 1,935㎡(지상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262명(특수 6명 포함)
5. 사 업 비: 총 4,383백만 원(건축비 4,383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4,383	438	3,945	0	
보통교부금	4,383	438	3,945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256	6	38	1	2026.02.	0	1,935	0	4,383	4,383

※ 총사업비 8,341백만 원, 증축비 4,383백만 원, 리모델링비 3,958백만 원

○ 시설규모

구분	층별	용 도	면적(m ²)
본동	1층	지원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2층	보통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3층	보통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4층	보통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5층	특별교실 4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옥탑	계단실 1실	45
계			1,935

- (필요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에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필요 (국정과제 50-2-2: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 (검토의견) 천안두정고등학교, 천안월봉고등학교,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증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 공간으로 증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증축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안전성에서는 문제없는지?

공사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방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린스마트학교] 대상 3개교 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단위: m², 백만원]

연 번	안건명	건축 연도	경과 연수	재산현황			등급	개축 심의	비고
				면적	기준 가격	사업 규모			
1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1975	48	1,3,369	37,416	3개동	C	23. 7.27.	
2	당진고등학교 증축(안)	1960	63	1,461.8	3,829	지상3층			
3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안)	1981	42	3,171	10,919	지상2층	D	22. 12.17.	

○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교육부 정책	주요 내용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안) 발표 (2020.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 내용) 노후학교를디지털+그린 융합형뉴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 ■ (총 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필요성) 교육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선정된 3개 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공간혁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증·개축 유형 사업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검토의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노후된 교육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상학교로 선정된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당진고등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써 증·개축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그린스마트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2년이 넘는 긴 공사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첨부 자료

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괄표)

나. 관련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취득

- 토지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2 일원	13,510.0	2,341	15,753	
2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	당진시 수청동 357-1 일원	7,293.0	1,229	4,960	
3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	당진시 수청동 357-1 일원	7,524.0	1,268	5,117	
4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422-2 일원	10,962.0	439	975	
토지 취득계			39,289.0	5,277	26,805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건명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2 일원	17,232.0	40,172	40,172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2	한들물빛초등학교 교실 증축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로 49	2,058.5	6,385	6,385	
3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증축	논산시 체육로 82	678.0	2,719	2,719	
4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철거 및 개축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910.4	2,622	2,622	
5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	당진시 수청동 357-1 일원	2,700.0	13,789	13,789	
6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	당진시 수청동 357-1 일원	2,500.0	11,484	11,484	
7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544	7,200.0	12,038	12,038	
8	(구) 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422-2 일원	1,253.7	179	154	
9	(고교학점제)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동 증축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3	1,625.0	3,744	3,744	
10	(고교학점제)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동 증축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51	3,238.5	7,991	7,991	
11	(고교학점제)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축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1,935.0	4,383	4,383	
1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13,369.0	37,416	37,416	
1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당진고등학교 교사동(후동) 증축	당진시 백암로 219-20	1,461.8	3,829	3,829	
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3,171.0	10,919	10,919	
건물 취득계			59,332.9	157,670	157,645	

- 공작물 등

(단위: 식,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수량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 고
1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 득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422-2 일원	1	54	54	

○ 처분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철거 및 개축안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910.4	283.0	902.0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13,299.5	2,230.6	5,885.9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2,990.0	642.0	2,323.0	
건물 처분계			17,199.9	3,155.6	9,110.9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

1. 사업기간: 2023. 7. ~ 2026. 8.(3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2 일원
3. 규 모: 토지 13,510㎡, 건물 17,232㎡(지하주차장 조성)
4. 학교현황: 학급수 41학급(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유치원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972명(특수 6명, 유치원 48명, 유치원 특수 4명 포함)
(개교 예정일: 2026년 9월 1일)
5. 사 업 비: 총 55,925백만 원(토지매입비 15,753백만 원, 건축비 40,17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86%, 지자체지원금 14%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55,925.0	23,787.0	24,104.0	8,034.0	
보통교부금	48,048.5	15,910.5	24,104.0	8,034.0	
지자체지원금	7,876.5	7,876.5	0	0	용지비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6.09.01. 완성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초(특수)	유(특수)	초(특수)	유(특수)						
신설	920(6)	52(4)	37(1)	4(1)	2026.08.	13,510	17,232	15,753	40,172	55,925

※ 총사업비 57,211백만 원(부지비 15,753백만 원, 건축비 40,172백만 원, 개교경비 1,286백만 원)

※ 토지매입(16필지 13,510㎡):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예정

6. 사업목적(필요성)

- 아산시 탕정면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으며, 충남 외국어고와 삼성고가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6년~2027년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3,040세대 유입학생 배치 시 반경 1.5km 이내 위치한 탕정초등학교 및 탕정미래초등학교의 가용교실(탕정초: 51실, 탕정미래초: 39실) 대비 2027년에는 탕정초 61학급 및 탕정미래초 53학급이, 2028년에는 탕정초 64학급 및 탕정미래초 55학급이 예상되어 분산배치가 불가함
- 또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 단지 내 공동주택에서 탕정미래초등학교와 탕정초등학교까지 4~6차선 도로를 2~4회 횡단하여야 하는 실정임
- 2026년~2027년 공동주택 유입에 따른 학생을 배치할 시설이 없기에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토지(민영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2 일원	답 외	13,510	2,341	15,753

※ 기준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 추정금액: 매입시점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탁상감정가의 110% 적용

- 토지 세부 필지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원)
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6-5	답	378	71,744,400
2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6-6	답	1,007	191,128,600
3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6-7	답	1,349	256,040,200
4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6-9	답	219	42,486,000
5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6-16	답	488	92,622,400
6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8-14	답	1,210	229,658,000
7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8-15	답	1,148	217,890,400
8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8-16	답	487	92,432,600
9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1	답	697	137,866,600
10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2	답	2,520	498,456,000
1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3	답	2,035	382,376,500
12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42-37	구	682	39,760,600
13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53	도	400	25,520,000
14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57	도	807	52,616,400
15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산85-1	임	59	8,513,700
16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산86-2	임	24	1,564,800
계(16필지)				13,510	2,340,677,200

○ 건축비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설 계 비	115천 원 × 17,232m ² =	1,982	
공사비	건축공사	2,085천 원 × 13,952m ² =	29,090
	지하주차장	2,029천 원 × 3,280m ² =	6,655
	건설사업관리(감리비)	2,299,000천 원 × 1식 =	2,299
	부 대 비	146,210천 원 × 1식 =	146
	소 계		38,190
합 계		40,172	

8. 추진경과

- 2021.11.0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승인(학교지원과-7948)
- 2023.03.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테크노 C2BL]
- 2023.05.0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탕정테크노 C1BL]
- 2023.08.0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붙임) 학교용지 추정금액(공급가액) 산정기준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공급가액		부칙
	공영개발 사업시행자	민영개발 사업시행자	
1995.12.29. (1996.1.29.)	조성원가 ※초·중 용지는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가능 (개발면적 1천만㎡이상, 09.25.58.삭제)		
2000.1.28. (2000.2.28.)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2006.7.19. (2006.7.19.)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감정평가액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 공급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09.5.28. (2009.5.28.)	무상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 · 2천 세대 미만: 조성원가 · 2천 세대 이상: - 초·중: 조성원가의 50% - 고: 조성원가의 70%	<u>감정평가액</u>	2009.5.28.개정으로 소급적용 · 대상: ‘06.7.19.~09.5.28.’ 동안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 초·중: 조성원가의 20% - 고: 조성원가의 30%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가칭 탕정7초 학교용지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추진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9-2 일원



2. 위성사진



한들물빛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5. 7.(1년 7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로 49
3. 규 모: 건물 2,058.56㎡(지상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73학급(특수 3학급, 유치원 3학급, 유치원 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665명(특수 14명, 유치원 49명, 유치원 특수 3명 포함)
 (2025. 9. 1. 기준(예상): 학급수 84학급, 학생수 2,133명)
5. 사 업 비: 총 6,385백만 원(건축비 6,385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6,385	4,711	1,674	
보통교부금	6,385	4,711	1,67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초(특수)	유(특수)	초(특수)	유(특수)						
증축	1,613(14)	52(3)	69(3)	4(1)	2025.07.	0	2,058.56	0	6,385	6,385

※ 총사업비 7,631백만 원(건축비 6,385백만 원, 학급증설비품비 1,246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한들물빛초등학교는 2022. 3. 1. 아산탕정택지개발 3공구 내 5,670세대 유발학생 배치를 위해 47학급 규모로 신설*된 이후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다자녀 청약 당첨 세대가 많아 의무취학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설립 계획 당시 2026년 완성학급: 59학급(일반 58, 특수1, 유치원 제외)

- 2023년 3월 현재 69학급(일반66, 특수3, 유치원 제외)으로 편성되어 2026년 완성학급 대비 10학급 초과한 상태로서 예측 인원보다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었으며, 향후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 결과 2026년 2,089명, 2027년 2,133명을 배치하기 위한 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교육시설 확충 필요

7. 사업내용

- 보통교실 11실, 스포츠활동실 2실
- 급식실, 화장실 3실, 교사연구실 3실, 필로티, 계단실, 복도 등 조성

구분	층별	용도	면적(m ²)
본동	1층	급식실, 계단실현관, 계단실	311.54
	2층	계단실	45.00
	3층	일반교실5실, 교사연구실, 화장실, 계단실	567.34
	4층	일반교실3실, 교사연구실, 스포츠활동실 1실, 화장실, 계단실	567.34
	5층	일반교실3실, 교사연구실, 스포츠활동실 1실, 화장실, 계단실	567.34
계			2,058.56

8. 추진경과

- 2020.04.23. 2020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조건부: 당정지구내 학교용지(유치원포함) 개발계획 변경 후 추진)
- 2022.03.01. 한들물빛초등학교 개교(47학급)
- 2023.08.09.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조건부)
 - 급식여건 및 체육 교육과정 적정화 방안 강구
 - 모듈러 교실 활용 검토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도시로 49



2. 위성사진(1)



3. 위성사진(2)



4. 증축 위치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12.(1년)
2.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2
3. 규 모: 건물 678㎡ [교사동 608㎡(4층), 역도장 70㎡(1층)]
4. 학교현황: 학급수 8학급, 학생수 211명(특수 1명 포함)
5. 사 업 비: 총 2,719백만 원 (건축비 2,71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2,719	2,719	0	0	
보통교부금	2,719	2,719	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계	일반	특수	계						
증축	210	1	211	8	0	8	2024.12.	0	678	0	2,719	2,719

6. 사업목적(필요성)

가. 교사동 증축

○ 보통교실 3실, 특별실 5실, 관리실 1실

- 1992년 6학급 규모로 개교한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2022년~2024년도에 각 1학급씩 총 3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보통교실 3실이 부족해 특별실을 대체 사용 중임

- 현재 특별실(영어실, 과학실, 컴퓨터실)도 보통교실로 사용 중이며, 기술가정실, 영상분석실, 상담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등이 없어 학생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교무실이 협소하여 교사와 운동부 지도자 등 30여명의 교직원이 체육관 등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

○ 연도별 보통교실 부족 현황

실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보통교실	보유(A)	6	6	6	6
	소요(B)	6	7	8	9
	과부족(A-B)	0	-1	-2	-3
특별교실 대체현황			영어실 (1-3)	영어실 (1-3) 과학실 (2-3)	영어실 (1-3) 과학실 (2-3) 컴퓨터실 (3-3)

○ 교실 증축 필요 현황

구분	보통교실	기술가정실	영상분석실	시청각실	상담실	동아리실	제2교무실	합계
	과학실	영어실	도서실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현재	6	0	0	0	0	0	0	12
	1	1	1	1	1	1		
증축	3	1	1	1	1	1	1	9
	0	0	0	0	0	0		
계	9	1	1	1	1	1	1	21
	1	1	1	1	1	1		

나. 역도장 증축

- 본교 역도부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개를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열악한 훈련 환경 및 공간 협소로 학생들의 안전과 성적 향상이 염려되는 상황임
- 2023학년도 현재 18명의 학생들이 10개의 역도 매트 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역도장 증축 시 5개 역도매트와 웨이트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훈련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해짐
- 역도장 증축을 통해 우수 신입생 유치, 외부 선수의 전지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기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7. 사업내용

가. 교사동 증축 608㎡

- 보통교실 3실과 특별교실 5실, 관리실 1실을 증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교육 지표인 ‘미래역량을 갖춘 참다운 체육인 육성’ 을 위해 운동하며 공부하는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시설규모(증축내역)

구분	층별	용도	면적(㎡)	교실명
교사동	1층	필로티	0	
	2층	특별실(2실), 관리실(1실)	202.7	영상분석실, 상담실, 제2교무실
	3층	보통교실(3실)	202.7	보통교실 3실
	4층	특별실(3실)	202.6	기술가정실, 시청각실, 동아리실
계		9실	608.0	

나. 역도장 70㎡

- 역도 훈련장 증축으로 훈련 인원 과밀 해소와 훈련시간의 효율성 극대화 및 부상을 방지하고자 함
- 역도 매트 추가 설치로 학생선수들의 동시 훈련은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설치를 통해 경기력 및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시설규모(증축내역)

구분	용도	면적(㎡)			비고
		기존	증축	계	
역도장	훈련장	222.81	70	292.81	
	화장실&탈의실(남)	10.00	0	10.00	
	화장실&탈의실(여)	10.00	0	10.00	
	사무실	4.00	0	4.00	
	방풍실(현관)	4.00	0	4.00	
합계		250.81	70	320.81	

8.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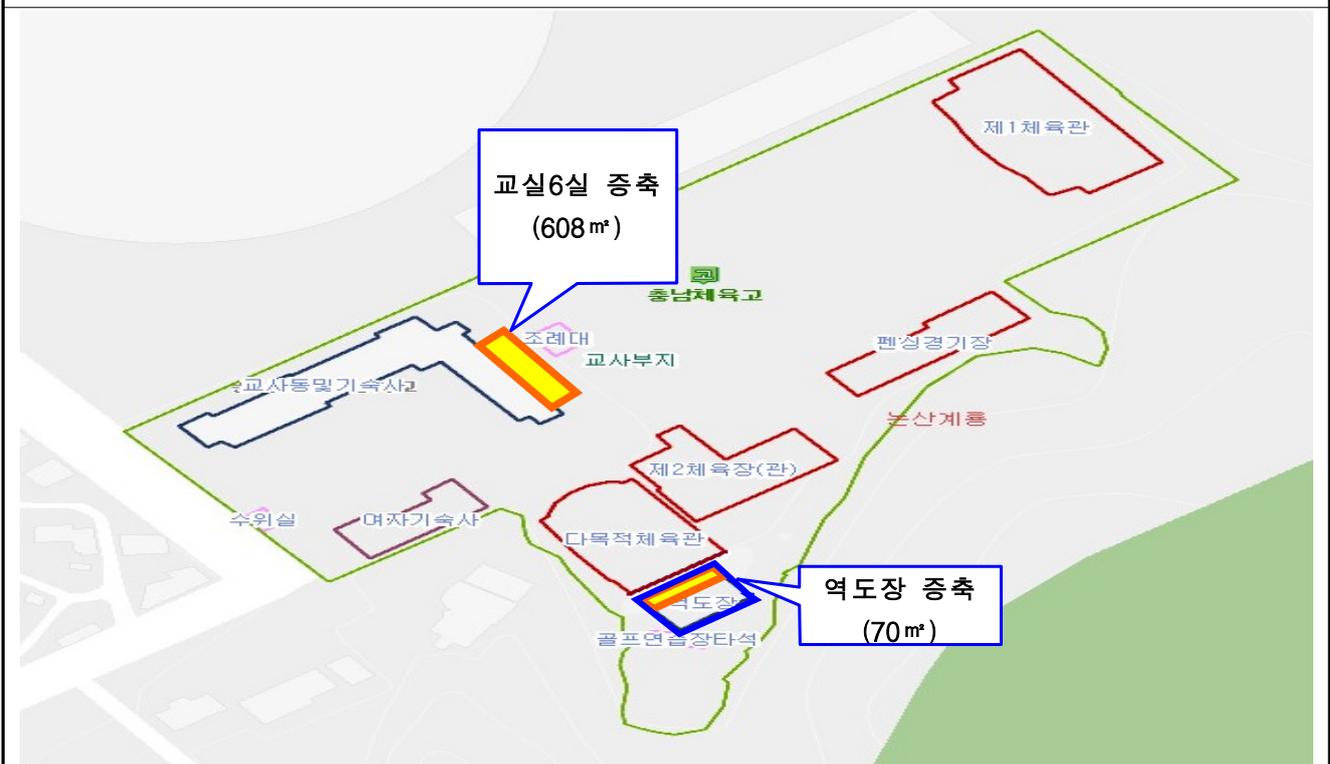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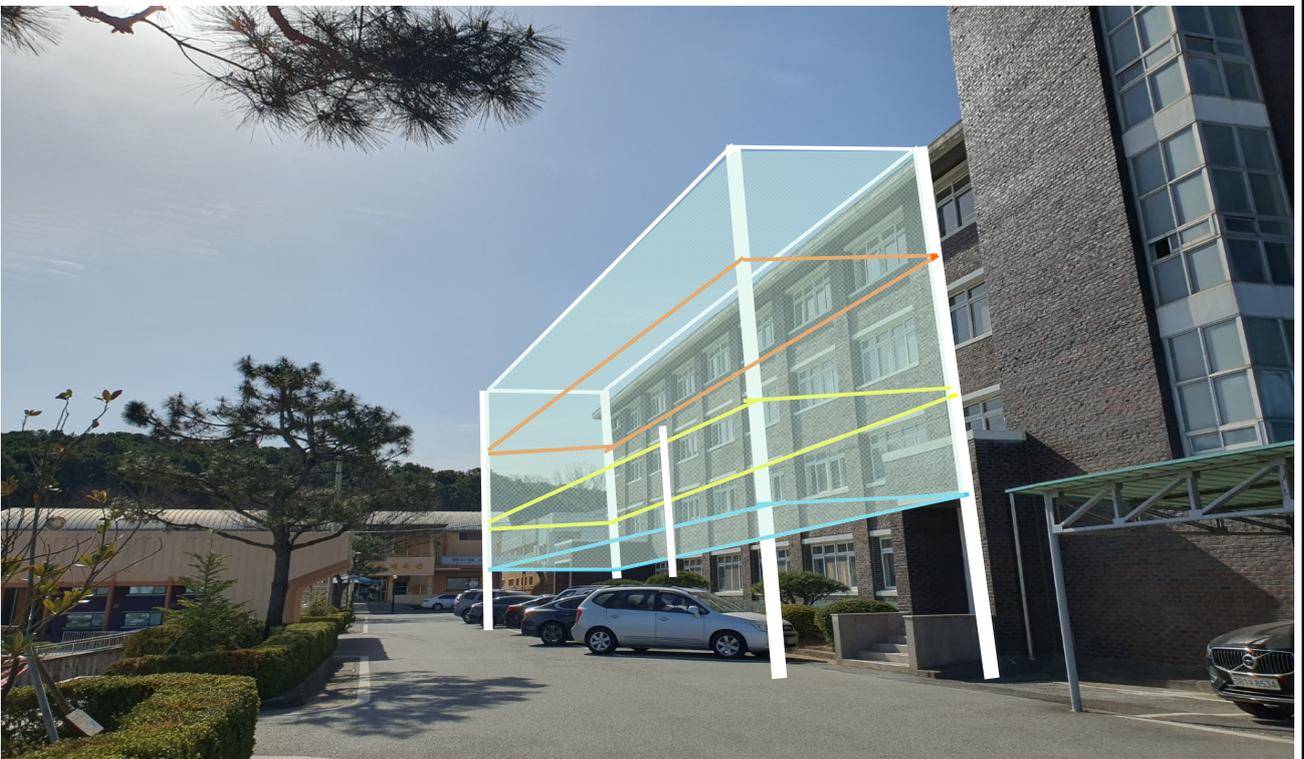
2. 시설배치도



3. 교사동 건물 현황(증축 위치)



4. 교사동 건물 현황(증축 위치)



5. 역도장 건물 현황(증축 위치)



6. 역도장 건물 현황(증축 위치)



7. 역도장 내부 현황



8. 역도장 내부 현황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철거 및 개축안

□ 교사동 처분(안)

1. 관 련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
-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안전총괄과-2010(2022. 3. 4.)]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가결) (2023. 1. 2.)

2. 처분 사유

- 대상 건물 교사동은 1969년 건축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1, 2학년 교실 및 관리실(교무실, 보건실 등)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임
- 최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으며, 본동 좌측 부분 구조부가 조적 기둥으로 구성되어 지진 발생 시 매우 취약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노후된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동 910.44㎡를 용도폐지 후 처분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백만 원)

소재지	명칭	취득일자	전체면적	철거면적	기준가격	대장가격
금산군 부리면 현대로 81	교사동 (본동)	1969.12.31.	1,623.1	910.44	283	902

□ 교사동 개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5. 12.(2년)
2. 위 차: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양곡리 699)
3. 규 모: 건물 910.44㎡(지상 2층)
4. 학교현황: 학급수 6학급, 학생수 44명
5. 사 업 비: 총 2,622백만 원 (건축비 2,622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2,622	132	2,490	0	
보통교부금	2,622	132	2,490	0	

◇ 사업 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개축	44	0	6	0	2025.12.	0	910.44	0	2,622	2,622

※ 총사업비 3,255백만 원(건축비: 2,622백만 원, 임시교사 및 이사비: 633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1969.12. 취득한 본동 교사는 5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충청남도 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D등급” 으로 지정됨
- 구조형식(조적기둥+RC슬래브)상 내진 및 구조보강에 따른 성능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 안전을 위해 교사동 1,623.1㎡ 중 910.44㎡ 개축이 필요함

- 개축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제공
-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마을교육과 농촌 소규모학교의 역량을 집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학교 공간 구성

7. 사업내용

- 본동 교사 중 구조 취약 부분인 좌측 일부(1, 2층 조적기둥 부분) 철거 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개축
- 개축대상 시설 규모(지상 2층)

구분	교실	영어실	교장	보건/행정	교무	기타	합 계
실	5	1	1	1	1	4	13
면적(㎡)	450	90	54	90	90	136.44	91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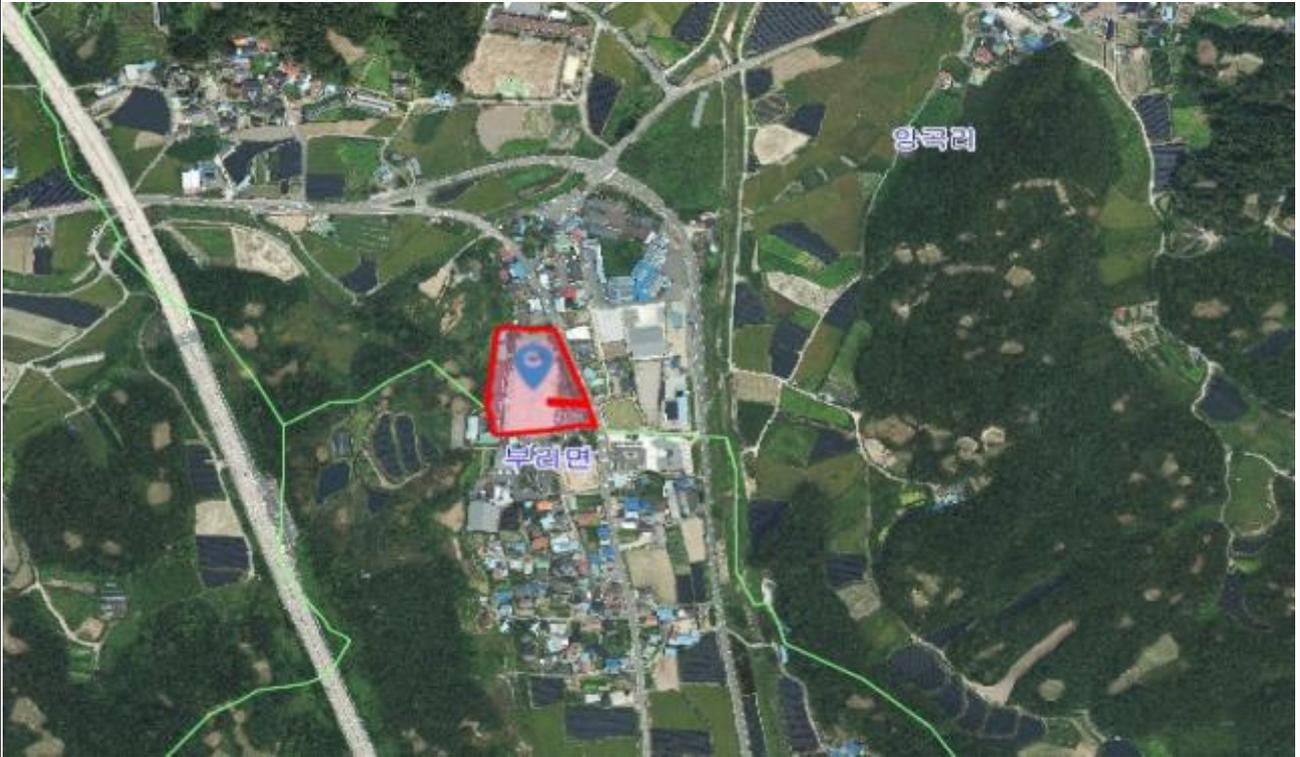
- 개축공사 중 임시교사(모듈러) 설치 사용 예정

8. 추진경과

- 2021.12.28.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 2022.02.25.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실시(안전총괄과-1376)
- 2022.03.04. 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안전총괄과-2010)
- 2023.01.0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원안가결)
- 2023.05.09.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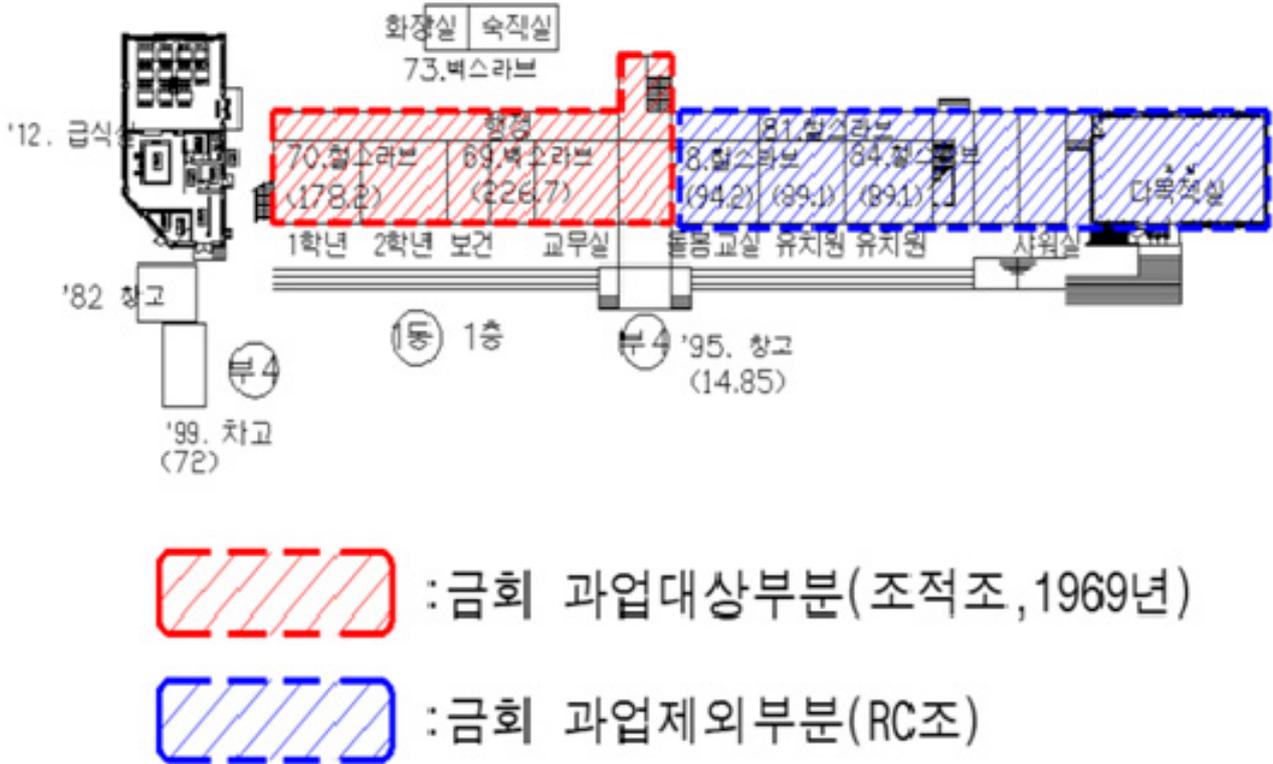
1.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699



2. 위성사진



3. 배치도



4. 전경사진



가칭 꿀벌도서관 설립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8.(2년 8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357-1번지 일원
3. 규 모: 토지 7,293㎡, 건물 2,700㎡(지상2층)
4. 기관현황: 자료실 및 체험실 등 16실, 열람석 315석, 장서 2만권
(개관 예정일 : 2026년 9월 1일)
5. 사 업 비: 총 18,749백만 원(토지매입비 4,960백만 원, 건축비 13,78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8,749	5,597	11,525	1,627	
보통교부금	18,749	5,597	11,525	1,627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규모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자료실	체 험 활동실	지원실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신축	2	11	3	2026.08.	7,293	2,700	4,960	13,789	18,749

※ 총사업비: 19,808백만 원(토지매입비: 4,960백만 원, 건축비 13,789백만 원, 도서 및 비품구입비: 1,059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당진시는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가 천안, 아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 해당 시·군의 총 인구수를 해당 시·군의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 도서관 서비스 권역인 수청동 일대에 12,000세대 입주와 2025년까지 총 4개 학교 개교 예정으로 어린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당진시의 어린이 비율은 2023년 6월 말 기준 13.1%(22,131명)로 충남 전체 어린이 비율 11.8%(250,517명)보다 높아 어린이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유아 및 아동 연령에 맞춘 자료실 조성(2실)
 - 유아자료실: 소리책, 빅북, 그림책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자료 비치, 유아 또는 유아동반 가족이 자유롭게 책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공간
 - 어린이자료실: 어린이 독서 발달단계에 맞춘 자료 비치 및 생태, 진로, 교과연계도서 등 특성화 자료 코너 운영
- 독서 체험 활동실 조성(9실)
 - 구성: 지식체험존(1실), 오디오북 제작실(1실), 미디어제작존(3실), 강의실(2실), 동아리실(2실)
 - 활용
 - 오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독후활동 및 가상 현실 기반 독서 놀이 체험 공간
 - 교과 수록 작품을 낭독극으로 만들고 녹음하여 오디오북 제작
 - 독서 관련 카드 뉴스, 토크쇼 등 미디어 제작 활동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 활용 수업 등 프로그램 운영

◦ 자율적인 토론·토의 및 협동학습 공간

○ 전시실 및 다목적실(2실)

- 인형극, 작가초청강연 등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독서 행사
- 작가의 도서 및 작품 전시,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 운영

○ 시설규모(지상 2층)

(단위: m²)

구분	구분			내용	비고
	면적	실수	좌석수		
유아자료실	600	1	45	팝업북, 빅북, 소리책 등 유아 특성화 자료실	1층
지식체험존	80	1	25	오감으로 체험하는 그림책 체험 마당	1층
오디오북 제작실	66	1	2	낭독체험,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실	1층
강의실	134	2	60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1층
전시실	120	1	0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 기획 전시 공간	1층
어린이자료실	400	1	30	학습만화, 웹툰 등 어린이 특성화 자료실	2층
다목적실 (공유마당)	100	1	80	그림책 인형 극장, 독서 체험 공간, 독립출판 전시 등을 위한 복합 공간	2층
미디어제작존	60	3	10	1인 스튜디오, 다인 스튜디오, 편집실	2층
동아리실	40	2	20	어린이 독서동아리 활동, 자기주도적 협업 공간	2층
휴게 공간	북카페	70	1	주제도서전시와 쉼이 있는 휴식 공간	2층
	유아 휴게실	30	1	영유아 휴게공간	
사무실	270	1	10	사무실, 자료정리실, 회의실, 서버실, 보존(문서) 서고	2층
기 타	730	0	0	로비, 안내데스크, 화장실, 계단 등 공용공간	1·2층
합 계	2,700	16	315		

8. 추진경과

- 2023.07.04. 가칭 끝별도서관 설립 기본계획(안) 확정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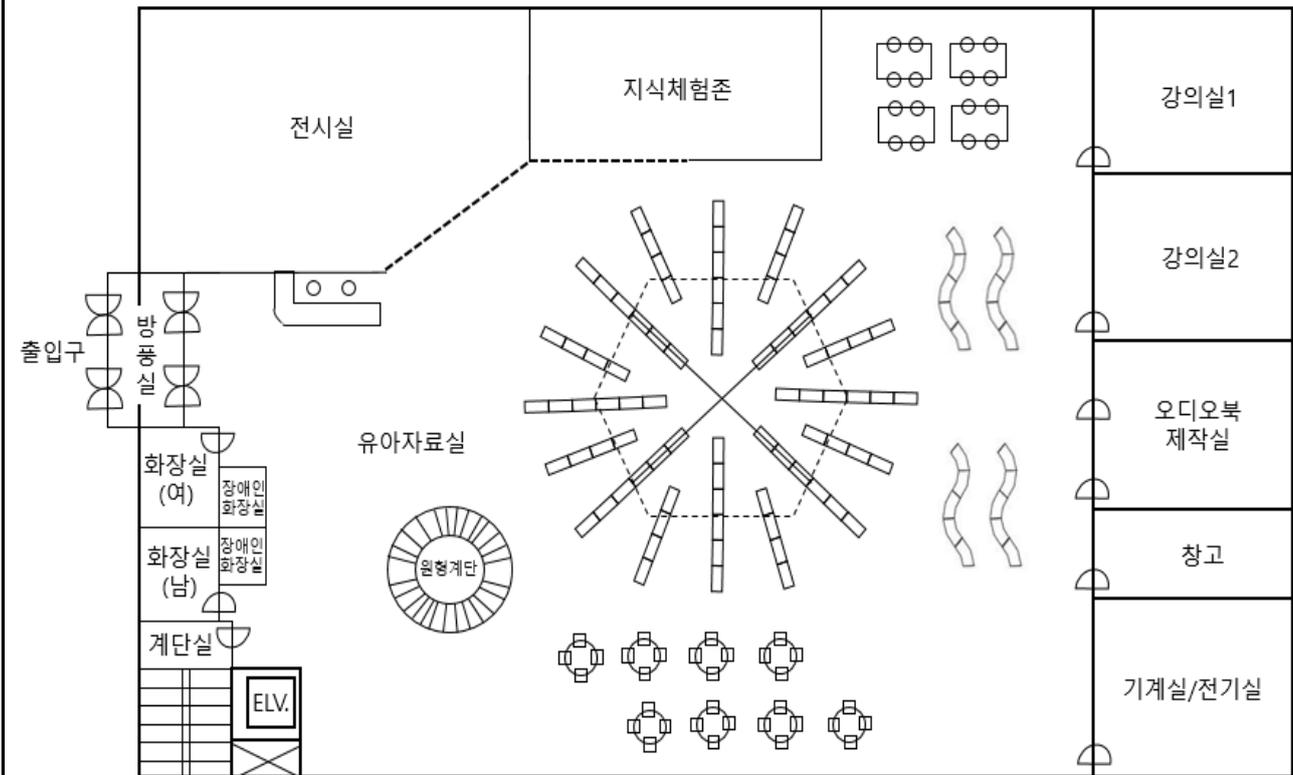
1.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357-1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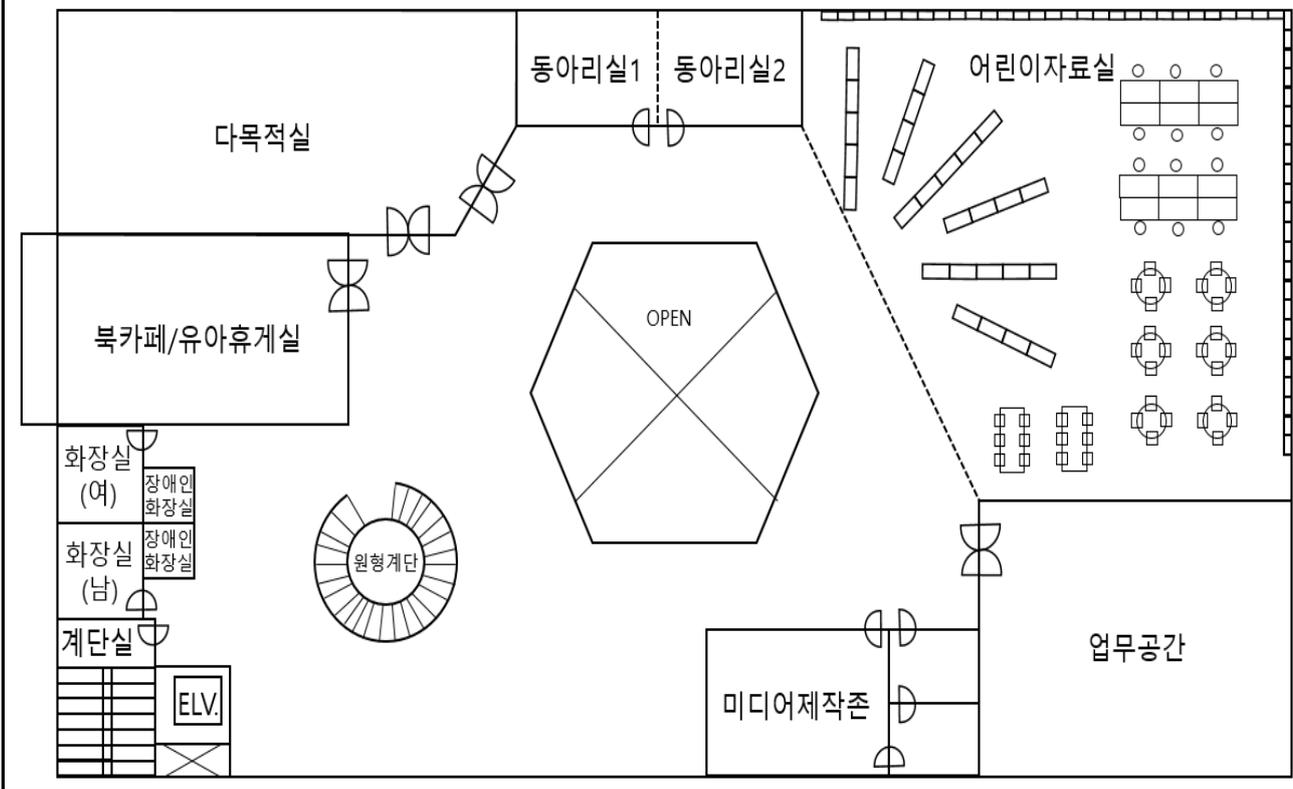
2. 전경사진



3. 공간 구성도 1층



4. 공간 구성도 2층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설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8.(2년 8월)
2.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357-1번지 일원
3. 규 모: 토지 7,524㎡, 건물 2,500㎡(2층)
4. 기관현황: 25실(1층 13실, 2층 12실) (개관 예정일: 2026년 9월 1일)
5. 사 업 비: 총 16,601백만 원(토지매입비 5,117백만 원, 건축비 11,484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6,601	6,452	3,530	6,619	
보통교부금	16,601	6,452	3,530	6,619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규모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실수	층별실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1층	2층						
신축	25	13	12	2026.08.	7,524	2,500	5,117	11,484	16,601

※ 총사업비 17,476백만 원, 부지비 5,117백만 원, 건축비 11,484백만 원, 비품비 875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돌봄, 수학체험교육, 외국어교육, 진로상담, 영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학습과 체험, 돌봄과 성장이 공존하는 융합형 교육복지 모델 구축 필요
- 미래교육, 창의융합교육,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기반 시설

조성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지원 체제 마련

-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4,400세대 도시개발이 진행중인 당진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한 교육 지원시설 구축으로 교육 수혜자의 높은 접근성을 통한 편의성 및 만족도 증대
- 미래교육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중심 허브 역할 수행으로 교육 지원 수혜율 증대

7.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 지원, 교육활동의 특성을 살린 전용 공간 구축, 기존 교육지원 기능 강화 및 운영 안정성 개선, 교육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육복지 모델 구축
- 시설규모(지상 2층)

구분	시 설 명	공간구성	실수	사 업 내 용	규모(m ²)
교 육 공 간	초등돌봄센터	돌봄교실	2.0	- 돌봄 프로그램 운영 (전래놀이, 토탈공예, 생태체험) - 돌봄 대중화 지원 - 돌봄 대상자 확대	260.0
		실내놀이터	1.0		
		교무실 (준비실)	1.0		
	수학체험센터 (영재교육센터)	다목적교실	2.0	- 수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실 수업 개선 사업 - 수학 대중화 지원 - 협동수학 체험 탐구 수업 실시 - 수학, 예술, 미래교육 연계 융합 - 수학 영재 수업 운영	422.5
		방탈출체험	1.0		
		전시실	2.0		
		수학클리닉	0.5		
		교무실	1.0		

구분	시 설 명	공간구성	실수	사 업 내 용	규모(m ²)
	외 국 어 교 육 센 터	다목적교실	3.0	- 체험 중심 외국어 학습 운영 - 초등 영어, 중국어 일일미션캠프 - AI기반 외국문화 체험공간 구성 - 디지털 영어 도서관 구성	487.5
		영어도서관	1.0		
		식 당	1.0		
		외국어체험실	1.5		
		교 무 실	1.0		
	진 로 진 학 상 담 센 터	상 담 실	0.5	- 진로진학 상담 - 교원 역량 강화	32.5
	상 상 이 름 공 작 소	상 상 이 름 공 작 실	1.5	- 상상이름 프로그램 운영 -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체험 프로그램)	97.5
북 카 페	북 카 페	0.5	- 북카페 및 휴식 공간 운영	32.5	
공 공 유 간	사 무 공 간	운영사무실 및 방송실	1.0	-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운영 - 방송실, 강사대기실 등	97.5
		강사대기실	0.5		
	다 목적 공 간	온담 공간	3.0	- 다목적 교육 공간 활용	195.0
공용면적 (2,500m ² × 35%)		복도, 계단, 화장실, 현관, EV, 전기실 등		- 기타 공용공간	875.0
합 계					2,500.0

8. 추진경과

- 2022.01.26. 가칭 당진 혜성초 신설(안) 2022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수청1지구내 학교용지(중·고)해제 원안대로 추진
- 2022.10.20. 2022년 제1회 당진교육행정협의회(수청지구 학교용지 변경 계획)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청)
- 2022.11.28.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변경(해제) 요청 공문 발송
(당진교육지원청→당진시, 당진수청1지구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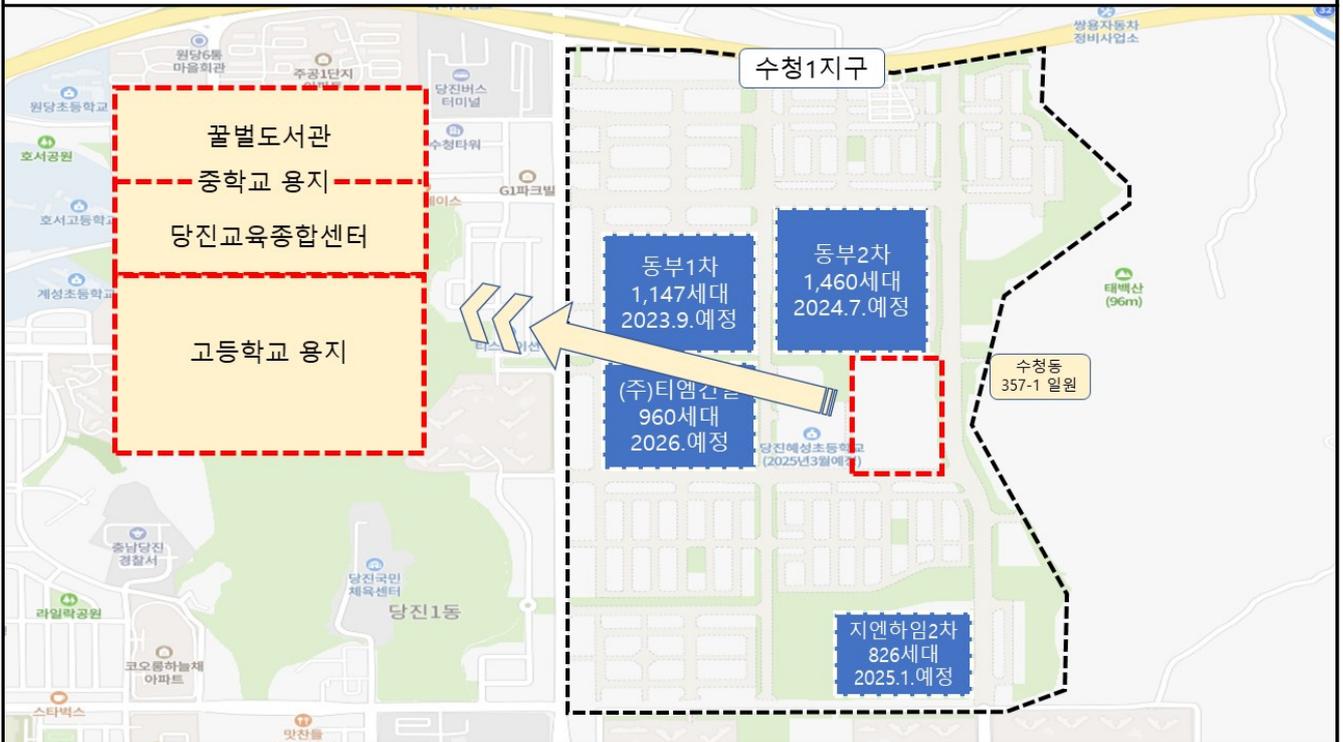
- 2022.12.27. 2022년도 제6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2.28. 당진 수청1지구 학교용지 활용 계획 안내
(당진교육지원청→당진시, 수청1지구조합)
- 2023.07.31.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357-1번지 일원



2. 세부위치도



3. 위성사진



4. 당진수청1지구 개발계획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4.(2년 4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3. 규 모: 건물 7,200㎡(지상3층, 280면)
4. 기관현황: 충청남도교육청(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 512명),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4부서, 63명)
5. 사 업 비: 총 12,038백만 원(건축비 12,038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2,038	429	11,609	0	
보통교부금	12,038	429	11,609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7.01.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직원수		주차 면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본청	정보원								계
증축	512	63	575	378	2026.04.	0	7,200	0	12,038	12,038

※ 주차장 타워 증축 시 최대 주차면수 190면 확보 가능(378면→568면)

6. 사업목적(필요성)

○ 2013년 청사 이전 이후 교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2023. 7. 1. 기준 575명 근무중으로 2013년 430명 대비 145명(↑34%) 증

- 도교육청 특성상 각종 행사와 회의·연수 실시 횟수가 많은데도 방문객 및 민원인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 토로
- 도교육청 앞 도로 또는 청사 내 어린이집 앞 등 임의 주차 문제 (불법 주·정차, 청사 내 가로주차, 이면주차 등)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일대 통행의 어려움 발생

7. 사업내용

-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앞 주차장에 주변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지상 3층 타워 형태 주차빌딩(280면) 증축
- 지상 주차장 증축을 통해 도교육청 방문 민원인과 방문객에게 편리한 청사 제공
 - 주차장(타워) 조성을 통한 주차면수 확보 계획

(단위: 면)

기존			주차장(타워) 조성 후				증감
본청	연구정보원	계	본청	연구정보원		계	
				순증	기존		
288	90	378	288	190	90	568	↑190

○ 시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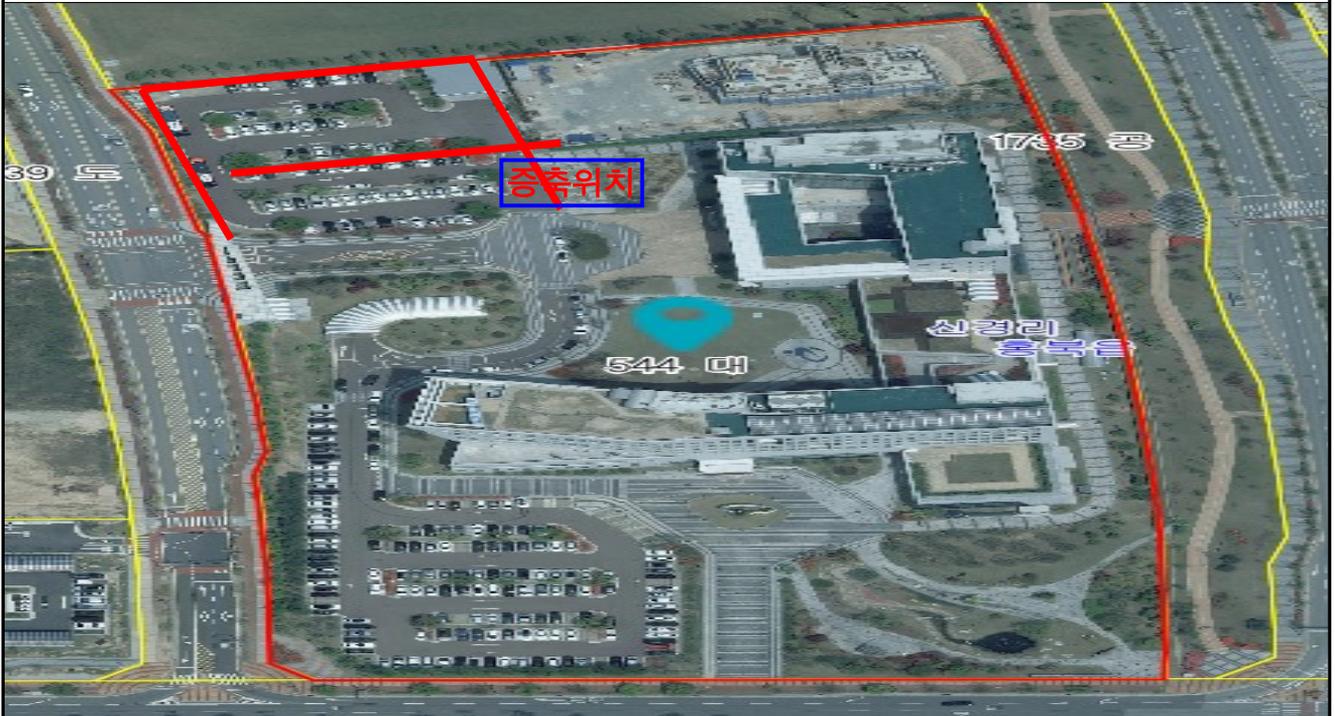
구분	구조	주차면수	면적(m ²)	비고
3층	지붕없음(태양광패널 설치) 주차장+계단실 경사로	100면		옥상층 지붕없음
2층	주차장+계단실 경사로	100면	3,600m ²	
1층	주차장+계단실 경사로	80면 (장애 5면)	3,600m ²	
계		280면	7,200m ²	

8. 추진경과

- 2022.12.1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23.03.13.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 계획 수립
- 2023.05.18. 지상 주차장(타워) 증축 사전기획용역비 확보
- 2023.07.24. 상시 주차문제 일부 해소를 위해 임시적으로 도교육청 정문 앞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유희부지(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541-1번지, 면적 1,000㎡)를 임차하여 사용 중 이나 2024년 계약연장이 불확실*하다는 담당자 답변 확인
* 충남경찰청에서 해당토지 매입 또는 관리전환 계획 준비중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4. 임의주차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12.(1년)
2. 위 차: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422-2번지 일원
3. 규 모: 토지 10,962㎡, 건물 1,253.71㎡, 입목죽 59주, 옹벽 및 웬스 1식
4. 폐교현황: 2007. 3. 1. 이인초등학교로 통폐합(학급수 5학급, 학생수 32명)
- 2012. 11. 22. 매각(환매특약), 2022. 11. 21. 매매계약 해제
5. 사 업 비: 총 1,182.98백만 원(매입비: 토지 974.6백만 원, 건물 153.74백만 원, 입목죽 8.64백만 원, 옹벽 및 웬스 46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182.98	1,182.98	0	0	
보통교부금	1,182.98	1,182.98	0	0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번	지목/ 명칭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추 정 금 액 (환매금액)
토 지	이인면 복룡리	422-2	학 교 용 지	8,865.00	357.26	798.60
토 지	이인면 복룡리	495-4	학 교 용 지	1,731.00	67.16	155.40
토 지	이인면 복룡리	665-1	학 교 용 지	316.00	12.77	18.10
토 지	이인면 복룡리	665-3	학 교 용 지	50.00	1.88	2.50
소계(4필지)				10,962.00	439.07	974.60
건물	이인면 복룡리	422-2	교 사	633.96	103.38	78.22
			교 사	540.00	70.92	66.62
			숙 직 실	46.00	3.22	4.47
			창 고	33.75	2.36	4.43
소계(4개동)				1,253.71	179.88	153.74
입목죽	이인면 복룡리	422-2	입 목 죽	59주	8.64	8.64
소계(59주)				59주	8.64	8.64
공작물	이인면 복룡리	422-2	옹벽 및 웬스	1식	46.00	46.00
소계(1식)				1식	46.00	46.00
합 계				12,215.71	673.59	1,182.98

6. 사업목적(필요성)

- 2012. 11. 22.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사용 용도(협회 연수원 시설 및 교육 시 숙소시설)와 사용기간(10년)을 정하여 1,122백만 원 상당으로 매매계약 체결 및 환매특약 등기 완료

- (구)복룡초등학교 매각 현황

(단위: m², 천 원)

매각일자	구분	매각 현황			
		토지**	건물	입목죽	합 계
2012.11.22.	면적/수량	10,596	1,303.21	59주	11,899.21
	금액	953,998	159,712	8,636	1,122,346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 폐교 내 (구)국유지 2필지(665-1번지, 665-3번지) 366m²: 2013. 3. 12. ‘국’ 과 별도 매매(20,600천원)

- 그러나, 당초 (구)복룡초등학교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우리 교육지원청이 사업 이행 요구(시정명령) 하였으나 미이행
- 이에, 2022. 11. 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시정명령 등) 및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근거로 매매계약 해제 완료 및 (구)복룡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환매(매매)를 추진코자 함

7. 사업내용

- 합의에 의한 재산명도 추진(합의 불가 시 소송 추진)

- 환매(매매) 금액 산출내역

(단위: m², 천 원)

당초 매각대금(A)	증액(B)		감액(C)	환매(매입)액 (E=A+B-C)
	당초 국유지 매각대금	신설 옹벽 및 메쉬웬스	창고 멸실	
1,122,346	20,600	46,000	5,970	1,182,976

- 멸실된 창고(5,970천 원) 환매대금에서 감액
 -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매입 후 신설한 보강토옹벽 및 메쉬웬스(92,000천 원)는 현재 감정평가 금액(46,000천 원)만큼 환매대금에서 증액
 - 폐교 내 (구)국유지 2필지(366㎡)는 당초 매매금액(20,6000천 원)으로 매입
- (구)복룡초등학교 환매(매매) 취득 후 지자체 공공목적 매각 예정

8. 추진경과

- 2012.11.22. (구)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환매특약등기) 체결
- 2021.12.27. 매각 폐지학교 계약 이행 촉구 공문 발송(행정과-32027)
- 2022.02.15. 공주 산업안전연수원 부지 활용 계획(안) 제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22-총무국-0056)
- 2022.07.15.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활용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 제출 요청(행정과-17292)
- 2022.07.21. 매수자(대한산업안전협회) 지원청 방문 협의

- 공주교육지원청: 매매계약 목적이행과 환매사항 주지 시킴
 - 대한산업안전협회: 심각성 인식, 계획한 사업 속히 실시하겠음
- 2022.09.20. 환매 관련 법률자문(고문변호사 5명)

-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매매계약 해제 가능(다수 의견)
- 2022.10.20.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매수 목적 사용 요구 및 시정명령 (사전예고) 알림(행정과-25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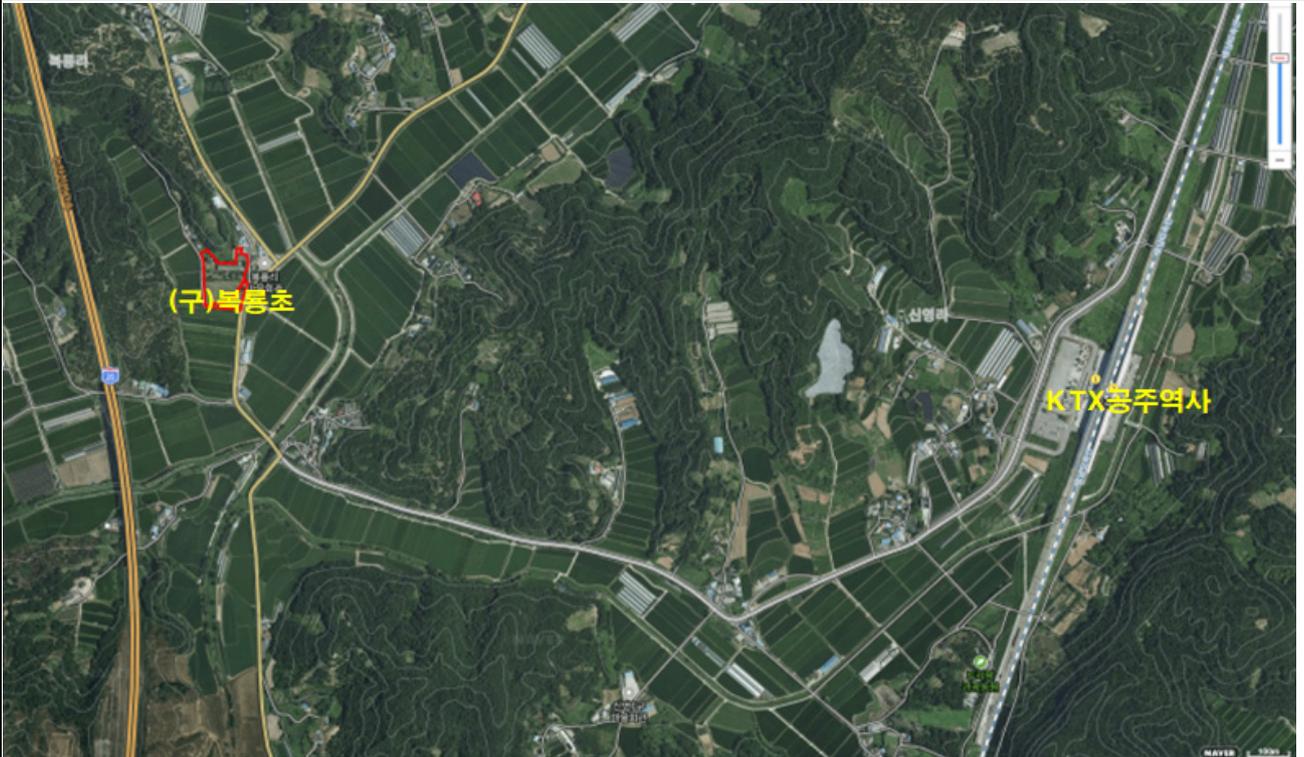
-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음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요구
- 2022.11.15. 매각 폐지학교 시정명령 및 매매계약 해제(해지) 통지(행정과-28337)

- 시정명령 완료일: 2022.11.20.(일)
 - 매매계약 해제(해지)일: 2022.11.21.(월)

- 2022.11.22.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매매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안내
(행정과-28981)
 - 원상회복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2022.12.15. 매각 폐지학교(구 복룡초) 매매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사후
조치 현장 협의 요청(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22-충무국-0522)
- 2022.12.22. 매수자 측과 (구)복룡초등학교 현장 협의(행정과-33480)
 - 협의내용: 매매대금 이자와 부동산 과실은 상계처리, 절차와 방법 지속 협의로
원만히 해결, 창고 1동 멸실, 응벽 및 메쉬웬스 신설 등에 따른 처리 방법 협의
- 2023.02.23. 원상회복과 소유권 이전 관련 법률자문(고문변호사 5명)
 - 멸실된 창고 가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여 반환(다수 의견)
 - 신설 울타리는 준치가 필요할 경우 현존 가치 감정하여 상호 협의 및 정산(다수 의견)
 - 이행합의서 작성으로 법적 의무 발생(다수 의견)
- 2023.05.31. (구) 복룡초등학교 부지 내 국유재산 매매계약 관련 의견
및 자료 요청(행정과-14333)
- 2023.07.25. (구)복룡초등학교 부지 내 국유재산 매매계약 관련 의견
및 자료 요청에 대한 ‘별도의견 없음’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150263)
- 2023.08.04.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422-2번지 일원



2. 위성사진



3. 전경 사진(교사동)



4. 전경 사진(숙직실)



5. 전경 사진(창고)



6. 전경 사진(옹벽 및 휨스)



[고교학점제]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2.(2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3
3. 규 모: 건물 1,625㎡(기존 교사동 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3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339명(특수 21명 포함)
5. 사 업 비: 총 3,744백만 원(건축비 3,744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3,744	374	3,370	0	
보통교부금	3,744	374	3,370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m²,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318	21	40	3	2026.02.	0	1,625	0	3,744	3,744

※ 총사업비 7,729백만 원, 증축비 3,744백만 원, 리모델링 등 3,985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에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필요(국정과제 50-2-2: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증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종합적 사업 추진이 요구됨

- 학교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공간으로 증축하고자 함
- 교실 14실 증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학점제형 수업에 적합한 교과교실제 학교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7. 사업내용: 증축 1,625㎡, 리모델링 6,120㎡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을 위해 기존 교사동 5층에 1,625㎡(교실 14실 및 화장실, 계단실, 승강기) 증축
 - ※ 68실(6,120㎡)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면 재구조화
-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
-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교과특성화 학교로 운영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스마트 교실을 통해 기존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공간혁신을 이루고자 함
- 시설규모

구분	층별	용 도	면적(㎡)
본동	5층	보통교실 8실/ 특별교실 6실	1,260
		화장실 3실	135
		계단실 1실	90
		승강기 1식	8
	옥탑	물탱크실	132
계			1,625

8. 추진경과

- 2022.07.25.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도입(증설) 신청서류 제출(교육과정과-18093)
- 2022.08.23.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실무점검단 협의회 (교육과정과-19741)
- 2022.08.24.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추진점검단 협의회 (교육과정과-19744)
- 2022.08.31.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신규도입 및 증설 승인 보고(교육과정과-20838)
- 2023.02.~0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 2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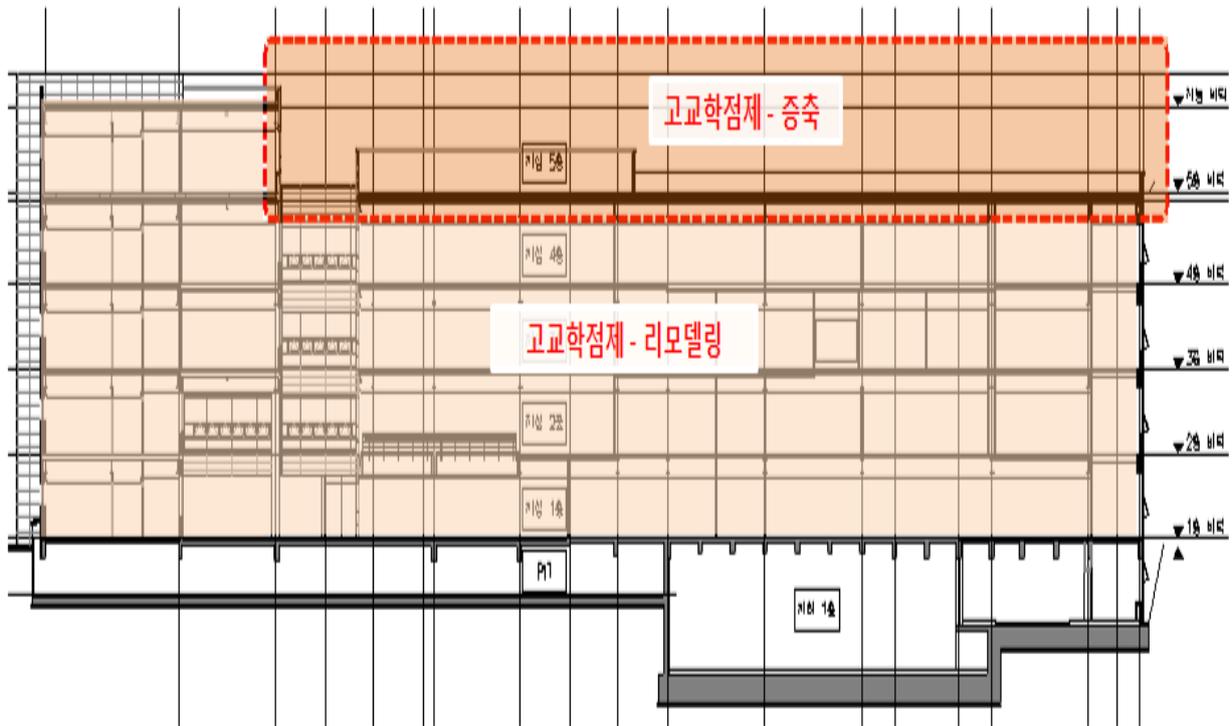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증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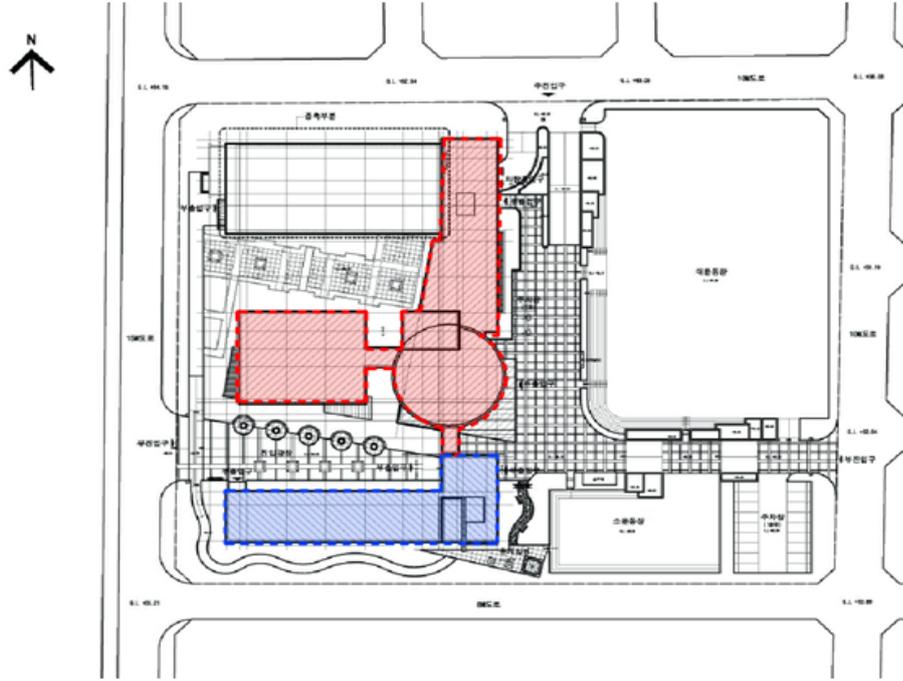


4. 증축계획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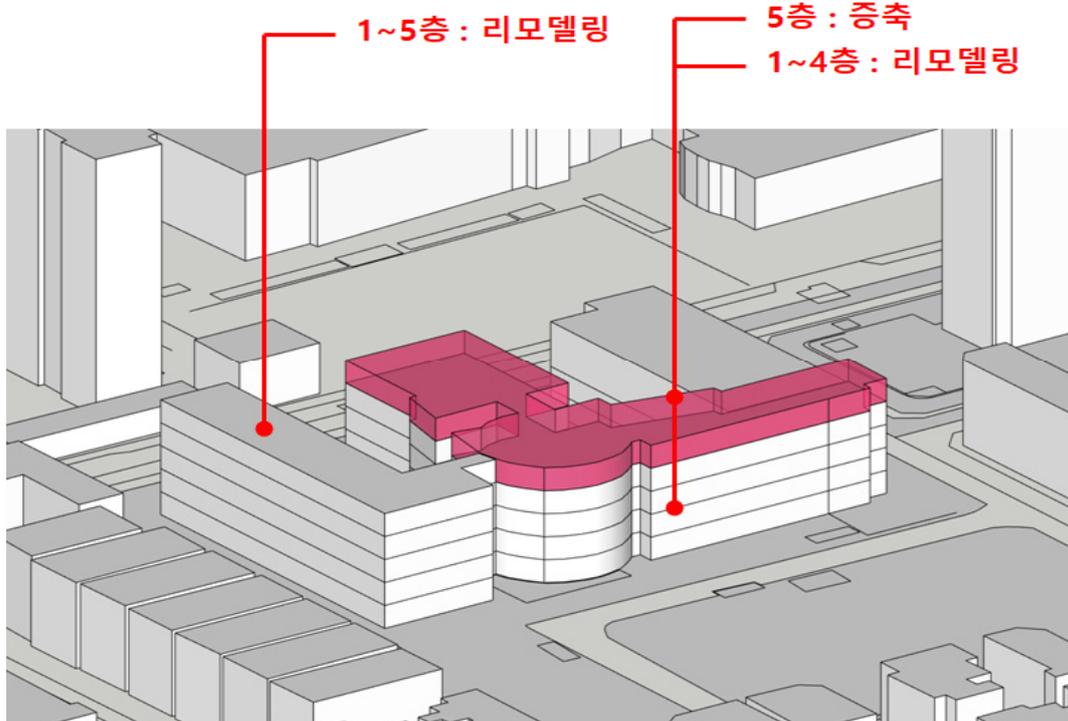


5. 배치도

- 1~4층: 리모델링, 5층: 증축
- 1~5 층: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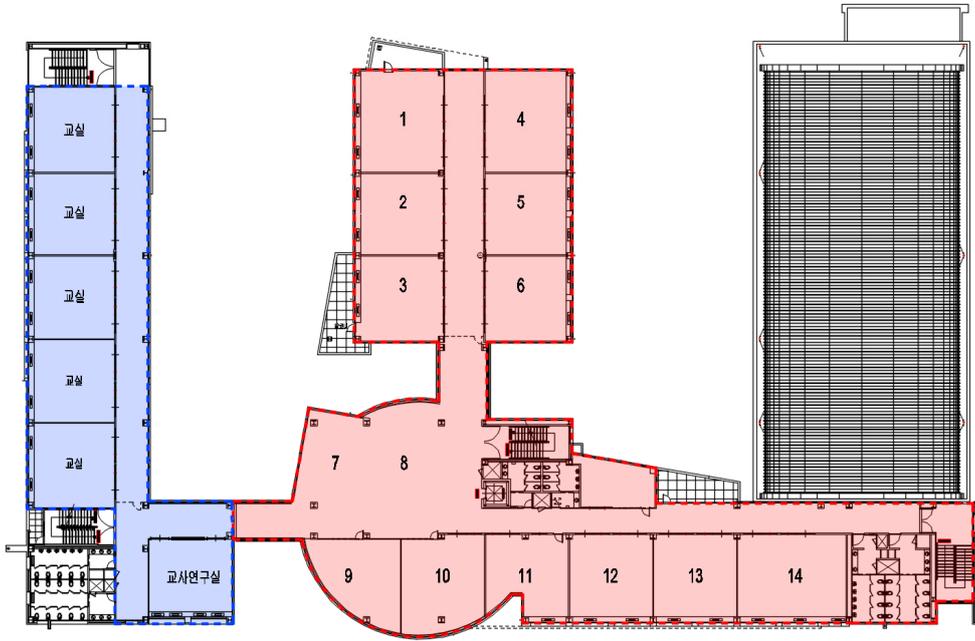


6. 증축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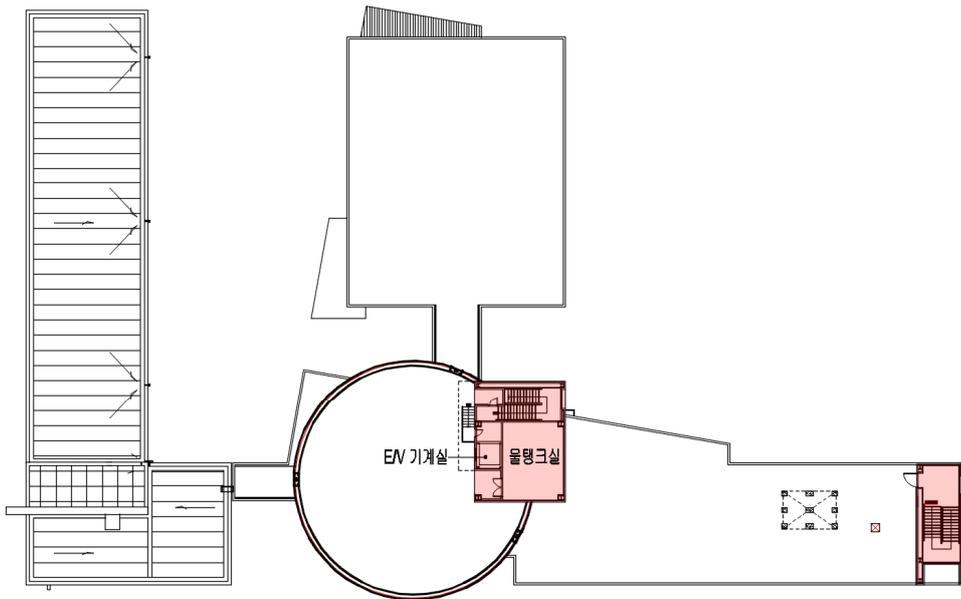
7. 지상 5층 평면 계획도

- 고교학점제 : 증축
- 고교학점제 : 리모델링



8. 옥탑 평면 계획도

- 고교학점제 : 증축



[고교학점제]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2.(2년 2개월)
2. 위 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로 51 (불당동)
3. 규 모: 건물 3,238.56㎡(지상 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41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1,273명(특수 18명 포함)
5. 사 업 비: 총 7,991백만 원(건축비 7,991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7,991	799	7,192	0	
보통교부금	7,991	799	7,192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255	18	38	3	2026.02.	0	3,238.56	0	7,991	7,991

※ 총사업비 12,751백만 원, 증축비 7,991백만 원, 리모델링 등 4,760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에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필요(국정과제 50-2-2: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 본관 전동 일부 증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종합적

사업 추진이 요구됨

-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사업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공간으로 증축하고자 함
- 교실 32실 증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학점제형 수업에 적합한 교과교실제 학교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7. 사업내용: 증축 3,238.56㎡, 리모델링 5,850㎡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을 위해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여 3,238.56㎡ (교실 32실 및 화장실, 계단실) 증축
 - ※ 65실(5,850㎡)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면 재구조화
-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
-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교과특성화 학교로 운영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스마트 교실을 통해 기존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공간혁신을 이루고자 함
- 시설규모

구분	층별	용 도	면적(㎡)
본동	1층	홀/계단실 1실	85.05
	2층	보통교실 4실/특별교실 7실, 계단실 1실, 화장실 1실	1,036.17
	3층	보통교실 4실/특별교실 7실, 계단실 1실, 화장실 1실	1,036.17
	4층	보통교실 4실/특별교실 6실, 계단실 1실, 화장실 1실	1,036.17
	옥탑	계단실 1실	45.00
계			3,238.56

※ 1층 필로티 주차장 조성: 951.12㎡

8. 추진경과

- 2022.07.25.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도입(증설) 신청서류 제출(교육과정과-18093)
- 2022.08.23.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실무점검단 협의회(교육과정과-19741)
- 2022.08.24.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추진점검단 협의회(교육과정과-19744)
- 2022.08.31.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신규도입 및 증설 승인 보고(교육과정과-20838)
- 2023.02.~0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51 (불당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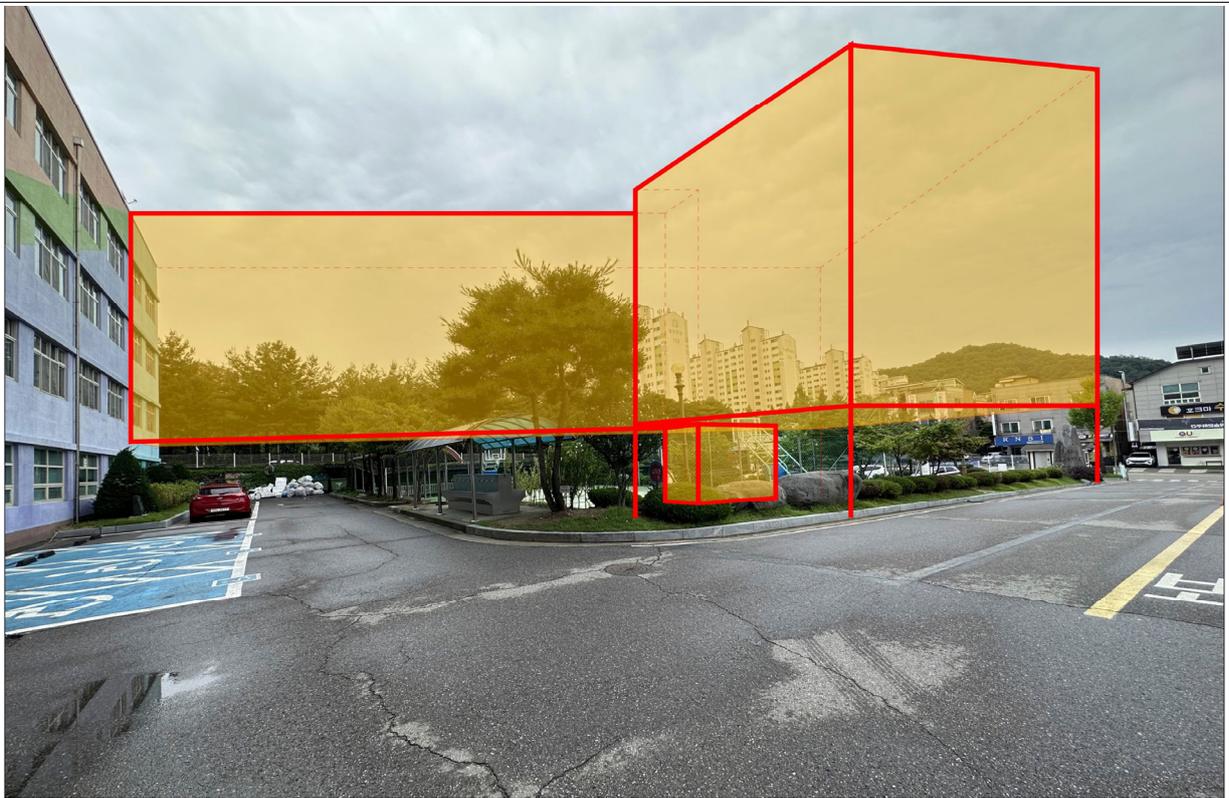
2. 위성사진



3.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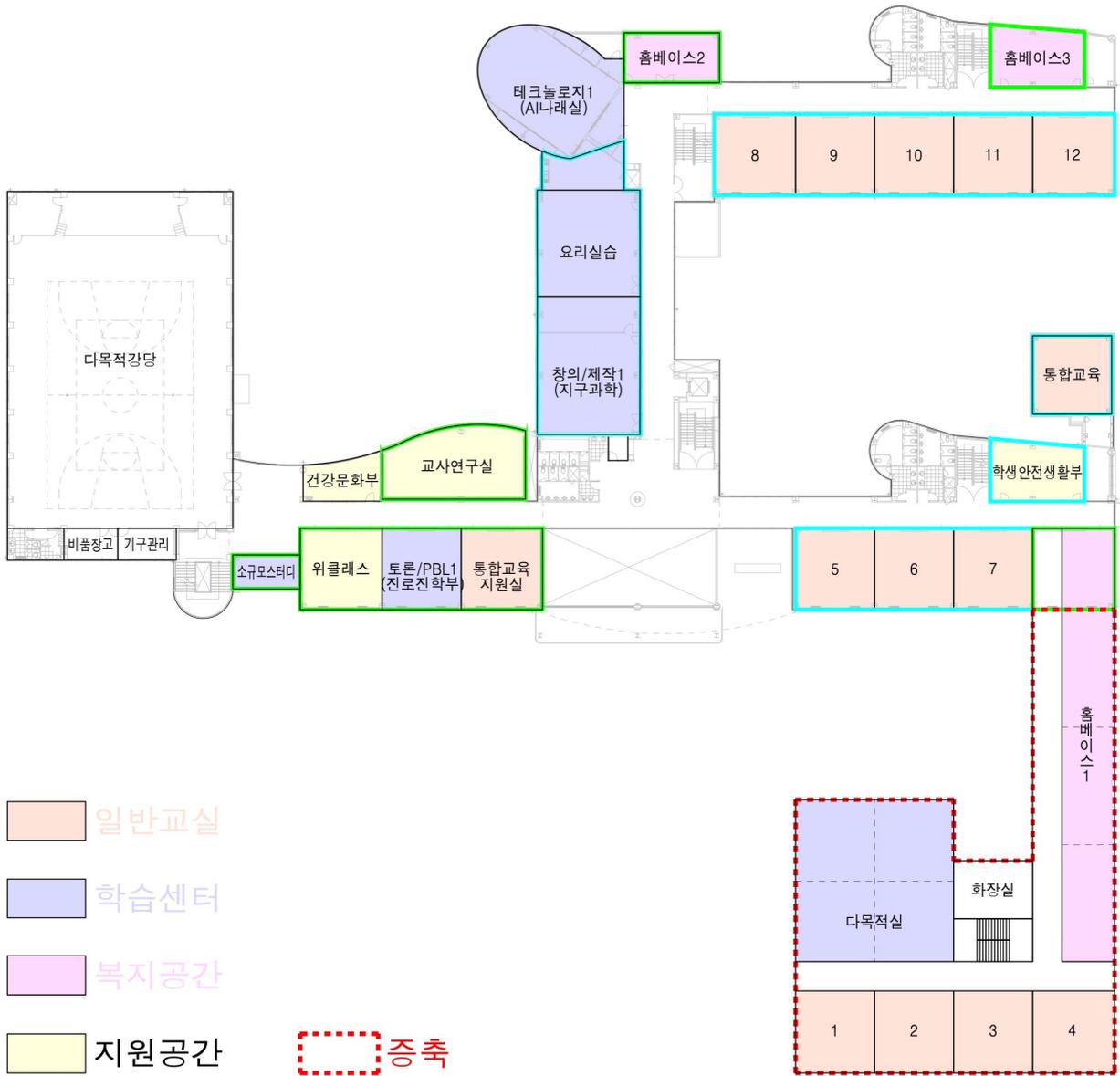
4.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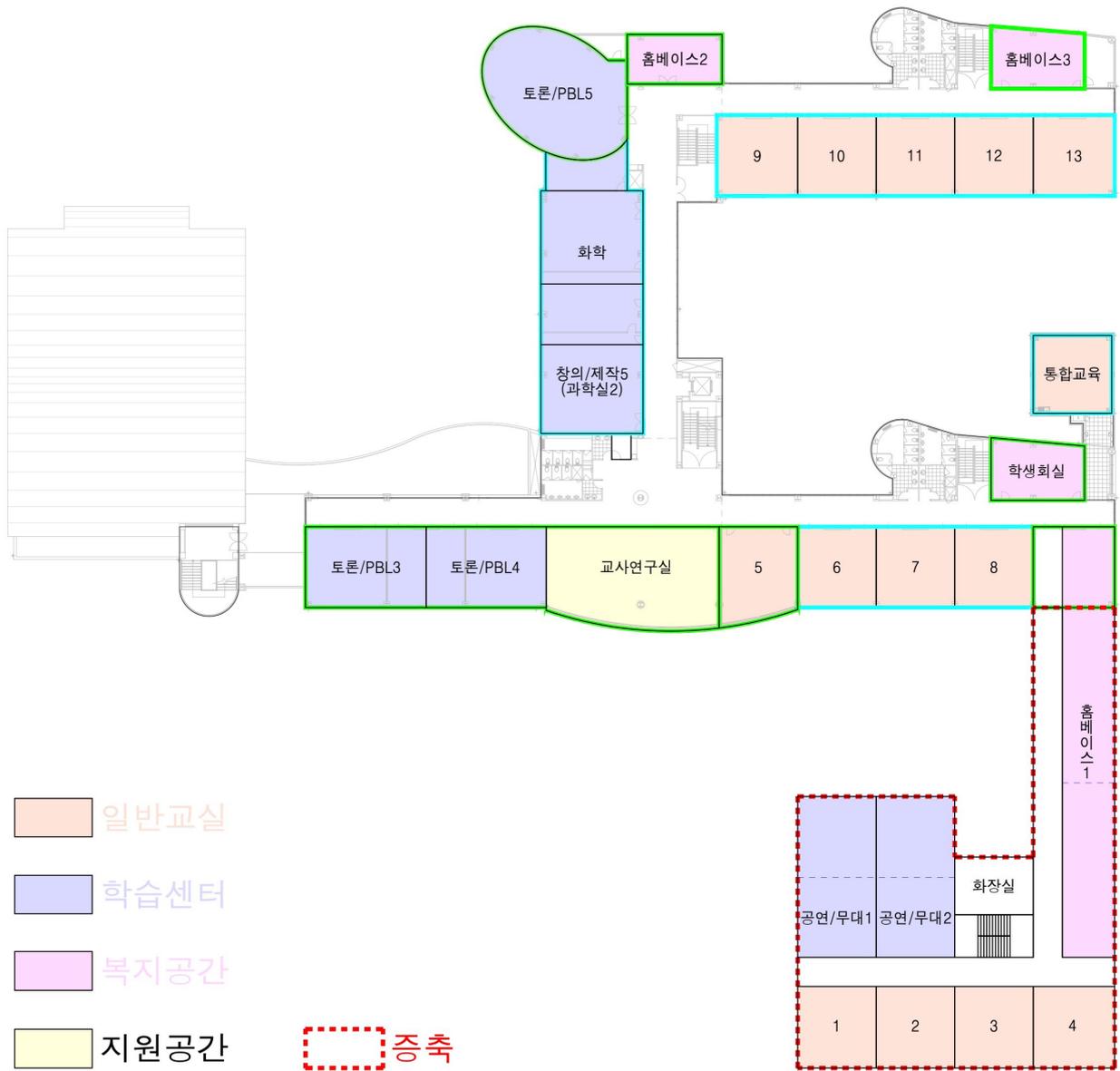
5. 1층 평면도



6. 2층 평면도



8. 4층 평면도



[고교학점제]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2.(2년 2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성성동)
3. 규 모: 건물 1,935㎡(지상5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9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262명(특수 6명 포함)
5. 사 업 비: 총 4,383백만 원(건축비 4,383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10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4,383	438	3,945	0	
보통교부금	4,383	438	3,945	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1,256	6	38	1	2026.02.	0	1,935	0	4,383	4,383

※ 총사업비 8,341백만 원, 증축비 4,383백만 원, 리모델링비 3,958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에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필요(국정과제 50-2-2: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 2025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최소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증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수 학습 환경 조성 등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종합적 사업 추진이 요구됨
- 학교공간 재배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학교공간으로 증축하고자 함
- 교실 16실 증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학점제형 수업에 적합한 교과교실제 학교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7. 사업내용: 증축 1,935㎡, 리모델링 6,300㎡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을 위해 기존 교사동에 지상5층, 1,935㎡ (교실 16실 및 화장실, 계단실 증축)의 건물을 연결하여 증축
 ※ 70실(6,300㎡)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면 재구조화
-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조성
-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교과특성화 학교로 운영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스마트 교실을 통해 기존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공간혁신을 이루고자 함
- 시설규모

구분	층별	용도	면적(㎡)
본동	1층	지원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2층	보통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3층	보통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4층	보통교실 3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5층	특별교실 4실, 계단실/화장실 1실	378
	옥탑	계단실 1실	45
계			1,935

8. 추진경과

- 2022.07.25.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도입(증설) 신청서류 제출(교육과정과-18093)
- 2022.08.23.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실무점검단 협의회(교육과정과-19741)
- 2022.08.24.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추진점검단 협의회(교육과정과-19744)
- 2022.08.31.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교과교실제) 신규도입 및 증설 승인 보고(교육과정과-20838)
- 2023.01.~07. 사전기획용역 추진
- 2023.05.08. 2023년도 정기2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성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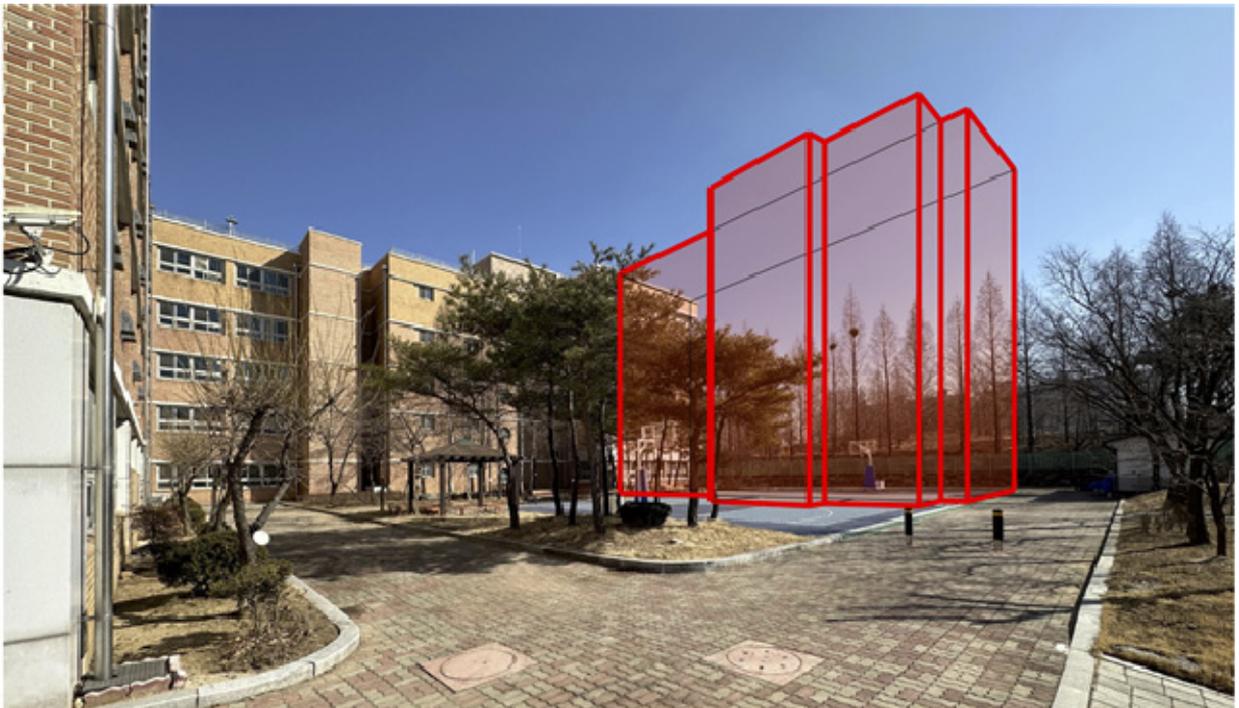
2.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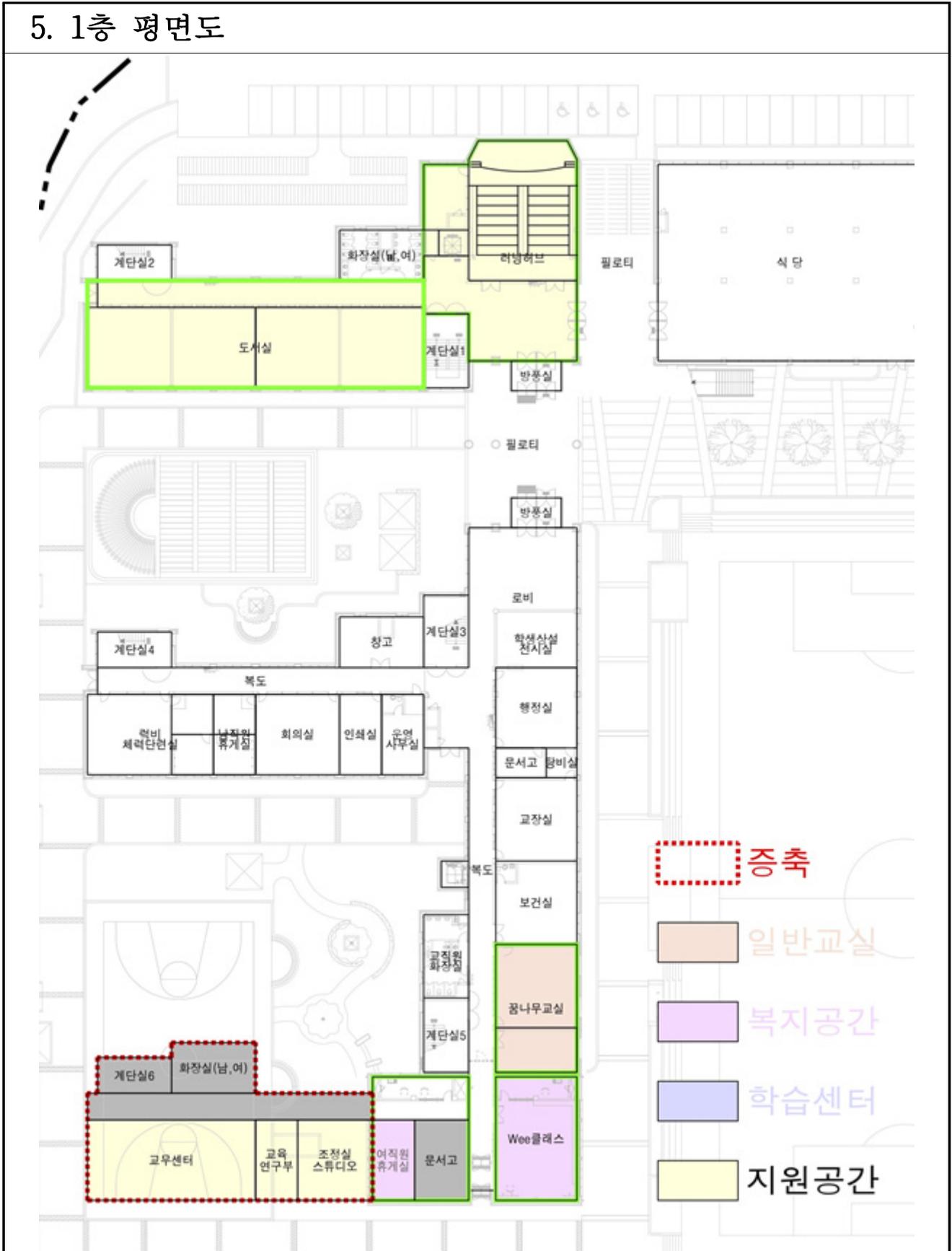
3. 전경사진(증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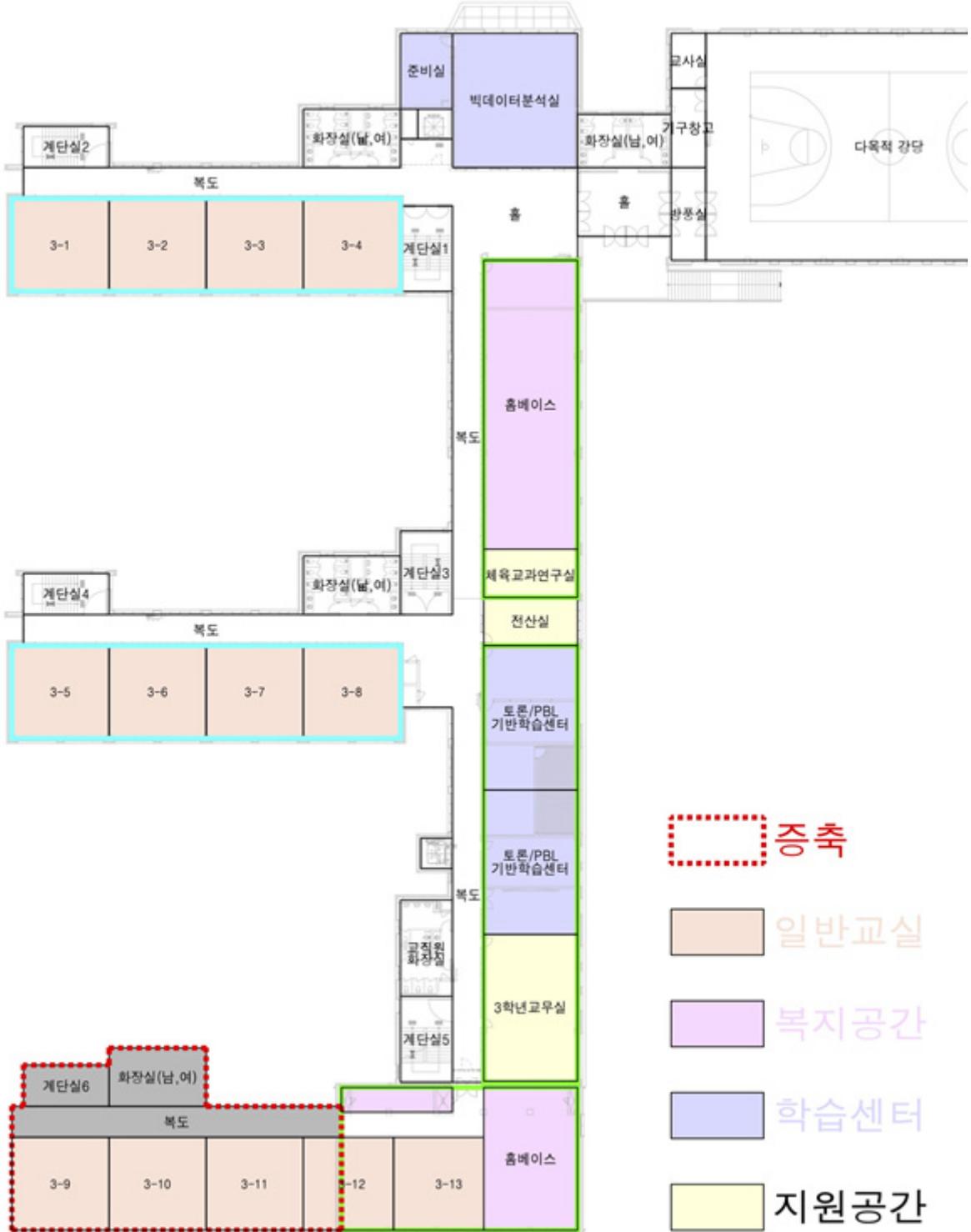
4. 전경사진(증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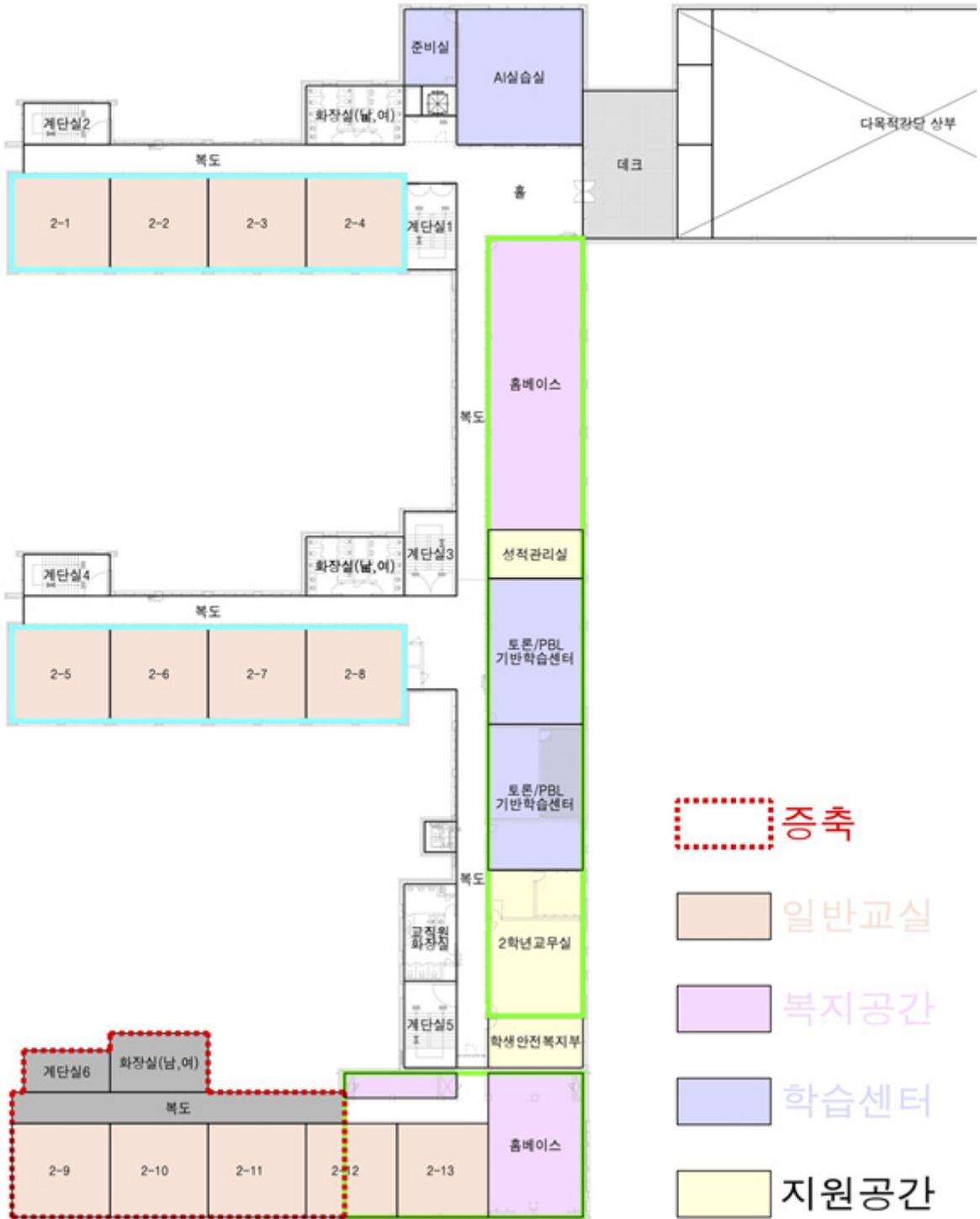
5.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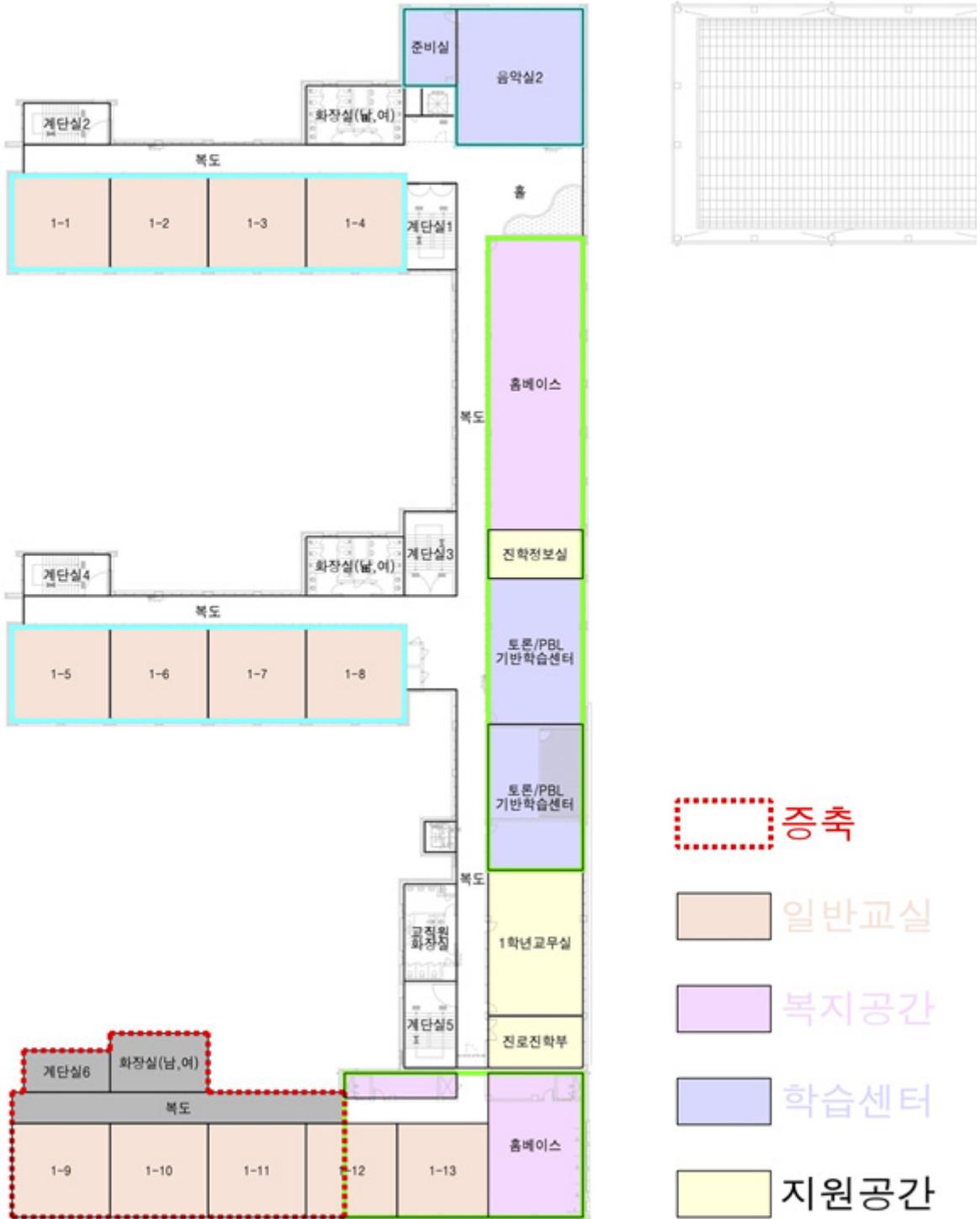
6.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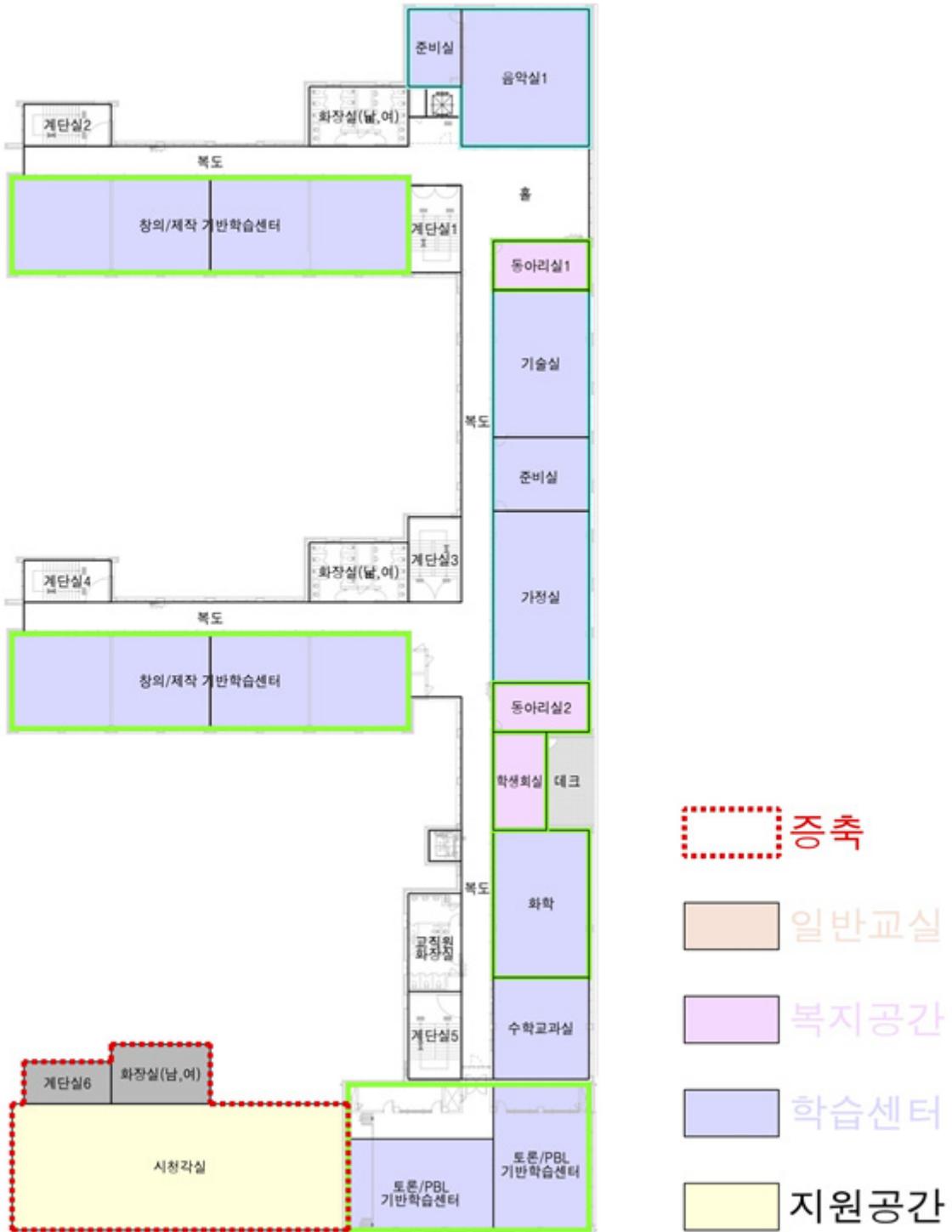
7. 3층 평면도



8. 4층 평면도



9. 5층 평면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 교사동 처분(안)

1. 관 련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선정 결과 알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482(2022. 9. 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원안가결) (2023. 7. 27.)

2. 처분 사유

- 대상 건물 5개동은 건축 후 44~48년 경과 된 노후 건물로 내진 보강이 필요하며 최근 정밀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창고동 3개동(11, 12, 20동) 또한 건축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위해 철거가 필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40년 이상 노후된 교육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하고자 함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건물 개축에 따른 학교시설 배치의 합리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해 8개동 13,299.5㎡를 처분하고자 함

3. 용도폐지 및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m², 백만 원)

소재지	명 칭	취득일자	면 적	기준가격	대장가격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1동(본동)	1975.12.10.	3,280.0	364	1,859
	2동(후동)	1976.10.01.	3,950.8	1,205	1,677
	3동(후동)	1976.10.01.	1,312.2	145	559
	4동(부품과)	1979.05.26.	2,808.0	311	566
	5동(금형과)	1976.11.18.	1,656.0	183	1,181
	11동(창고)	1975.12.10.	25.9	1	2
	12동(창고)	1976.10.01.	259.1	21	41.3
	20동(경유탱크)	1976.11.18.	7.5	0.6	0.6
계			13,299.5	2,230.6	5,885.9

□ 교사동 증·개축(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6. 3.(2년 3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3. 규 모: 건물 13,369㎡ (개축 13,007㎡, 증축 362㎡)
4. 학교현황: 학급수 15학급, 학생수 208명
5. 사 업 비: 총 37,416백만 원 (건축비 37,416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70.0%, 국고보조금 3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37,416	3,742	18,708	14,966	
보통교부금	26,190	2,619	13,095	10,476	
국고보조금	11,226	1,123	5,613	4,490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개축	208	0	15	0	2026.03.	0	13,369	0	37,416	37,416

※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사업 대상학교 선정 예정

■ 사업개요

- 사업방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 사업범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시설 증·개축
- 임대기간: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

6. 사업목적(필요성)

- 대상건물 5개동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 후 44~48년 경과된 노후건물로 정밀점검 결과에도 5개동 전부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실습실 부족으로 일반교실을 실습실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 동간 이동거리가 최대 250m로, 학생들이 경사가 있는 옥외 보행로를 주로 이용함으로써 동절기 및 우천 시 불편하고 위험함
- 넓은 공간과 고중량·대형 실습장비를 필요하는 실습실은 일반적인 모듈러 형태로는 구축할 수 없으며, 다른 임시 가설건축물로도 대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개축이 필요함
-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들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의 재구조화 필요

7. 사업내용

- 기존 5개동 철거 후 교사동 전체를 용도별(성질별)로 구분하여 3개동으로 개축

구분	1동	2동	3동	4동	5동
기존	교사동, 관리행정동	교사동, 실습동	실습동		
개축	교사동, 관리행정동	교사동, 전기전자과, 금형과(실습동)	부품가공과 (실습동)		

- 증·개축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기반 교육, 창의 융합 교육, 시민교육을 목표로 한 미래학교로 전환
-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시설 일부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로 전환

○ 시설 규모

1) 시설 규모: 13,369㎡(개축 13,007㎡+증축 362㎡)

2) 공간 구성계획

구분	교수학습 공 간	교수학습 지원공간	생활 및 복지지원	관리 및 행정	공용	합 계
실	69	14	17	16	34	150
면적(㎡)	8337.5	1,310.1	1,156.6	634.4	1,930.4	13,369.0

3) 시설별 현황

구 분		실수	면적(㎡)
교수학습 공 간	스마트공용교실	15	907.2
	특수학급 교실	1	90.7
	PBL 교실	3	433.4
	음악실	1	113.4
	멀티미디어실	1	151.2
	스마트융합교실	4	189.0
	STEAM(과학실)	2	226.8
	종합강의실	1	120.9
	전기전자제어실	1	352.8
	생산자동화산업기사실	2	396.9
	마이크로프로세서실	1	176.4
	공유압제어실	1	132.3
	전자회로실	1	176.4
	내선공사실습실	2	352.8
	특성화전시실(전기전자과)	1	88.2
	로봇제어실	1	132.3
	인공지능실습실	1	132.3
	기능반실습실(모바일로보틱스)	1	132.3
	자동차부품가공실	2	319.2
	프로이실(컴퓨터실)	2	151.2
품질관리 및 측정실(전기전자과)	1	90.7	
공작기계실습실	1	440.1	

	구 분	실수	면적(m ²)
교수학습 공 간	특성화전시실(부품가공과)	2	120.9
	자동차부품설계실	1	90.7
	기계기초공작실	1	264.6
	기초제도실습실	1	168.0
	생산자동화실습실	1	198.2
	생산자동화검정실	1	90.7
	용접실습실	1	302.4
	자동차정비동아리실	1	113.4
	기능반실습실(CNC/선반)	1	132.3
	기능반실습실(폴리메카닉스)	1	132.3
	금형가공실습실	1	132.3
	금형분해조립실습실	1	132.3
	품질관리 및 측정실(금형과)	1	88.2
	기능 반실습실(금형가공)	1	132.3
	금형설계실	2	264.6
	MAKER SPACE 실습실	1	220.5
	PBL실습실	1	132.3
	특성화전시실(금형과)	1	88.2
	방공무기실습실	2	151.2
	특수기계실습실	1	75.6
소 계	69	8,337.5	
교수학습 지원공간	취업지원부	2	120.9
	학생복지부	1	60.4
	교사연구실(전기전자과)	1	88.2
	교사연구실(부품가공과)	1	75.6
	마이스터부	1	60.4
	교사연구실(금형과)	1	88.2
	교사연구실(군특성화부)	1	75.6
	진로상담실	1	75.6
	진로활동실	1	151.2
	대회의실	1	151.2
	Wee Class	1	60.4
	도서실(러닝센터-1.2)	2	302.4

구 분		실수	면적(m ²)
소 계		14	1,310.1
생활 및 복지 지원 공간	교사휴게실	2	60.4
	학생탈의실	4	75.6
	홈베이스	5	559.4
	동아리실	4	144
	드론축구 동아리실	1	281.2
	휴게공간	1	36.0
	소 계	17	1,156.6
관리 및 행정 공간	교장실	1	30.2
	소회의실	1	30.2
	행정실	1	60.4
	교무지원센터	1	120.9
	문서고	1	30.2
	전산(성적처리)실	1	30.2
	상담실	1	30.2
	학부모실	1	30.2
	관리실	1	30.2
	창고	4	120.9
	인쇄실	1	30.2
	방송실	1	30.2
	보건실	1	60.4
	소 계	16	634.4
공용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34	1,930.4
계			13,369.0

※ 공간 조성내역(실수, 면적)은 설계용역 시 변동될 수 있음

8.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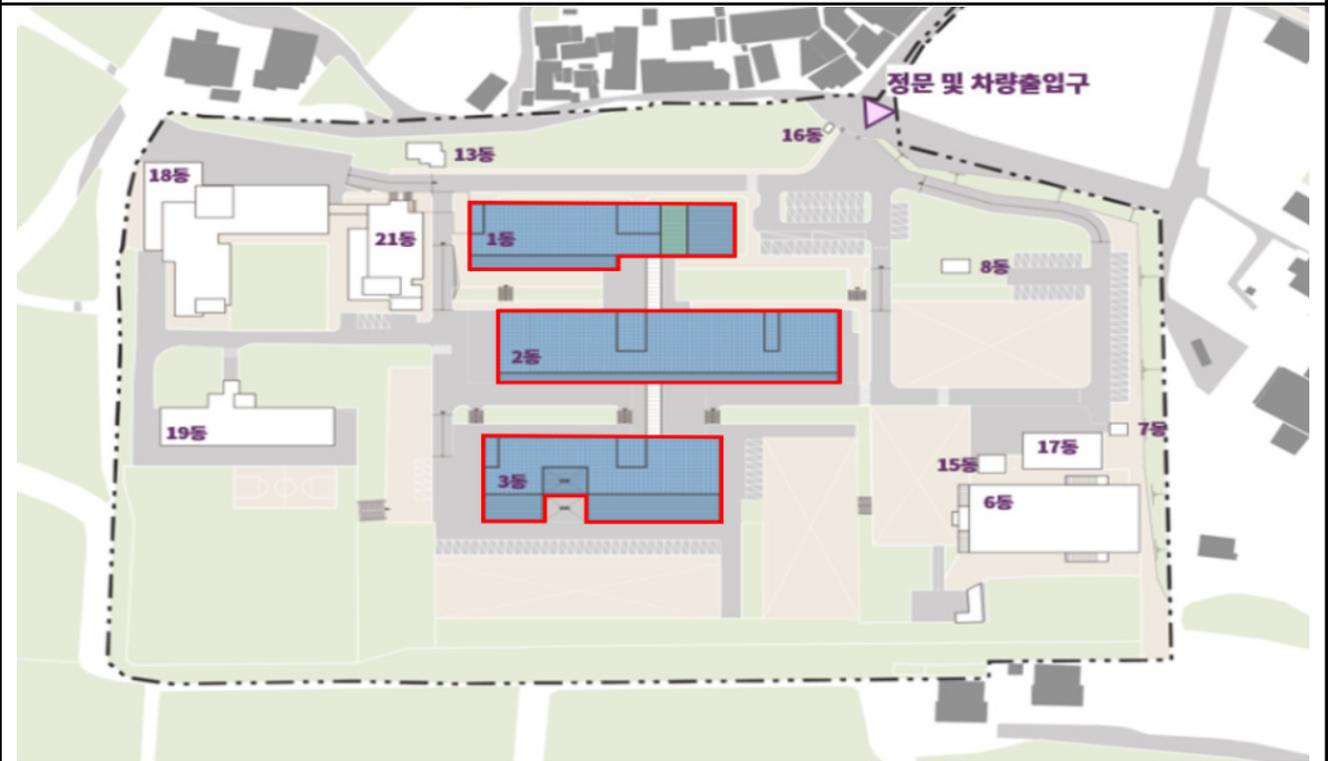
- 2022.06.13.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 선정 내부심의 결과 알림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4343)
- 2022.09.30.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선정 결과 알림(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482)
- 2023.03.~07.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T/F팀 협의회 개최(4회)
- 2023.05.~07.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교육과정 연계 컨설팅 실시(2회)
- 2023.07.27. 2023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 위원회(원안가결)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적정)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성사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05



2. 배치계획(안)



3. (철거) 1동(본동) 전경사진



4. (철거) 2동(후동) 전경사진



5. (철거) 3동(후동) 전경사진



6. (철거) 4동(부품가공과) 전경사진



7. (철거) 5동(금형과) 전경사진



8. (철거) 11동(창고) 전경사진



9. (철거) 12동(창고) 전경사진



10. (철거) 20동(경유탱크) 전경사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당진고등학교 교사동(후동) 증축안

1. 사업기간: 2023. 12. ~ 2026. 7.(2년 8개월)
2.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219-20(채운동 353)
3. 규 모: 건물 1,461.84㎡(연결부 수평 증축 2개층, 화장실 수평 증축 3개층)
4. 학교현황: 학급수 30학급(특수 3학급 포함), 학생수 856명(특수 18명 포함)
5. 사 업 비: 총 3,829백만 원(건축비 3,82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70.0%, 지자체지원금 3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3,829	765	1,149	1,915	
보통교부금	2,680	535	804	1,341	
국고보조금	1,149	230	345	574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축	838	18	27	3	2026.07.	0	1,461.84	0	3,829	3,829

※ 총사업비 16,312백만 원, 증축비 3,829백만 원, 리모델링비 12,483백만 원

6. 사업목적(필요성)

- 당진시 구도심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학교 선호도가 높으며 개발 및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측됨에도 현재

일반교실은 물론 특별교실, 홈베이스 면적까지 부족한 상황

- 2027년까지 30학급에서(특수 3학급 포함) 37학급(특수 3학급 포함)으로의 교실 증설이 예상되어 교실 증축이 필요
- 학급 과밀 상태(34명/1학급당)로 학습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화장실 개수(층별 남녀 각 1개소)로는 각 층 학생(층별 349명)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
- 건축물 보강과 함께 노후화되고 부족한 공간을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 확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화 등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필요

7. 사업내용: 증축 1,461.84㎡, 리모델링 4,578.91㎡

가. 증축 1,461.84㎡

- 2027년도 증설되는 7학급 증가에 대비한 수업 공간 확보 및 층별 학생수를 고려한 화장실 증축
- 수평 증축할 수 있는 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동선을 고려한 본동과 후동을 연결하는 브릿지 공간을 증축하여 부족한 교실, 홈베이스, 소인수 학습실 구축

나. 리모델링(후동교사) 4,578.91㎡

-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홈베이스, 교과목 융합을 위한 다목적실, 소인수 학습실 등을 확보

다. 사업 규모

- 존치(본동+예지관+다목적강당+공용면적) 5,233.64㎡
- 리모델링(후동교사) 4,578.91㎡
- 증축 1,461.84㎡(연결부 수평 증축 2개층, 화장실 수평 증축 3개층)

구분	층별	용도	면적(㎡)
후동교사	2층	화장실 1.8실	111.64
	3층	일반학급 2.0실, 소인수실 0.6실 홈베이스 4.6실, 메이커실 2.0실 화장실 1.8실	675.10
	4층	일반학급 2.0실, 소인수실 0.6실 홈베이스 4.6실, 진로진학활동실 1.0실 러닝허브 1.0실, 화장실 1.8실	675.10
계			1,461.84

○ 공간 구성 계획(사전기획 Space Program 결과)

구분	실수	면적(㎡)	
교수학습공간	강의형 교실	28.0	1693.44
	판서형 교실	6.0	362.88
	특수학급 교실	3.0	172.98
	치료실&교무실	0.2	10.25
	과학실-이론	1.0	60.48
	STEAM	2.0	120.96
	과학자료실	1.0	60.48
	음악실	1.5	65.70
	준비실(공동사용)	0.5	32.85
	다목적예술교실	1.5	90.72
	기술가정실(준비실포함)	2.0	120.96
	공용교실	1.5	90.72
소계		2,882.42	

	구분	실수	면적(m ²)
교수학습 지원공간	교사연구실-1학년	1.3	80.30
	교사연구실-2학년	1.3	80.30
	교사연구실-3학년	1.0	60.48
	멀티미디어실	2.0	116.92
	메이커스페이스	2.0	120.96
	온라인스튜디오	1.5	87.69
	진로진학활동실	1.0	60.48
	시청각실	1.0	463.36
	도서실	1.0	277.43
	실내체육관	1.0	724.94
	소 계		2,072.86
생활 및 복지 지원공간	교사휴게실(남)	0.5	30.24
	교사휴게실(여)	0.5	30.24
	교사탈의/샤워실	0.3	15.12
	홈베이스	11.0	652.05
	동아리실	0.5	32.85
	위클래스	1.0	60.48
	식당	1.0	520.89
	조리실	1.0	188.64
	동아리실(예지관)	17.0	325.55
	학생탈의실	2.0	39.40
	온새미로(매점)	1.0	35.66
	소 계		1,931.12
관리 및 행정 공간	교장실	1.0	58.46
	학생자치인권부	0.5	30.24
	행정실	1.0	58.46
	교무지원센터	2.0	1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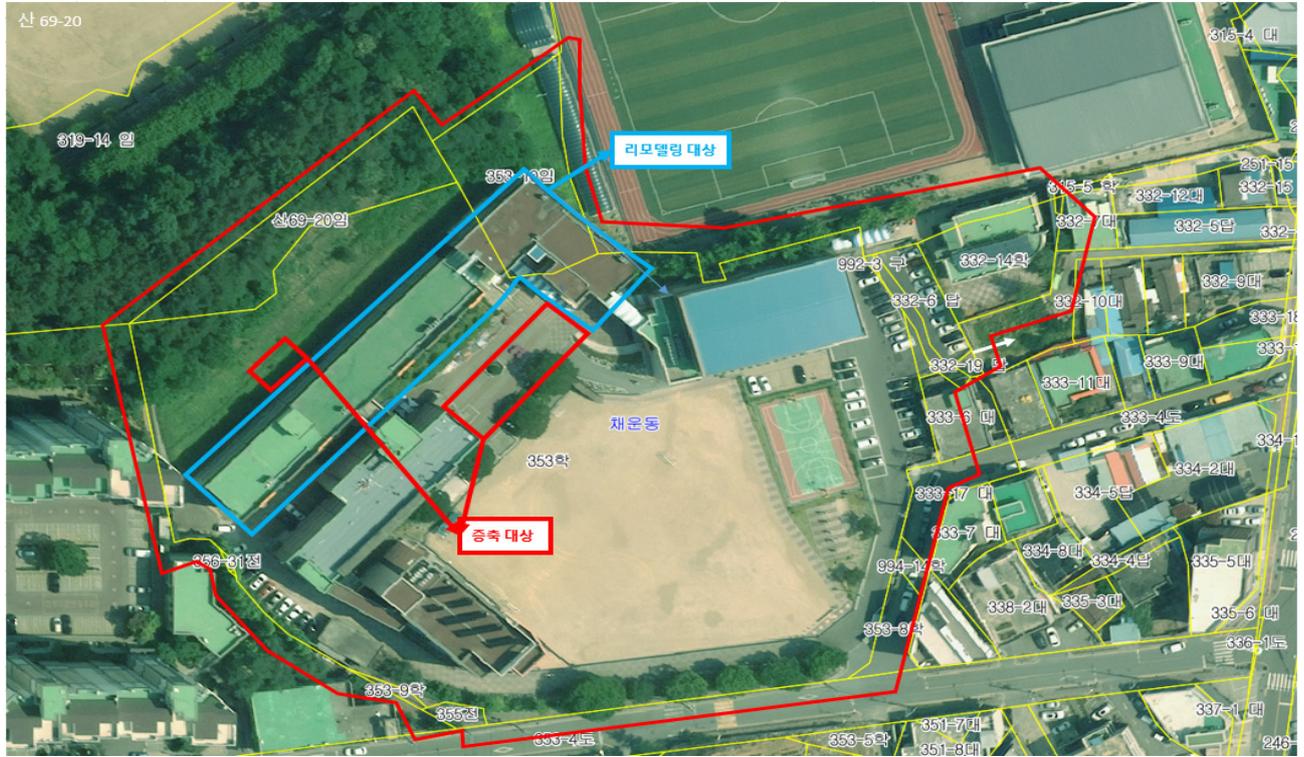
구분		실수	면적(m ²)
	방송실	0.7	40.92
	보건실	1.0	58.46
	평가실	0.5	29.23
	인쇄실	0.5	29.23
	문서보관실	0.5	29.23
	소회의실(모둠활동실)	3.0	55.68
	서버실	0.5	29.23
	숙직실	1.0	15.12
	서고	1.0	18.00
	소 계		569.18
공용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등		3,758.33
	커먼스+러닝허브 등		60.48
	소 계		3,818.81
계(연면적)			11,274.39

8.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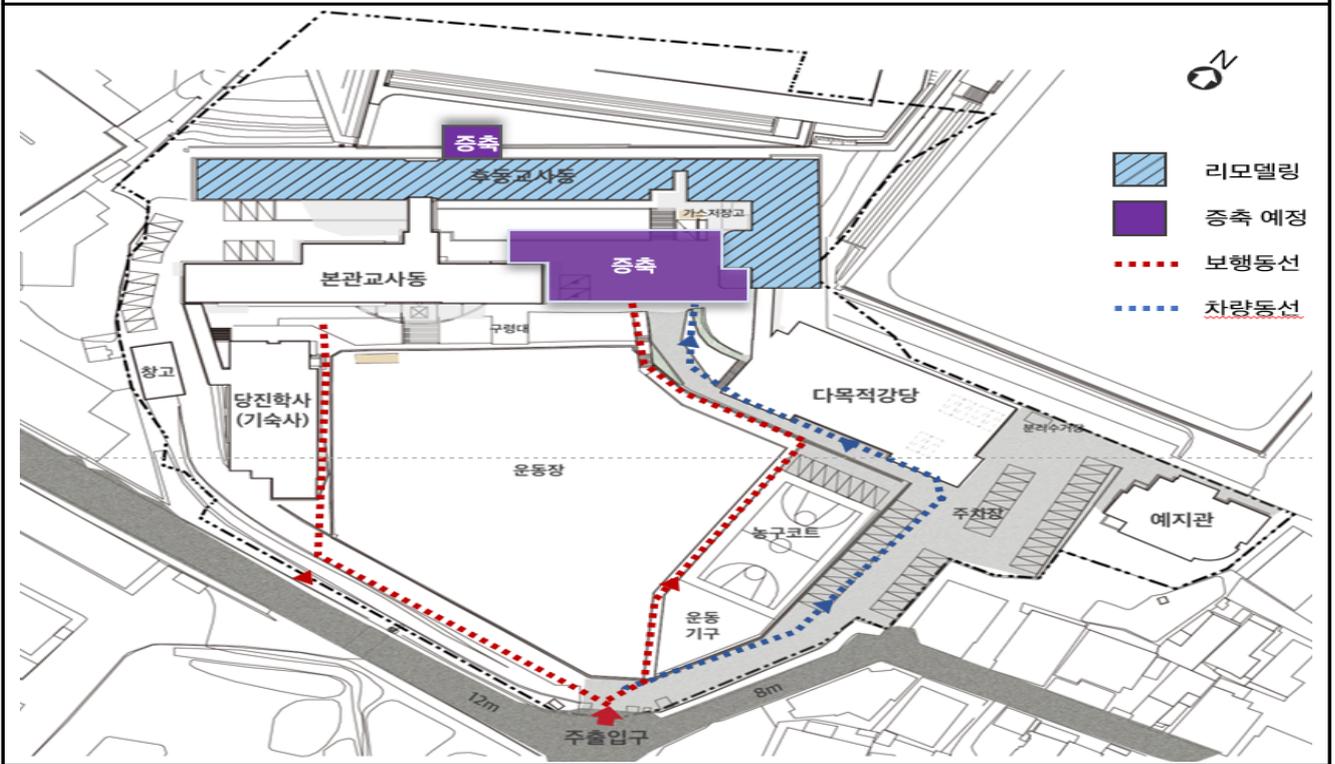
- 2022.09.30.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학교 선정 결과 알림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3006)
- 2023.03.24.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용역 착수
- 2023.06.30. 당진고등학교 후동 교사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안전성 평가 연직하중 B등급, 지진하중 적용 시 D등급 판정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설계 필요)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조건부)
- 증축 공간 및 임시교사 재조정, 공간 재구성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219-20(채운동 353)



2. 배치도



3. 전경사진



4. 전경사진



5. 전경사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 교사동(본관동) 처분(안)

1. 관련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482, 2022. 9. 30.)
- 홍성공업고등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지정(안전총괄과-1733, 2023. 3. 2.)

2. 처분 사유

-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42년 이상 노후된 교사동 증·개축을 위하여 기존 교사동(본관동)을 처분하고자 함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되어 철거 및 증·개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래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축하고자 함

3. 처분 내역

- 건물

(단위 : m², 백만 원)

소재지	명 칭	취득일자	면 적	기준가격	대장가격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본관동	1980.12.30.	2,990.07	642	2,323

□ 교사동(본관동) 증·개축(안)

1. 사업기간: 2023. 3. ~ 2026. 2.(3년)
2.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3. 규 모: 건물 3,171㎡(지상 4층)
4. 학교현황: 학급수 10학급(특수 1학급 포함), 학생수 149명(특수 3명 포함)
5. 사 업 비: 총 10,919백만 원(건축비 10,919백만 원)

◇ 사업비 분담: 보통교부금 70.0%, 국고보조금 30.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10,919	1,092	5,459	4,368	
보통교부금	3,276	328	1,638	1,310	
국고보조금	7,643	764	3,821	3,058	

◇ 사업규모 및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03.05. 기준				완료 시기	규 모		소 요 액		
	학생수		학급수			부지	건 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 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증개축	146	3	9	1	2026.02.	0	3,171	0	10,919	10,919

※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사업 대상학교 선정 예정

■ 사업개요

- 사업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 사업범위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시설 개축 또는 리모델링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임대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

6. 사업목적(필요성)

- 대표적인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인 결성면에 소재한 학교로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점을 살려 타 시·도, 충남 타 시·군

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 구심 역할 필요

- 학교 시설이 낙후되고 부족한 현실로 인한 우수 학생 유치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움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및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고시 되어 개축 필요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학생 활동 중심 수업과 학생 과목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스마트 교실, 교과 교실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학교 공간 필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을 통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미래교육 학습공간 실현
- 존중, 배려, 공감을 통해 함께 일하는 인재, 실무능력을 갖춰 진로를 개척하는 인재,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공간 확보 필요

7. 사업내용

- 기존 본관동 철거 후 2동교사와 잇는 교사동(본관동)을 증축하고 기존 실습실동과 2동교사를 잇는 연결통로 확보 설치
 - 개축 2,990㎡, 증축 181㎡ [합계: 3,171㎡]
- 증개축을 통하여 기존 본관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 구축 및 탄력적인 교육공간 제시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 공간 구성계획 (사전기획 Space program 결과)

1) 연면적: 3,171m²

2) 공간 구성

구분		실수	면적(m ²)
교수학습공간	종합교실	6	360
	역사실	1	60
	수학실	1	60
	과학실	1	90
	음악실	1	90
	영어실	1	60
	진로활동실	1	75
교수학습 지원공간	취업지원센터	1	60
	시청각실	1	210
	도서실	1	240
생활 및 복지 지원공간	교사휴게실	1	60
	직원휴게실	1	40
	학생자치회실	1	60
	Wee클래스	1	30
관리 및 행정공간	교장실	1	30
	회의실	1	30
	행정실	1	60
	교무지원센터	2	180
	방송실	1	45
	보건실	1	60
	서버실	1	15
	전산(성적처리)실	1	30
	인쇄실	1	15
	문서(보관실)	1	30
	상담실	1	30
	접견,탕비실	1	30
	공용공간	출입+통행+위생+서비스	
계			3,171

8.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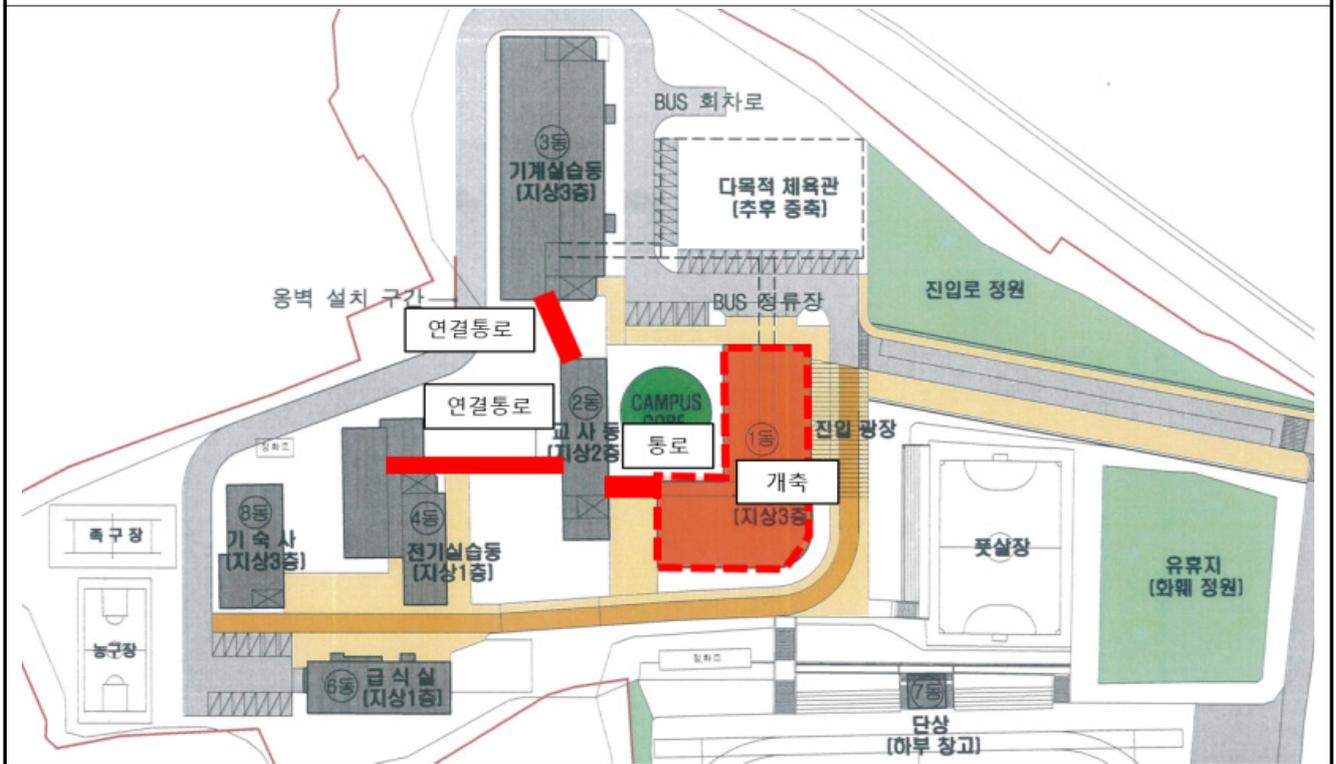
- 2022.05.23.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모 신청(행정과-11649)
- 2022.09.30. 2023학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선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482)
- 2023.03.02. 구조안전 위험시설(D등급) 지정·고시(안전총괄과-1733)
- 2023.06.28.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사업 대상학교 내부검토
- 2023.06.30. 2023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
위원회(원안가결)(시설과-3835)
- 2023.08.09. 2023년도 정기3차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조건부)
- 공간 재구성(중심 공간 확보)
- 2023.08.11. 2023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수정가결)
- 기준가격 변경 수정(90억 4,100만 원 → 109억 1,900만 원)

□ 위치도

1.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2.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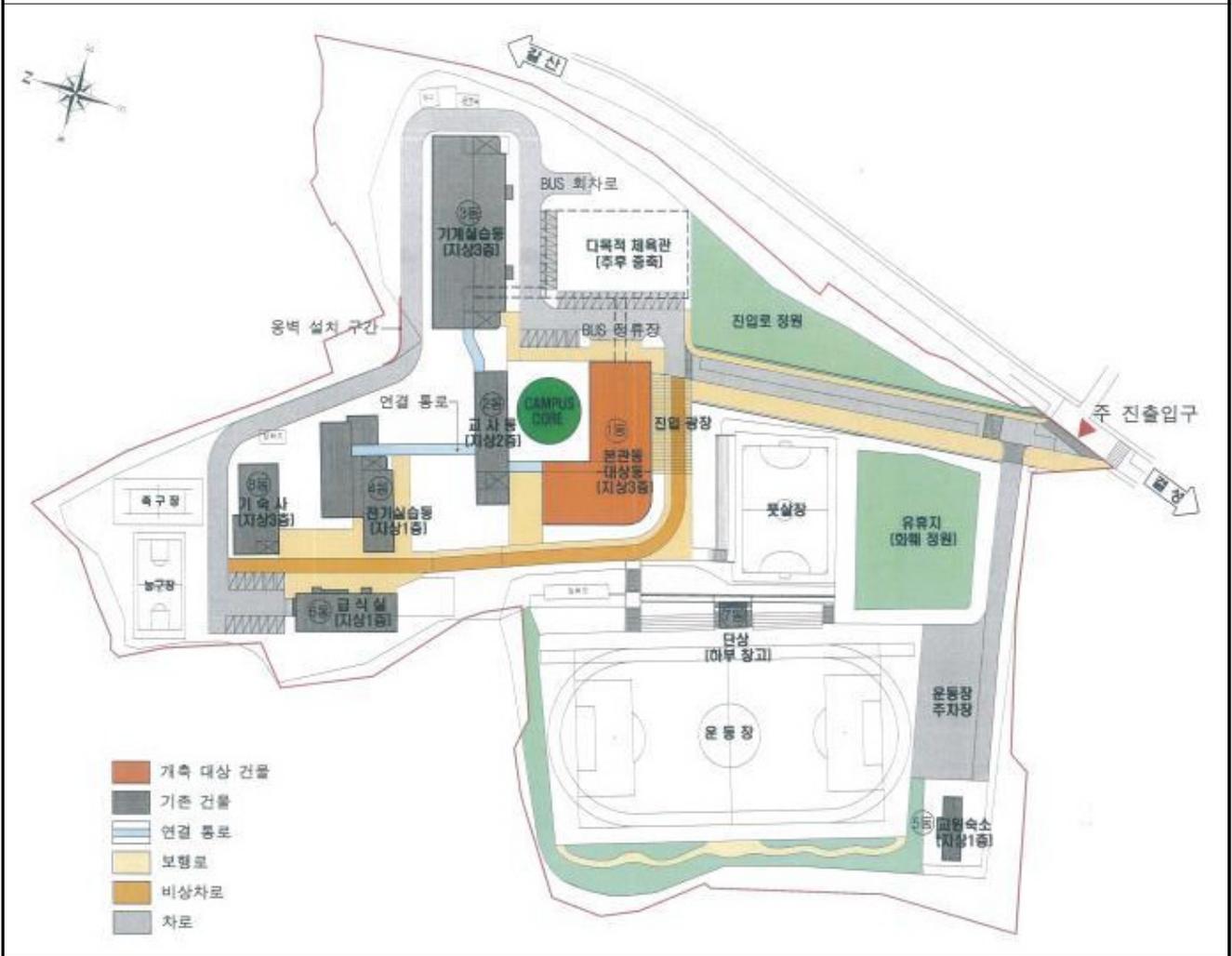
3. 전경사진 (개축대상 건물)



4. 전경사진 (개축대상 건물)



5. 마스터플랜 (종합계획도)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설안 등 14건의 공유재산 취득

2. 비용 발생 요인

- 학교 및 기관 등 3건 신설
- 교사동 등 4건 증축 및 폐교 1건 환매
- 고교학점제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교사동 6건 증축

3.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재산(토지, 건물)과 6,000㎡ 이상 토지
- 추계 결과
 - 의존재원(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184,504백만 원
-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156,609.5백만 원, 국고보조금 20,018백만 원, 지자체 전입금 7,876.5백만 원
 - 2024년도 52,220백만 원, 2025년도 94,755백만 원, 2026년도 37,529백만 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 입	52,220	94,755	37,529	0	0	184,504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 설	23,787	24,104	8,034	0	0	55,925
한들물빛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 축	4,711	1,674	0	0	0	6,385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 축	2,719	0	0	0	0	2,719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철거 및 개축	132	2,490	0	0	0	2,622
가칭 꿀벌도서관 설	5,597	11,525	1,627	0	0	18,749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 설	6,452	3,530	6,619	0	0	16,601
충청남도교육청 지상 주차장(타워) 증 축	429	11,609	0	0	0	12,038
(구) 복룡초등학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 득	1,183	0	0	0	0	1,183
(고교학점제)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동 증 축	374	3,370	0	0	0	3,744
(고교학점제)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동 증 축	799	7,192	0	0	0	7,991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고 교 학 점 제)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 축 안	438	3,945	0	0	0	4,38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3,742	18,708	14,966	0	0	37,416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당진고등학교 교사동(후동) 증축안	765	1,149	1,915	0	0	3,82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1,092	5,459	4,368	0	0	10,919
세 출	52,220	94,755	37,529	0	0	184,504
가칭 탕정7초등학교 신 설 안	23,787	24,104	8,034	0	0	55,925
한들물빛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 축 안	4,711	1,674	0	0	0	6,385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사동 및 역도장 증 축 안	2,719	0	0	0	0	2,719
부리초등학교 교사동(본동) 철거 및 개축안	132	2,490	0	0	0	2,622
가칭 꿀벌도서관 설 립 안	5,597	11,525	1,627	0	0	18,749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신 설 안	6,452	3,530	6,619	0	0	16,601
충청남도교육청 지상주차장(타워) 증 축 안	429	11,609	0	0	0	12,038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구) 복 룡 초 등 학 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 득 안	1,183	0	0	0	0	1,183	
(고 교 학 점 제)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동 증 축 안	374	3,370	0	0	0	3,744	
(고 교 학 점 제) 천안월봉고등학교 교사동 증 축 안	799	7,192	0	0	0	7,991	
(고 교 학 점 제)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동 증 축 안	438	3,945	0	0	0	4,38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3,742	18,708	14,966	0	0	37,416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당진고등학교 교사동(후동) 증축안	765	1,149	1,915	0	0	3,82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	1,092	5,459	4,368	0	0	10,919	
재원 조달	52,220	94,755	37,529	0	0	184,504	
의존 재원	소 계	52,220	94,755	37,529	0	0	184,504
	보통교부금	42,226.5	84,976	29,407	0	0	156,609.5
	특별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2,117.0	9,779.0	8,122.0	0	0	20,018.0
	전 입 금	7,876.5	0	0	0	0	7,876.5
	기 부 금	0	0	0	0	0	0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0	0	0	0	0	0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520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요구
- 교육부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75%), 임대형민자사업(25%)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함
- 임대형민자사업은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총 민간투자비 : 493억 3,800만원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충청남도교육청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 향후 추진 일정
 -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 2023. 9.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2023. 10.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뢰(한국교육개발원): 2023. 11.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23. 12.
 - 민자사업 제안: 2024. 1. ~ 2024. 3.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2024. 4.
 - 실시협약 체결: 2024. 9.
 - 실시계획 승인: 2025. 2.
 - 공사착공 및 준공: 2025. 2. ~ 2026. 8. (540일)
 - 관리운영: 2026. 9. ~ 2046. 8. (20년간)

4. 검토 의견

- ㄷ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인 건물로 변화 시키고 디지털 장비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여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것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BTL⁸⁾사업(25%)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 BTL 한도액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 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될 때 「지방자치법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¹⁰⁾」에 따라 의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업방식에 해당하여,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 529억원 범위내에서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세부계획을(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6동, 16,540㎡, 457억원) 수립 후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물량을 직접 담당해야 하는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부담 완화, 학교 시설 적기 공급 기대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

8)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9)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1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6호(2021.3.24.)>

간투자사업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 중단, 준공 지연, 준공 이후 마감 공정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협약체결 시 조치 방안을 명확히 하고, BTL 학교 사업 주체 간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23년 BTL 한도액안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① 총괄

(단위 : 교, 억원 / 부가세 제외)

년도	한도액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비고
	물량	한도액	물량	총사업비	
2023	3교	529	2교	457	

② 의무부담행위 세부내용

(단위 : m², 백만원 / 부가세 제외)

단위사업	사업명	학교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연무마이스터교 외 1교	연무마이스터교	13,369	36,171	'25.02~'26.08	'26.09~'46.08	
		홍성공교	3,171	9,578	'25.02~'26.08	'26.09~'46.08	
계		2교	16,540	45,749			

[참고 2] 21년 ~ 22년 BTL 추진현황

(단위 : m², 백만원 / 부가세 제외)

년도	번들	사업명	학교수	동수	사업량	총사업비	정부지급금(20년)			현재추진현황
							임대료	운영비	계	
2021	1	직산초 외 4교	5	6	18,157	38,611	61,669	18,576	100,280	공사중
	2	예산초 외 2교	3	6	15,491	37,726	60,246	9,850	97,972	실시계획중
2022	3	온양천도초 외 4교	5	8	21,851	49,338	73,660	19,064	122,998	협상중
계			13	20	55,499	125,675	195,575	47,490	321,250	

[참고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차별 계획(안)¹¹⁾

○ 배정물량 : 191동, 1조 1,651억원 (전국 2,835동, 18.7조원)

구분	계		재정		BTL	
	동수	사업비(억)	동수	사업비(억)	동수	사업비(억)
2021년	51	3,111	39	2,379	12	732
2022년	35	2,135	26	1,586	9	549
2023년	22	1,342	13	793	9	549
2024년	35	2,135	26	1,586	9	549
2025년	35	2,135	26	1,586	9	549
2026년	13	793	13	793	0	0
계	191	11,651	143	8,723	48	2,928

※ 평균면적: 2,750㎡/동, 동별단가: 61억원/동

※ 사업방식: 재정사업 143동(75%), BTL 48동(25%)

※ 재원분담: 국비 3,495억원(30%), 지방비 8,156억원(70%)액

1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계획(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2650(2023. 6. 12.))

5. 첨부 자료

-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운영 계획(안)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의무부담 기간: 2026년 9월 ~ 2046년 8월 (20년)
2. 의무부담 내용: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단위 사업	학교명	사업량 (㎡)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연무마이스터고	13,369	36,171	'25.02~'26.08	'26.09~'46.08	
	홍성공고	3,171	9,578	'25.02~'26.08	'26.09~'46.08	
합 계	2교	16,540	45,749			

3. 소요예산: 금89,175,000천원 (시설임대료 + 운영비 / 부가세 제외)
 - 시설임대료: 금70,642,000천원 (국비 30%, 지방비 70%)
 - 국비(30%): 금21,193,000천원
 - 지방비(70%): 금49,449,000천원
 - 운영비: 금18,533,000천원 (지방비 100%)
 - 지방비(100%): 금18,533,000천원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운영계획(안)

1. 사업개요

가. 목적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요구
- 국가 및 교육청 예산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던 노후 학교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선제적 미래형 학교 구축 필요

나. 추진근거

-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알림 및 실행계획 제출요청 [교육부 교육시설과-5420(2023. 4. 25.)]
-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2650(2023. 6. 12.)]

다. 의무부담행의 동의 사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교육부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임대형민자사업(25%)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함
- 임대형민자사업은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

가. 대상학교 현황

(단위 : 교)

지역	대상교					비고
	유	초	중	고	계	
논산	0	0	0	1	1	
홍성	0	0	0	1	1	
합계	0	0	0	2	2	

※ 임대형민자사업(BTL) 학교별 검토 현황 : 【별첨 1】 참조

나. 단위사업 통합화(Bundling)*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 부가세 제외)

단위사업 (번들)	지역	급별	학교명	사업량	총사업비	비고
1	논산	고	연무마이스터고	13,369	36,171	
	홍성	고	홍성공고	3,171	9,578	
합계			2교	16,540	45,749	

※ *통합화(Bundling): 두 개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추진의 장점을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

다. 의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m², 백만원 / 부가세 제외)

단위사업	사업명	학교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연무마이스터고	13,369	36,171	'25.02~'26.08	'26.09~'46.08	
		홍성공고	3,171	9,578	'25.02~'26.08	'26.09~'46.08	
합계		2교	16,540	45,749			

※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 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기간 등 단위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의무부담 관리기간: 20년 (2026년 9월~ 2046년 8월 예정)

마.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경상가 /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교)	정부지급금 규모(20년)			정부지급금(년간 평균)		
			임대료	운영비	합 계	임대료	운영비	합계
1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2	70,642	18,533	89,175	3,532	927	4,459
합 계		2	70,642	18,533	89,175	3,532	927	4,459

※ “정부지급금(임대료 + 운영비)” 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의 예정금액이며, 사업기간 중 수익률 및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정부지급금은 변경될 수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 가.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 2023. 9.
- 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2023. 10.
- 다.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뢰(한국교육개발원): 2023. 11.
- 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23. 12.
- 마. 민자사업 제안: 2024. 1. ~ 3.
- 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2024. 4.
- 사. 실시협약 체결: 2024. 9.
- 아. 실시계획 승인: 2025. 2.
- 자. 공사착공 및 준공: 2025. 2. ~ 2026. 8.
- 차. 관리운영: 2026. 9. ~ 2046. 8. (20년간)

※ 상기 일정은 단위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별첨자료

- 가.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 나. 정부지급금 구성요소
- 다. 정부지급금 지급 세부현황

별첨 1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연무마이스터고)

1 일반현황 (2023년 3월 기준)

지역명	홍성	설립별	공립	성별	공학	계열	특목고
개교일자	1967. 3. 13	학급수	15학급	학생수	208명	지역구분	읍면지역

2 시설현황

대지면적(m ²)	53,465.70m ²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m ²)	9,724.49m ²	건폐율(%)	18.19%
연면적(m ²)	22,829.14m ²	용적률(%)	42.69%

3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배치도(당초)		추진계획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연면적(m)		사업유형	
			당초	변경		
1	1동	1975	3,280.00	13,369.00 (13,007m ² + 362m ² (증축))	개축	
2	2동	1976	3,950.85		개축	
3	3동	1976	1,312.20		개축	
4	4동	1979	2,808.00		개축	
5	5동	1976	1,656.00		개축	
6	6동	1979	2,376.00	2,376.00	존치	
7	7동	1981	34.65	34.65	존치	
8	8동	1976	36.00	36.00	존치	
9	11동	1975	25.92	0	철거	
10	12동	1976	259.15	0	철거	
11	13동	1990	65.16	65.16	존치	
12	15동	1995	41.80	41.80	존치	
13	16동	1976	33.75	33.75	존치	
14	17동	1979	270.00	270.00	존치	
15	18동	1982	3,285.87	3,285.87	존치	
16	19동	1995	1,415.70	1,415.70	존치	
17	20동	1976	7.56	0	철거	
18	21동	2013	1,970.53	1,970.53	존치	
계			20,858.61	22,898.46		

별첨 1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홍성공고)

1 일반현황 (2023년 3월 기준)

지역명	홍성	설립별	공립	성별	공학	계열	특성화고
개교일자	1981. 3. 23	학급수	10학급 (특수포함)	학생수	158명 (특수포함)	지역구분	읍면지역

2 시설현황

대지면적(m ²)	30,720.00m ²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m ²)	3,939.51m ²	건폐율(%)	12.82%
연면적(m ²)	9,754.98m ²	용적률(%)	31.75%

3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배치도(당초)		추진계획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연면적(m ²)		사업유형	
			당초	변경		
1	1동	1992	2,990.07	3,171.00 (2,990m ² + 181m(증축))	개축	
2	2동	1996	741.60	741.60	존치	
3	3동	1992	2,958.57	2,958.57	존치	
4	4동	1994	1,625.08	1,625.08	존치	
5	5동	1994	108.00	108.00	존치	
6	6동	2011	276.64	276.64	존치	
7	7동	2001	56.00	56.00	존치	
8	8동	2014	999.02	999.02	존치	
계			9,754.98	9,935.91		

홍성공업고등학교 마스터플랜 >

■ 정부지급금의 구성: 시설임대료 + 운영비

○ 시설임대료

(시설임대료)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20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수익률의 구성) 지표금리 + 가산율(a)

- 지표금리: 5년 만기 국채금리로 설정
- 가산율(a):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음

(원리금균등 상환 산정식)(매년 동일액 지급)

$$\text{시설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운영비

(운영비)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운영비의 구성) 불변운영비 × 물가상승률

- 불변운영비: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음
- 물가상승률: 실시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분기별 물가상승률 적용
 - 운영기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시설운영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운영비 조정 가능
 -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비용 지급액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

(운영비용 산정식) (물가상승률에 따른 경상가 지급)

$$\text{경상운영비} = \text{불변운영비} \times \frac{\text{운영비 지급 직전 분기 마지막 달의 소비자물가지수}}{\text{협약기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별첨 3

정부지급금 지급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정부지급금 (20년 전체)				
			임대료		운영비 (지방비(100%)) [B]	합계	지방비 소요금액 [A + B]
			국비(30%)	지방비(70%) [A]			
1	연무마이 스터고 외 1교	2	21,193	49,449	18,533	89,175	67,982
계		2	21,193	49,449	18,533	89,175	67,98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6호(2021.3.24.)]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 ④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지급금 발생
-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기간: 2026. 9. ~ 2046. 8. (20년간)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89,175,000천원 (부가세 제외)
[국비: 21,193,000천원, 지방비: 67,982,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 부가세 제외)

사업명	2026년~2046년	합계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4,458,750 × 20년 =	89,17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운영개시 이후 20년간(2026년 ~ 2046년) 정부지급금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 부가세 제외)

구 분	1차 년도(2026년) ~ 20차 년도(2046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4,458,750 × 20년 =	89,175,000
민간위탁금	4,458,750 × 20년 =	89,175,000
재원 조달	4,458,750 × 20년 =	89,175,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1,059,650 × 20년 =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399,100 × 20년 =	67,982,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 부가세 제외)

구 분		2026년 ~ 2046년	계
재원조달		4,458,750 × 20년 =	89,175,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1,059,650 × 20년 =	21,193,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399,100 × 20년 =	67,982,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89,175,000천원 (부가세 제외)
 - 국고보조금(시설임대료 30%): 21,193,00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시설임대료 70% + 운영비 100%): 67,982,000천원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